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11. 12 (수요일), 14:00 ~ 20: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정배, 고희령, 김권구, 김종일, 노중국,  
손영식, 채미옥, 최성락(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3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지정·보호구역 조정	
4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5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 내 남산 회현자락 공원 조성	
6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 존치 기간 연장	
7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차량호 설치	
8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CCTV 및 광망형 감지기 설치	
9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 내외 토성둘레길 환경개선 사업	
10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연결통로 보수공사	
11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유허 내 유적정비 계획(안)	
12	사적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13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 지하수 개발	
14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주변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	
15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내 편의시설 정비	
16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금관총 발굴조사	
17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보호구역 내 자운서원 냉·난방 시설 설치 등	
18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19	사적 제357호 광명 영화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20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2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풍차 및 바람개비 설치	
22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외 주차장 보수 및 환경정비	
23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임시주차장 설치	

24	사적 제477호 상주 북룡동 유적 내 어린이대피소 설치	
25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내 금강광역상수도 개량공사 현장 사무실 설치	
26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 소나무 굴취	
27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마을공동작업장 건축	
28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내 영암사 주변정비사업	
29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사업(허가사항 변경 허가)	
30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정비사업(2차)	
31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 관아 정비	
32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내 군 시설 구축	
33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내 수목 정비	
<b>【검토사항】</b>		
34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35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36	심곡서원 사적 지정 검토	
37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명칭(한자) 변경 검토	
38	사적 제125호 종묘 앞 복원 및 광장정비 검토	
39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내 화장실 건립 검토	
40	사적 제463호 선농단 제례공간 정비방안 검토	
41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2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3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4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5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6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7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8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9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50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51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52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b>【보고사항】</b>		
53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보존환경 연구결과 및 보존 관리 계획 보고	
54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 종용사 안내소 이전설치 계획 보고	
55	사적 제117호 경북궁 소주방 권역 활용을 위한 준비실 설치 보고	
56	사적 제121호 사직단 관리사무소 신축 설계 보고	
57	사적 제123호 창경궁 소나무 등 주요수목 정비공사 보고	
58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내 궁능 문화재 보수용 자재야적장 및 창고 보고	
59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 보고	
60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9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6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12-001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11필지 1,206㎡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4.09.11)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4.9.26.(문화재청 공고 제2014-98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존지정 면적 : 1,140필지 353,588.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11필지 1,206㎡
  - 추가지정 후 면적 : 1,151필지 354,794.6㎡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4.08.22)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31	대	9	9		
2	"	142-78	대	129	129		
3	"	126-111	대	89	89		
4	"	152-42	대	109	109		
5	"	88-78	대	69	69		
6	"	126-39	도로	13	13		
7	"	133-25	대	159	159		
8	"	142-34	대	262	262		
9	"	89-19	대	99	99		
10	"	142-86	대	125	125		
11	"	126-115	대	143	143		
합계				1,206	1,206		

※ I-1권역 1필지, II-2 1필지, II-3권역 6필지, III권역 3필지

## 2. 공주 석장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남 공주시 장기면 「공주 석장리 유적」의 2지구에 속하는 5필지 4,526㎡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8.13)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
  - 지정 예고일 : 2014.09.17 (문화재청 공고 제2014-260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지정 예고면적(문화재구역) : 5필지 4,526㎡
  - 지정 예고결과 :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서의 지정가치에 대한 이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 면적 : 16필지 8,344㎡
  - 추가지정 신청면적 : 5필지 4,526㎡
- (4) 신청사유
  - 본 추가지정 신청구역은 2010년 시행한 13차 발굴조사 지역으로 구석기 유적의 퇴적 지층 및 문화층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확대가 필요함
  - \* 발굴유구내용 : 5개의 유물층에서 200여점의 유물이 출토, 찻개, 몸돌, 밀개, 굽개, 격지(4유물층) 와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찻개, 격지(5유물층)등 발굴

라. 지정조사보고서('14.07.1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제334호

(2) 문화재 명칭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3)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석장리 유적은 공주시 석장리동 석장마을에 자리하고 있음. 북쪽으로는 장군산이 솟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석장천이 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 금강과 인접해 있음.
- 석장리 유적은 해발고도 약 10~17m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 확인된 문화층은 금강의 현재 수면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음.

- 연혁 유래 및 특징

- 공주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문화의 존재가 입증된 유적으로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음.
- 1964년 5월 20일, 당시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던 모어(Albert Mohr)와 샘플(L. L. Sample)부부는 공주의 금강유역에서 채집한 4개의 타제석기와 10개의 석기 파편을 발견하고, 공주 석장리 유적의 발굴을 손보기 교수에게 제의하였음. 이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중심으로 발굴팀이 구성되어, 196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석장리 유적에 대한 첫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음.
- 1~4차 발굴까지는 금강에 인접한 2지구의 1~4구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5~13구덩으로 조사가 확대되었음. 조사 결과, 2지구 1구덩의 퇴적물은 27개의 지층으로 구성되었으며, 27~14지층에서는 전기 구석기시대(1~6문화층) 문화층, 13~9지층에서는 중기 구석기시대(10~12문화층) 문화층을 확인하였음.
- 1지구의 조사는 6차 발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이곳에서는 주로 4지층과 5지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후기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음. 6차 발굴을 통해서 5지층의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새기개·밀개 문화층을 확인하였으며, 7~9차 발굴에서는 51구덩의 5지층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집자리 유구를 비롯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음. 특히, 집자리(시료: 나무 숯)는 연대측정 결과 약 2만5천년에서 3만년 전의 집터임이 확인되었음.



- 10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 전기부터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층이 확인되어 1990년 10월 26일 사적 제334호로 지정 되었음.
- 11~12차(1990·1992)발굴은 장암(장암)-용암(용암)간 도로 건설 및 석장리 유적 기념전시관 건립과정에서 구제 발굴로서 진행되었으며, 중기와 후기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음.
- 2006년에는 석장리 유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석장리박물관이 건립되었음.
- 13차 발굴은 2지구 및 그 주변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석장리 유적의 분포 범위를 확인하였음. B지점에서는 1964년 석장리 유적에서 최초로 발굴된 지점을 다시 찾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기 및 후기 문화층의 존재를 확인하였음.

####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문화의 존재가 입증된 유적으로 지금까지 13차례의 발굴 결과,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음.
  - 이후 1990년 사적 334호로 지정되었는데, 지정 당시 1964년에 최초로 구석기유물이 발굴된 지역은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최초로 구석기유물이 발굴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 및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하여 13차 발굴조사(2010.6.18. ~ 12.3.)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조사지역에서 형성된 퇴적층에서 구석기유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중 B지점의 5개의 유물층 가운데, 1·2 유물층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유물층은 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필요함.
  - 또한 B지점의 발굴 과정을 통하여, 1964~65년 당시의 초기 발굴기록이 매우 정확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조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던 지역으로 역사적·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사적 지정구역에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 제13차 석장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 조사명 : 공주 석장리 유적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발굴조사
- 조사지역 : 공주시 석장리동 90 외 4필지
- 조사면적 : 4,526m<sup>2</sup>
- 조사기간 : 2010.6.18.~2010.12.3.
- 조사기관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조사목적 : 문화재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유적 분포 범위확인 및 최초 발굴 조사를 통해 보고된 2지구 구석기유적의 퇴적지층과 문화층과의 상호관계 재확인 등.

## □ 제13차 석장리유적 발굴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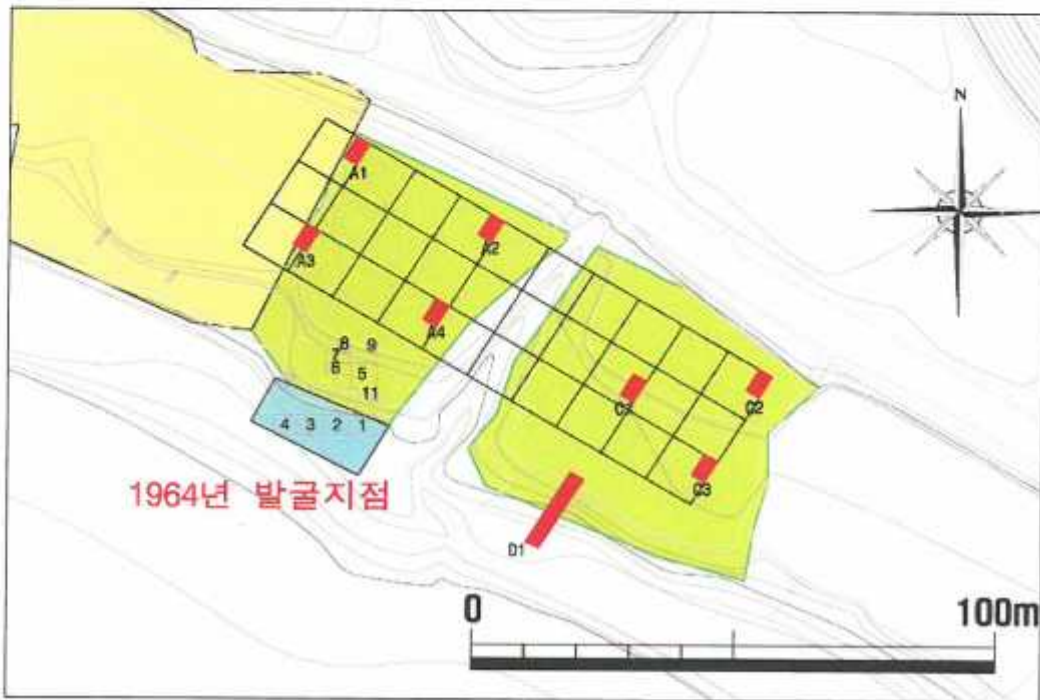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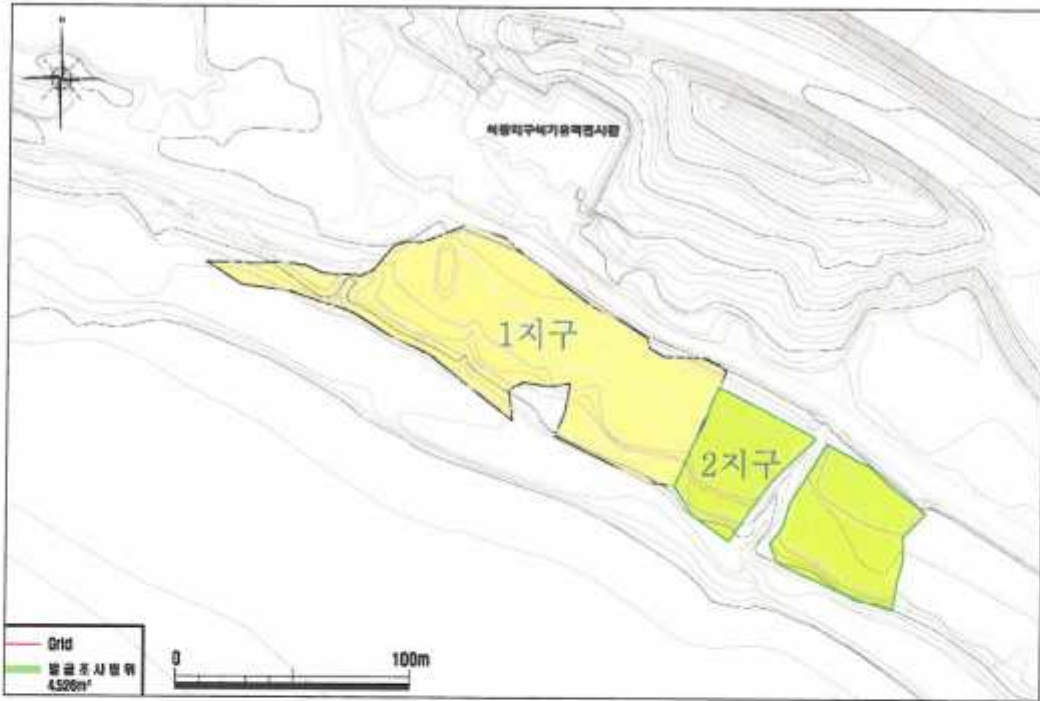
- 2지구 구역과 2지구 동쪽 구역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구석기 유물 분포 확인
- 조사된 5개의 유물층에서 격지, 돌날, 몸돌, 주먹도끼 등 총86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1,2 유물층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유물층은 중기 구석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지도위원회의 결과

- 1992년 이래 13차례 발굴을 통하여 과거 발굴이 완료되었던 부분(1968년 구덩의 북벽 중심)을 정확하게 찾아 석장리 유적의 초기 발굴지점을 확인함
- 석장리 유적이 한국 구석기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발굴로 확인된 과거의 층위 부분을 학술적으로 교육홍보용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음
- 과거 1지구 및 2 지구는 물론 3지구(이번에 명명)를 비롯하여 상류지역도 조사하여 강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물층을 계속 조사할 필요성이 절감됨. 그럼으로써 현재 발굴 부분보다 상류쪽에 남아 있을 석장리 유적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박물관 하류에 있는 석장천변도 지표조사하여 기존 석장리 유적의 넓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64년 2지구 1구덩은 구석기 연구사에 중요한 역사적인 지점인 만큼 학사적인 야외전시를 구성하여 한국고고학 발달사의 현장으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함

석장리 유적 전경 사진





▲ 13차 발굴조사의 범위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발굴 지점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 신청 구역(석장리동 90번지 일원)



문화재 구역 확대 지정 신청 구역(우리나라 최초 구석기 발굴지 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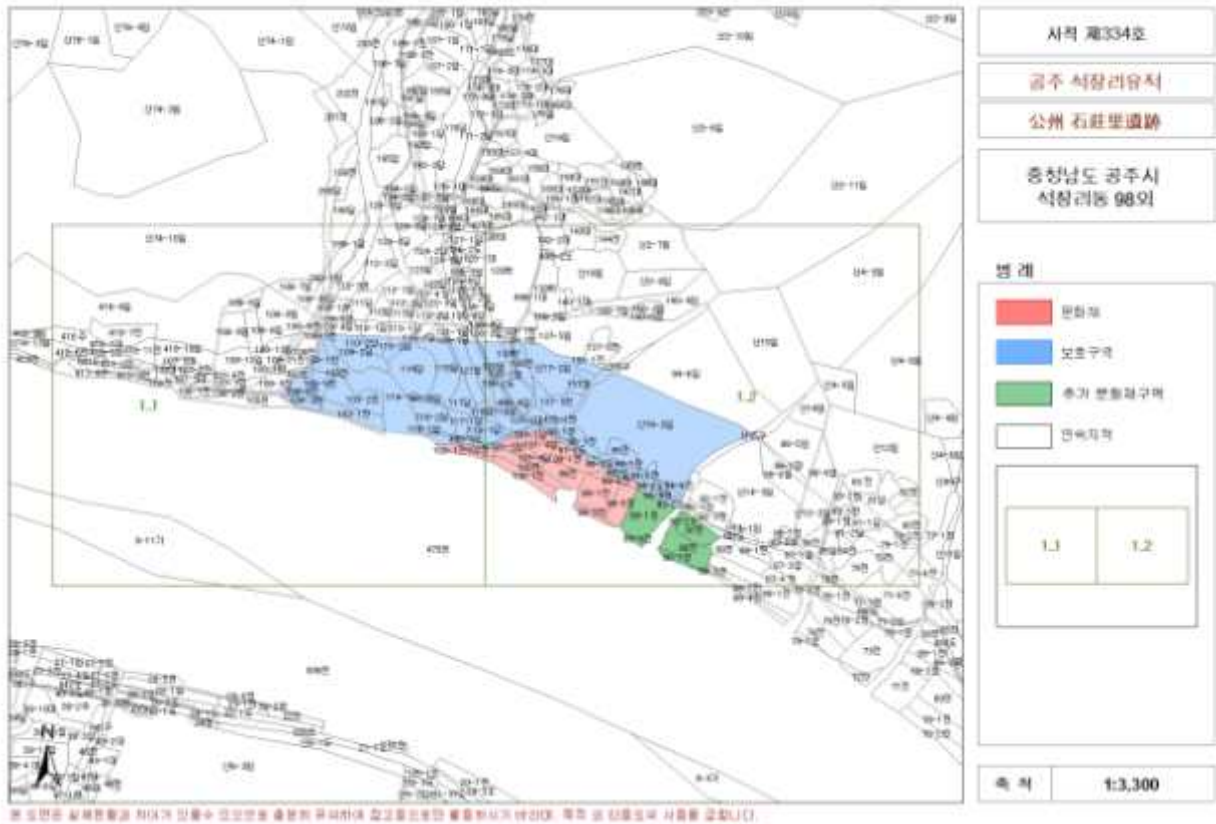
(5)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면적: m<sup>2</sup>)
  - 기존 지정 면적 : 지정구역:16필지 8,344m<sup>2</sup> / 보호구역:57필지 46,251m<sup>2</sup>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지정구역: 5필지 4,526m<sup>2</sup>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지역) (면적단위 :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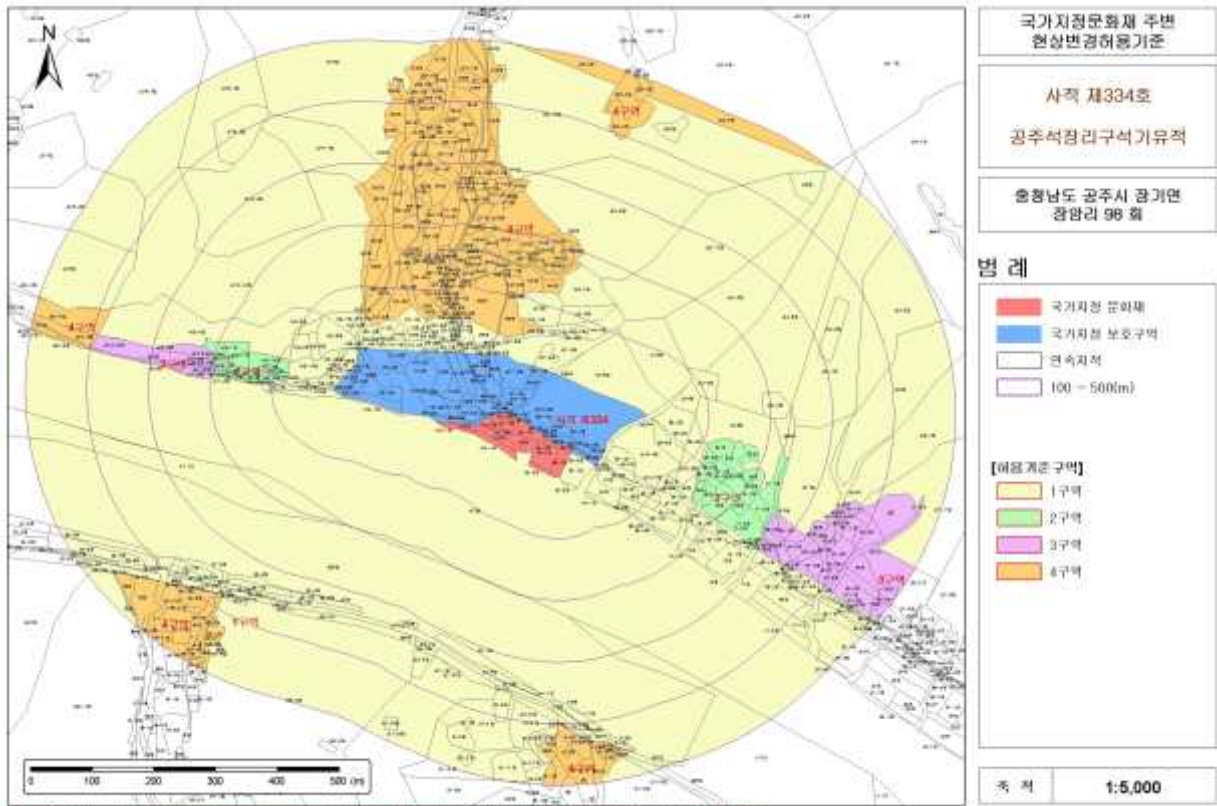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석장리동	90	전	1,382	1,382		
2	석장리동	90-1	전	291	291		
3	석장리동	91	전	913	913		
4	석장리동	93-1	전	1,811	1,811		
5	석장리동	93-3	전	129	129		
계				4,526	4,526		



(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공주 석장리 지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동측으로 연접구역과 같은 허용 기준을 적용시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_석장리구석기유적\_주변\_현상변경허용기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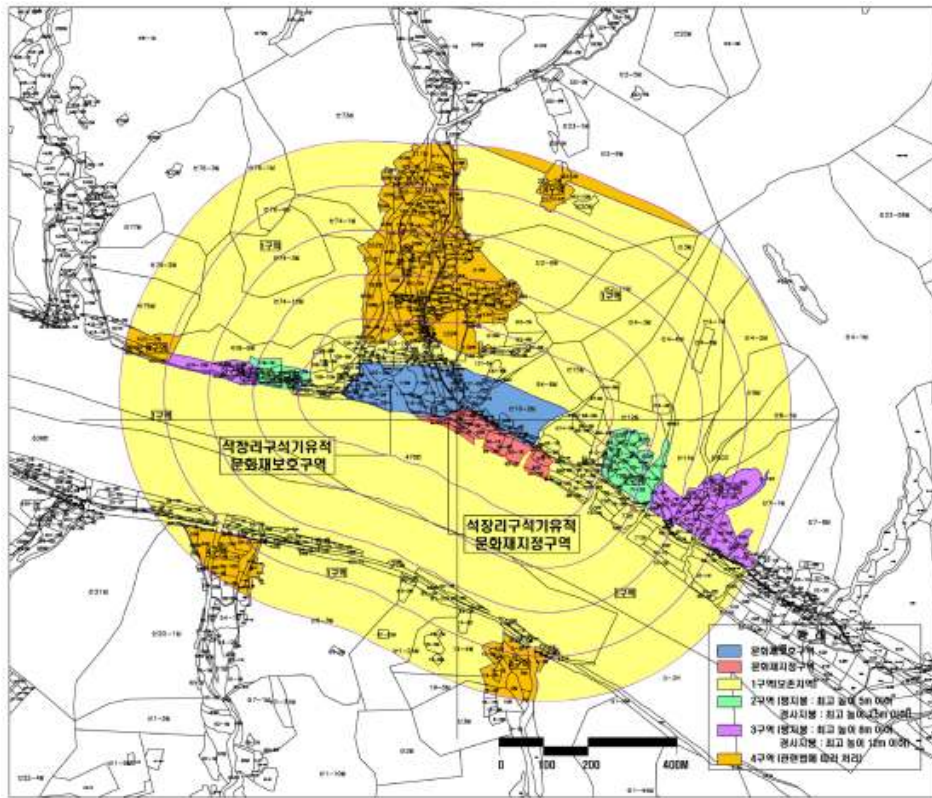


본 도면은 인쇄비용과 재료가 많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검토하셔도 좋으나, 최종이슈의 비리해, 목적 및 타당도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변경\_석장리유적현상변경허용기준(안)



### (7)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석장리 유적과 관련없는 막집의 복원이나 목제 데크, 인위적인 조형물 등의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종합정비기본계획 등의 수립 내용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1 정비 개요

##### 정비계획

- 구석기 막집 복원 전시장

##### 조경 계획

- 사적지와 강변, 박물관 구역 연결 탐방로 정비

##### 기타 계획

- 구석기 선사조형물 설치

#### 2 구석기막집 복원 전시장

- | 우리나라 구석기연구 중 주거의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지남에 따라 이를 다양한 사례를 복원해 구석기연구의 출발점인 석장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구석기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도록 함.



- 막집 복원 전시 : 10동
- 면적 : 200m<sup>2</sup>

### 3] 조경계획

유적과 강변, 박물관권역을 연결하는 산책길을 정비하여 사적지 전체를 자연스럽게 산책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한다.

위치 : 박물관 서쪽 강변, 사적지 연결구역

재료 : 방부목 / 길이 : 172.24m, 폭 : 1.5m

계획안

- 목재 데크 설치
- 관목의 부분적 식재

면적 : 391.13m<sup>2</sup>



탐방로 사례 1(장암리)



탐방로 사례 2 (호안 나루터)

### 4] 선사조형물 설치

사적지가 도로변에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는 선사조형물을 설치하여 구석기 유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선사인 모습이나 석기를 형상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재료 : 청동이나 FRP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선사조형물 사례(FRP)



선사조형물 사례

## (8) 종합 의견

- 석장리 유적은 공주시 석장리동 석장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장군산이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 석장천이 흐르며 남쪽으로 금강과 인접해 있음.
-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문화의 존재가 입증된 유적으로 지금까지 13차례의 발굴 결과,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음.
- 이후 1990년 사적 334호 지정 당시 1964년 최초로 구석기유물이 발굴된 지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최초로 구석기유물이 발굴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 및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하여 13차 발굴조사(2010.6.18. ~ 12.3.)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B지점의 발굴 과정을 통하여, 1964~65년 당시 발굴 흔적이 기록대로 존재하여,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최초 발굴지임을 다시 확인하였음.
- 또한, 조사지역에서 형성된 퇴적층에서 구석기유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중 B지점의 5개의 유물층 가운데, 1·2 유물층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유물층은 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필요함.
- 따라서 상가지역을 사적의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 연천 은대리성 지정·보호구역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천 은대리성의 사적 지정·보호구역을 조정 하려는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14.08.13) 검토 결과 “신청안 중 한탄강 주변 신청구역에 한해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조정)”으로 조건부 가결된 사안임
  - 지정 예고일 : 2014.08.27.(문화재청 공고 제2014-247호)
  - 지정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은대리성(사적 제469호) / 2006.1.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일원 / 관리단체 : 연천군
- (3) 지정신청
  - 지정·보호구역 조정 면적
    - 지정구역 : 32필지 55,705㎡(당초 29필지 19,497㎡)
    - 보호구역 : 3필지 6,427㎡(당초 32필지 42,635㎡)
- (4) 지정신청사유
  - 은대리성 입지여건 및 성 단애부를 중심으로 지정·보호구역을 조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유적을 보존·관리하기 위함.

- 라. 지정조사보고서('14.07.21/문화재전문위원 ○○○, ○○○, ○○○)  
연천 은대리성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4.07.22(화)
- 조사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제 469호 연천 은대리성(지정일:2006-01-02)의 북측 단애 연접부를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함.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연천 은대리성(漣川 隱垈里城)과 일체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연천 은대리성(漣川 隱垈里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은대리성은 한탄강 장진천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삼각형의 하안단구 위에 축조된 성으로 한탄강과 합류하는 곳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지는 형태이다. 남벽과 북벽은 각각 단애를 활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지만 동벽은 동쪽에 형성된 개활지를 가로질러 축조되었다.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천 은대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1995년도에 발간된 『연천군사료집』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추측된다.

은대리성은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성은 현재 길이 약 60m 정도 동벽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벽은 한탄강에 접하여 50~60m 정도의 수직단애에 축조되었고 북벽도 15~20m정도의 단애가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에 축조되었다.

- 외성의 전체 규모는 동서 400m, 남북 130m, 총길이 1,005m 정도이고, 현재 동벽에는 남쪽과 북쪽에서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 내성의 총길이는 230m이며 외성과 유사한 삼각형의 평면형태로 축조되었고 내부 시설물로는 문지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치성 2개소가 확인되었다.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연천 은대리성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된 단애부의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 평지성으로, 현재 북측의 단애부 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탄강과 소하천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것으로서, 현 지형은 은대리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임. 그리고 한탄강과 접하여 습지의 역할과 하천 연결 동선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지정 대상 및 범위

기 지정구역내 지정·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문화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단애부를 포함한 지정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단, 추가 보호구역으로 신청된 구역에 관하여는, 거리개념으로 보호구역을 정할지, 필지 중, 일부 구역만을 정할지는 문화재 위원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정·보호구역 신청 면적
  - 지정구역 : 1필지 959m<sup>2</sup>
  - 보호구역 : 16필지 29,732m<sup>2</sup>
- 지정·보호구역 조정 신청 면적
  - 지정구역 : 32필지 55,705m<sup>2</sup>(당초 29필지 19,497m<sup>2</sup>)
  - 보호구역 : 3필지 6,427m<sup>2</sup>(당초 32필지 42,63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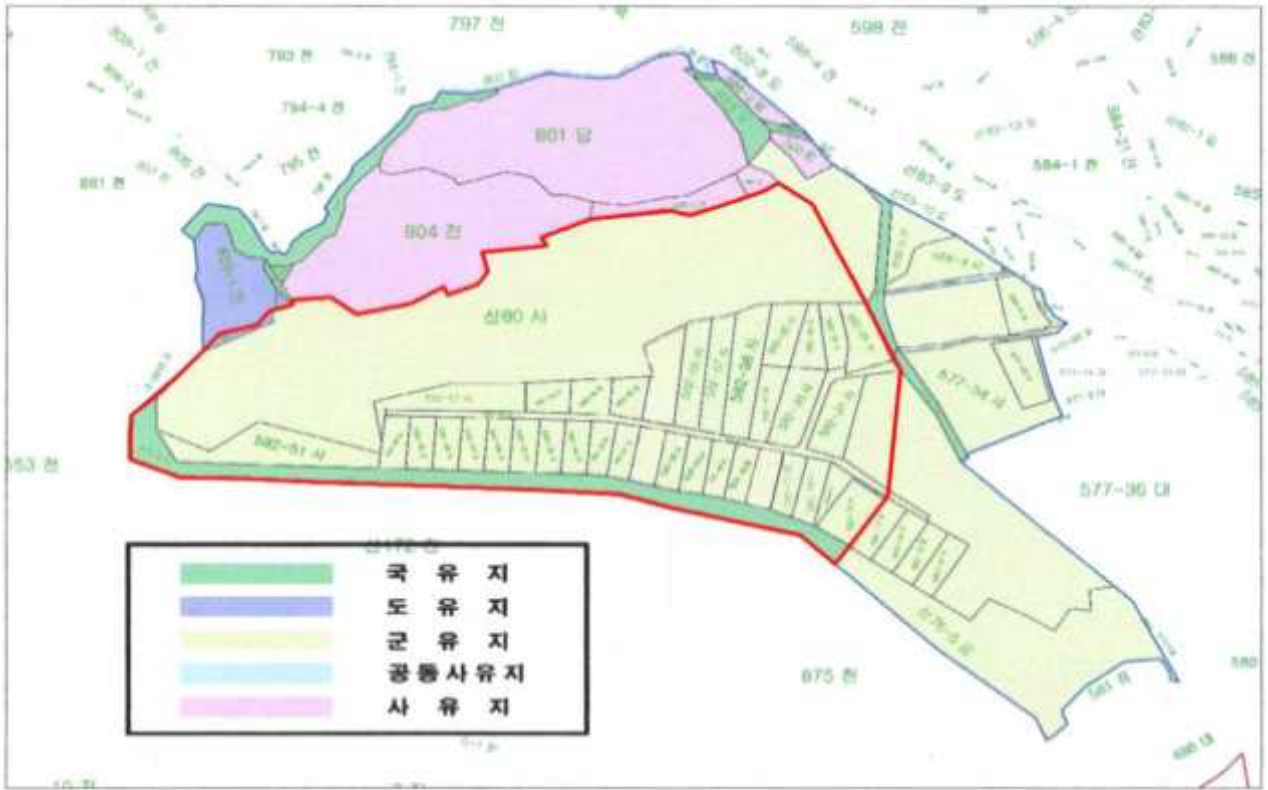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m<sup>2</sup>)

### 사적 추가지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m <sup>2</sup> )	지정 구역 (m <sup>2</sup> )	보호 구역 (m <sup>2</sup> )	소유자	주소
1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00-1	대	288	0	288		
2	“	600-2	전	909	0	909		
3	“	596-2	전	34	0	34		
4	“	598-2	답	499	0	499		
5	“	599	전	508	0	508		
6	“	801	답	12,331	0	12,331		
7	“	804	전	9,432	0	9,432		
8	“	873	도	752	0	752		
9	“	873-2	대	89	0	89		
10	“	874	구	1,961	0	1,961		
11	“	874-2	구	57	0	57		
12	“	882	도	83	0	83		
13	“	804-1	전	82	0	82		
14	“	805	전	55	0	55		
15	“	805-1	전	2,302	0	2,302		
16	“	577-36	대	32,804	959	350		
<b>합계</b>		<b>16필지</b>		<b>959</b>	<b>29,732</b>			

사적 지정·보호구역 조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당초(㎡)		조정(㎡)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1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80-2	임	195	0	195	195	0	
2	"	582-19	사	549	416	133	549	0	
3	"	582-20	사	545	466	79	545	0	
4	"	582-21	사	529	483	46	529	0	
5	"	582-22	사	509	450	59	509	0	
6	"	582-23	사	499	397	102	499	0	
7	"	582-24	사	496	356	140	496	0	
8	"	582-25	사	496	396	100	496	0	
9	"	582-26	사	496	349	147	496	0	
10	"	582-27	사	486	318	168	486	0	
11	"	582-28	사	456	327	129	456	0	
12	"	582-29	사	793	792	1	793	0	
13	"	582-30	사	351	271	80	351	0	
14	"	582-35	사	740	729	11	740	0	
15	"	582-43	사	496	293	203	496	0	
16	"	582-44	사	496	226	270	496	0	
17	"	582-45	사	496	210	286	496	0	
18	"	582-46	사	496	188	308	496	0	
19	"	582-47	사	496	134	362	496	0	
20	"	582-48	사	496	122	374	496	0	
21	"	582-49	사	496	163	333	496	0	
22	"	582-50	사	496	153	343	496	0	
23	"	582-51	사	2,073	919	1,154	2,073	0	
24	"	582-52	사	985	956	29	985	0	
25	"	582-57	사	1,260	1,255	5	1,260	0	
26	"	582-58	사	1,123	873	250	1,018	105	
27	"	582-60	사	32	0	32	32	0	
28	"	582-66	사	992	950	42	992	0	
29	"	582-67	사	992	979	13	992	0	
30	"	산76-5	사	5,256	0	5,256	860	4,396	
31	"	산76-6	사	7,240	102	7,138	7,240	0	
32	"	산80	사	31,071	6,224	24,847	29,145	1,926	
<b>합 계</b>		<b>32필지</b>			<b>19,497</b>	<b>42,635</b>	<b>55,705</b>	<b>6,427</b>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현재 연천 은대리성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지형과 입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 거리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후구역의 추가지정 이후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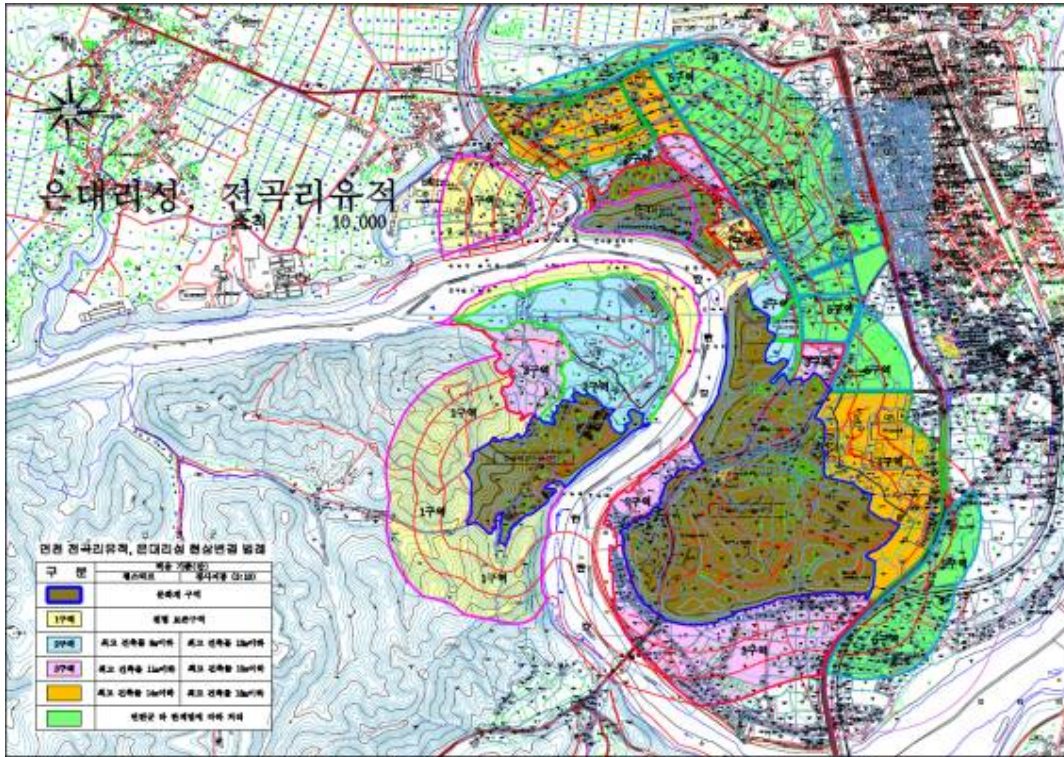
\* 변경전 연천 전곡리 유적 · 연천 은대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신축불가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7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건물신축시 사전에 유구확인조사를 실시토록하고, 매장 유구가 확인되면 문화재청 보존조치에 따르도록 함.		
공통사항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기타 매장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구역은 관련전문가입회하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토록 함 ○ 한탄강관광지 및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업추진시 예외 (문화재청 별도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변경 후 연천 전곡리 유적 · 연천 은대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신축불가, 원형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검토의견 : 주변 정비는 지자체의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지인 고려촌의 경우, 그 입지와 조성이 문화재와 부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방향

- 발굴조사 : 성 내부 및 주변 시·발굴조사(장기적 사업)
- 자연생태공원조성 : 역사숲(갈대 산책로) 조성
- 활용 탐방시설 조성 : 고구려 무사의 문, 고구려촌(역사체험공원), 접안시설(수상관람시설) 조성 등



연천 은대리성 중장기 정비 기본계획안

## 9. 종합 의견

- 연천 은대리성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지류가 만나 형성된 단애부의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 평지성으로, 현재 북측의 단애부 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탄강과 소하천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한 것으로서, 현 지형은 은대리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임. 그리고 한탄강과 접하여 습지의 역할과 하천 연결 동선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이를 위하여 제안된 토지의 16필지 중, 은대리성과 약간 이격된 1필지 (801답)를 제외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안(案) 과, 현 현상변경 허용기준상에 50m 의 범위 내를 보호구역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현황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마. 사적 지정·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사

사적 지정·보호구역 조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당초(㎡)		조정(㎡)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1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80-2	임	195	0	195	195	0	
2	"	582-19	사	549	416	133	549	0	
3	"	582-20	사	545	466	79	545	0	
4	"	582-21	사	529	483	46	529	0	
5	"	582-22	사	509	450	59	509	0	
6	"	582-23	사	499	397	102	499	0	
7	"	582-24	사	496	356	140	496	0	
8	"	582-25	사	496	396	100	496	0	
9	"	582-26	사	496	349	147	496	0	
10	"	582-27	사	486	318	168	486	0	
11	"	582-28	사	456	327	129	456	0	
12	"	582-29	사	793	792	1	793	0	
13	"	582-30	사	351	271	80	351	0	
14	"	582-35	사	740	729	11	740	0	
15	"	582-43	사	496	293	203	496	0	
16	"	582-44	사	496	226	270	496	0	
17	"	582-45	사	496	210	286	496	0	
18	"	582-46	사	496	188	308	496	0	
19	"	582-47	사	496	134	362	496	0	
20	"	582-48	사	496	122	374	496	0	
21	"	582-49	사	496	163	333	496	0	
22	"	582-50	사	496	153	343	496	0	
23	"	582-51	사	2,073	919	1,154	2,073	0	
24	"	582-52	사	985	956	29	985	0	
25	"	582-57	사	1,260	1,255	5	1,260	0	
26	"	582-58	사	1,123	873	250	1,018	105	
27	"	582-60	사	32	0	32	32	0	
28	"	582-66	사	992	950	42	992	0	
29	"	582-67	사	992	979	13	992	0	
30	"	산76-5	사	5,256	0	5,256	860	4,396	
31	"	산76-6	사	7,240	102	7,138	7,240	0	
32	"	산80	사	31,071	6,224	24,847	29,145	1,926	
<b>합 계</b>		<b>32필지</b>			<b>19,497</b>	<b>42,635</b>	<b>55,705</b>	<b>6,427</b>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릉시에서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江陵 臨瀛館)의 명칭을 「강릉 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9.11) 검토를 거쳐 지정명칭 변경 예고
  - 예 고 일 : 201.09.23 (문화재청 공고 제2014-270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예고결과 : 별도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임영관(사적 제388호)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 외
- (3) 신청내용
  - 명칭변경
    - 현행 :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
    - 변경 :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
      - ※ (2안) 강릉부 관아(江陵府 官衙)
  - 명칭변경 요청사유
    - 관아(官衙)는 조선시대 지방행정 기관이 위치한 읍치(邑治) 공간으로, 관아에는 수령의 정청인 동헌(東軒), 국왕의 위패를 모시는 객사를 비롯한 향청, 질청, 관노청, 군기청 등 지방행정 기구를 모두 갖추어 건립된 곳임
    - 강릉 임영관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 강릉부의 객사로 창건된 이래 1929년 일제강점기 훼손되기 전까지 유지된 건물로, 훼손 이전에는 정청(正廳)인 전대청(殿大廳)을 중심으로 좌우 익사(翼舍)로 구성되었음. 전대청은 왕의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지방관이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리던 장소이며, 좌우 익사는 지방군현에 파견된 사신이나 외국 사신이 오갈 때 머물던 숙박 공간임

- 강릉 임영관은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로 객사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공립보통 학교로 활용되다가 관아시설과 더불어 훼손되면서 임영관 삼문만 남게됨
- 현 지정명칭인 강릉 임영관은 1994년 객사 영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며, 2005년 구 강릉 시청사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아 관련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관아 건축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됨
- 강릉 임영관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복원사업에 따라 2006년 전대청, 중대청 및 좌우 익사가 복원 완료되었으며, 객사 전면인 동헌영역의 아문, 동헌 및 별당 등 복원사업은 2012년 마무리됨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복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지역 향토 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지정명칭의 사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지정명칭 변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객사공간과 동헌공간을 포괄하는 명칭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당초 지정명칭인 강릉 임영관은 객사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공간으로서의 동헌공간을 포함한 읍치공간(邑治空間)을 아우르는 명칭으로는 부적합하여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조선조 당시 지방행정 편제인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지정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라. 참고사항

### (1) 강릉 관아지 복원 시점 관련 자문의견('07.2월/○○○)

- 복원 시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구가 복합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의 훼손시기는 조선후기로 추정되고 있어 복원 건축 양식과 구조는 조선 중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 지정명칭 관련 학술세미나 결과('13.11.21)

- 세미나 명 : '강릉 임영관 및 관아'의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 주요내용

구 분	발표자	토론자
(주제 1) 강릉 관아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박○○ (강릉원주대 박물관)	이○○ (관동대 박물관)
(주제 2) 근현대 강릉 도심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	임○○ (관동대)	최○○ (울곡연구원)
(주제 3)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구조와 특성	이○○ (강릉원주대)	박○○ (강릉문화원부설평생교육원)

## ○ 세미나 결과 (요약자료집 발췌)

강릉 임영관 및 관아의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을 위한 학술세미나는 강릉관아 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근현대 강릉 도심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 및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는 최영희의 사회로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박영구, 관동대 임호민, 강릉원주대 이규대의 주제발표와 관동대학교 박물관 이상수 학예연구실장, 울곡연구원 최호, 관동대 박도식 교수 및 참여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릉은 공양왕 1년에 대도호부로 편제되었다. 이후 비록 名號의 陞降 사례가 있었으나 곧 복원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강릉은 대도호부로서 위상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대도호부의 관아는 邑城으로 에둘러져 있었다. 이곳이 治所로 결정된 시기는 이 지방의 읍호가 '東原京'으로 승격된 고려 초기였다. 이 시기 치소는 이전되면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전의 치소가 어디였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치소의 이전은 邑號의 승격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이것은 나말의 혼돈한 시기에 지방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온 '溟州豪族'의 역할과 성과를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읍성의 형세는 북서쪽이 구릉지이며, 동남쪽은 남대천을 성 밖에 둔 평지에 구축되었다. 조선 초기 읍성은 土城이었으나 16세기 초반에 石城으로 개축되면서 높이 9척에 둘레는 3,782척으로 토성에 비해 다소 규모가 축소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읍성에는 문루가 축조된 東·南門을 비롯해 4대문이 건립되었고, 간선 도로가 이어지는 동문과 남문이 중심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邑治 공간에는 관아의 각종 公廡, 鄉吏를 비롯한 官屬들의 생활공간인 읍성마을, 관아 庭園이 배치되었다. 이로서 읍치는 국가 권력과 수령의 통치권, 아울러 이 지방의 邑勢와 位格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 전승되는 고려시대 건축물인 '臨瀛館 三門'과 수령의 생활공간인 '內衙(七事堂)'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하면서도 절제된 단아한 멋과 품격은 이 지방의 위상과 풍토의식이 구현된 산물이라 의미를 가진다.

읍치 공간의 공해는 客舍·衙舍·倉으로 3대별 된다. 이러한 기능을 중시하는 구분법은 古地圖 상에서 조선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地理誌 상에서 각종 공해는 18세기 중반까지는 종류별 명칭만이 파악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종류별로 부속건물과 칸수를 비롯해 각 부서별 인원 배치 상황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양식의 변화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편승하여 관아의 기능이 세분화하고 나아가 읍치 공간의 건축과 조경 의식이 반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서 읍치 공간은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39개 동의 공해와 2곳의 정원에 수령과 좌수를 비롯한 186명의 향리와 관속들이 배치되었으며, 읍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규모를 古地圖 상의 배치도에 근거하면 客舍·衙舍·鄉廳·府司가 주요 공해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읍성 내에 배치되었으면서도 각 공해별로 별도의 담장으로 에둘러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방사회 운영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각각의 기능이 중시되는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즉 객사와 아사는 국가권력과 수령의 統治權의 상징적 공간이라면, 향청과 부사는 이 지방 양반 사족의 鄉權과 戶長을 비롯한 향리세력에 邑權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강릉대도호부의 읍성과 관아의 배치 구조 및 인적구성을 염두에 두면 이곳에 설정된 사적지 명칭은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성을 가진다고 보겠다.

기존에 이곳은 사적 제388호의 명칭은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이었다. 이것은 객사 공간만이 사적지로 지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즉 강릉 객사는 “임영관”이라는 別號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객사 공간을 넘어 내·외아를 비롯해 각종 공해가 배치되었던 공간을 포함하여 사적지가 확대 지정되었고, 이러한 형상 변경으로 그에 준하는 사적지 명칭 변경이 요구되기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새로이 확장된 사적지의 명칭은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가 그 적합성을 갖는다. 즉 그동안 전개해 온 복원사업은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근거를 확보하였고, 만약에 추후 같은 사업이 계획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시기의 상황에서 그 근거가 확보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보겠다.

다만, 전주이씨종친회 강원도지회에서 참석하신 청중께서는 ‘도호부’의 용어가 중국에서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써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도호부는 중국 唐代 屬地支配를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고려 성종대 처음 설치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구로 편제되어 기능을 해왔던 역사적 사실과 왕조실록 등 기록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수긍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에 대한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 결과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사적지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수합하는데 무리가 없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지방관아 연구는 공해건물뿐 아니라, 읍치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로도 강릉대도호부 관아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더불어 강릉읍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발표자, 토론자 및 청중의 다수 공감이었다.

### (3) 관계전문가 의견('14. 8월)

#### < 문화재위원 고혜령 >

##### 1. 연혁

- 1389~1412 강릉대도호부
- 1413~1666 강원도에 속함, 강릉대도호부
- 1666~1675 현으로 강등, 강원도-> 원양도로 바뀜
  - \* 박옥지(朴玉只)가 자기 부친을 생매장한 데 따른 벌로 바뀌었음
- 1675~1782 강릉대도호부로 다시 승격
- 1782~1789 현 , 강원도-> 원춘도로 바뀜
  - \* 대역부도의 역명사건 가담자인 이택징(李澤徵)의 고향이 강릉이라는 이유로 강등, 7년 후에 다시 강릉대호부로 복원
- 1798~1895 강릉대도호부
- 1895 관찰부 설치
- 1896 전국 23개 부-> 도로 개편. 강릉군

##### 2. 강릉 관아

- 조선 영조 때인 1750년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영지 臨瀛誌》에 의하면, 임영관은 936년(고려 태조 19)에 창건되었고, 그후 1627년(인조 5) 대청(大廳)이 화재를 당하여, 1633년 부사 유문화(柳文華)가 다시 건축. 그 후 수차례의 중수와 중창을 거쳐 1927년에 이르렀음.
- 《임영지》에 의하면, 강릉객사의 규모는 전대청(殿大廳) 9칸, 중대청 12칸, 동대청 13칸, 낭청방(廊廳房) 6칸, 서헌(西軒) 6칸, 월랑(月廊) 31칸, 삼문(三門) 6칸 등 모두 83칸이었다고 함.
- 임영관 편액 : 본래 공민왕이 1366년(무오년)에 낙산사 관음에 후사를 빌기 위하여 왔다가 길이 막혀 열흘동안 강릉에 머물렀을 때 쓴 ‘臨瀛館’ 편액이 있었음. 현재 것은 1970년에 모사 제작한 것.

### 3. 「강릉대도호부」 사용 사례

#### 1) 세종실록 지리지

\* 지리지 / 강원도 / 강릉 대도호부

⊙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 사(使) 1인, 관관(判官) 1인, 유학 교수관(儒學教授官) 1인.

- 고려 원종(元宗) 원년 경신에 공신 김홍취(金洪就)의 고향이라 하여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로 승격하였고,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 강릉부(江陵府)로 고쳤다.

-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에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하였고, 본조에 서도 그대로 따랐는데, 별호는 임영(臨瀛)이라 한다.

- 호수가 1천 25호요, 인구가 3천 5백 13명이다. 연곡(連谷)의 호수가 1백 단(單) 4호요, 인구가 2백 51명이며, 우계(羽溪)의 호수가 2백 25호요, 인구가 7백 75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백 65명이요, 선군이 2백 50명이다.

- 관할[所領]은 도호부가 1이니, 양양이요, 군이 2이니, 정선(旌善)과 평창(平昌)이다.

#### 2) 실록(국역) : 29건

- 태종 10, 세종 5, 세조 2, 성종 9, 명종 2, 선조 1.

- 주로 관직을 내릴 때 사용: 강릉대도호부사

#### 3) 승정원일기 : 10건

- 인조 1, 순조 1, 고종 8

- 관직명으로 사용 : 강릉대도호부사

#### 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 호구단자 : 발급기관으로서 ‘강릉대도호부사’ 또는 ‘강릉대도호부’ 사용

- 준 호 구 : ‘강릉부’를 더 많이 사용.

\* 호구단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 준 호 구 :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며, 개인이 호적에 실릴 내용을 작성해 관에 올리는 호구단자에 대비된다.

### 4. 「강릉부」 사용 사례

#### 1) 실록 (국역) : 191건

- 태조3년(1394).3.24.~고종 32년(1895).5.26 까지 지속적으로 나옴

- ‘강릉부’, ‘강릉부사’ 등 사용 : 지역명이나 관직명으로 사용

- 현으로 강등된 시기에도 ‘강릉부’라는 명칭 사용

- 고종 33년(1896, 대한 건양(建陽) 1년) 3월 7일(양력) 1번째 기사 : 이위와 이근호를 증추원 1등의관에, 서정규를 강릉부 관찰사에 임명하다

2) 승정원일기 : 746건

- 인조원년 9.12.~고종 25년 12.13. 까지 사용
- 강릉부, 강릉부사, 강원도 강릉부 : 지역명, 관직명으로 사용
- 강릉부사와 강릉대도호부사를 병용 :
  - 순조 19년 9월10일 “任俊常爲江陵府使”
  - 순조 19년 9월 17일 “而江陵大都護府使任俊常, 時在公清道沃川地...”

3) 비변사등록 : 167건

- 인조23년(1645).6.18 ~ 고종23년(1886)2.2.까지
- 강릉부, 강릉부사 사용

5. 지도

- 해동지도에 강릉부로 표기

6. 조선시대 지방 제도<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신편한국사 23권 참조>

수령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품계	종2	정3	정3	종3	종4	종5	종6

<도별 감사이하 관원 통계>

구분 \ 도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영안	합계	
監 營 소재읍	광주	청주	상주	전주	원주	해주	평양	함흥	8	
監 司 (종2)	1	1	1	1	1	1	1	1	8	
都 事 (종 5)	1	1	1	1	1	1	1	1	8	
守 令	府 尹(종2)	·	·	1	1	·	·	1	1	4
	大都護府使(정3)	·	·	1	·	1	·	1	1	4
	牧 使(정3)	4	4	3	3	1	2	3	·	20
	都護府使(종3)	7	·	7	4	5	4	6	11	44
	郡 守(종4)	7	12	14	12	7	7	18	5	82
	判 官(종4)	5	1	7	6	3	4	8	·	34
縣 令(종5)	5	4	5	5	2	2	6	6	35	
縣 監(종6)	14	37	34	31	9	7	5	4	141	

7. 객사(客舍)

- 객관(客館)이라고도 한다. 객사는 고려 초기부터 있었으며 외국사신이 내왕할 때 이곳에서 묵으면서 연회도 가졌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객사에 전패(殿牌 :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로, ‘전(殿)’자를 새김)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망궐배(向望闕拜 : 달을 보면서 임금이 계신 대궐을 향해 절을 올림.)하는 한편,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하였다.

- 건물의 구조는 정당(正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실(翼室)을 두고, 앞면에 중문(中門)·외문(外門), 옆면에 무랑(廡廊) 등이 부속되었다. 정당은 기와와 돌을 깔고 좌우의 익실은 온돌로 하였다. 객사는 각기 명칭이 있는데 평안도의 예를 들면 중화(中和) 객사는 생양관(生陽館), 순안(順安) 객사는 안정관(安定館), 숙천(肅川) 객사는 숙녕관(肅寧館), 안주(安州) 객사는 안흥관(安興館), 가산(嘉山) 객사는 가평관(嘉平館)이다.

## 8. 관아

- 관원들이 정무를 보던 건물로서 관서(官署)·공해(公廡)라고도 한다.
- 지방 관아의 대표적인 건물은 현감이 주재하고 있던 동헌(東軒)이고 현감의 살림채인 내아(內衙)가 따른다. 또한, 좌수·별감이 집무하던 향청(鄉廳), 육방(六房)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作廳),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공수청(公須廳), 군장교의 장청(將廳), 죄를 다스리던 형방청(刑房廳), 노복들의 관노청(官奴廳), 죄인을 가두는 형옥(刑獄) 등이 모두 갖추어 건립되어 있다.
- 객사는 따로 쌓은 담장 속에 있는데, 객사는 꺾패(闕牌)와 전패(殿牌)를 모셔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하여 망배(望拜)하던 곳으로, 엄밀히 말해 관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9. 결론

- 조선시대 강릉의 정식 명칭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강릉대도호부” 였음.
- 명칭의 사용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강릉대도호부” 였으나,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는 “강릉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대도호부는 한성부 등의 읍격 다음으로 높아서 “대도호부사”와 “목사”는 비슷한 읍격을 가져 정3품으로 임명하였음.
- 강릉시의 의견은 정식명칭인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표기하기를 원함.
-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사적의 명칭을 부여할 경우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관계 전문가 의견('13.10월)

< 문화재위원 ○○○ >

가. ‘강릉’ → ‘강릉대도호부’ 변경 관련

- 강릉의 행정명칭 연혁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하서주, 명주도독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동원경, 명주도호부, 명주목, 삭방도, 경흥도호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오다가, 고려말 공양왕원년(1389) 강릉대도호부로 승격하였음.

이후 조선시대에는 대도호부의 명칭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으로 현으로 격하된 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896년 고종대까지 계속되었음

- ‘사적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제2항에, 궁터 관아 성터시설물 등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에는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라 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관아 사적의 명칭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 전북 고창군
  -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 제주 제주시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 충남 부여군
  -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金堤郡 官衙와 鄕校) / 전북 김제시
  -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羅州牧 官衙와 鄕校) / 전남 나주시
  -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巨濟縣 官衙) / 경남 거제시
- 이들은 모두 현, 목, 군 등 관아가 사용되던 당시의 지방행정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 따르면 강릉의 경우도 조선시대 관아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던 대도호부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대도호부는 부윤과 도호부사가 파견되는 읍의 중간에 해당하며 목사(牧使)가 되는 고을과 같다. 이곳 수령인 대도호부사는 정3품으로 부윤·목사와 함께 주로 문신이 임명되는 청환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안동, 강릉, 영변, 영흥창원에 대도호부를 두었다.

- 그러나, 조선시대 행정 명칭에서 대도호부는 몇 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호부’라는 명칭이 자칫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 당나라가 고려 옛 땅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 백제 옛 땅에 두었던 웅진도독부, 신라에 두었던 계림대도독부 등의 명칭을 연상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호부’라는 인식이 갖는 좋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음

#### 나. ‘임영관’ → ‘관아’ 변경 관련

- 임영관은 강릉 객사의 별칭으로 이 객사는 고려 태조 19년(936) 본 부(府) 객사로 총 83칸의 건물을 창건하고 임영관(臨瀛館)이라 하였으며 공민왕 15년(1366) 왕이 낙산사로 행차 도중 현액을 친필로 썼다고 전함
- 강릉시는 2012년까지 객사를 비롯한 관아, 즉 동헌과 별당 그리고 의운루 등을 복원하였고, 이에 따라 ‘임영관’이 객사 공간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새로 복원된 관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지번 범위 속에 객사와 관아 들을 복원한 것이라면, 실제와 맞게 전체를 포괄하는 ‘관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그러나, ‘관아’ 라는 평범한 일반명칭으로의 변경은 자칫 강릉시 史蹟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임영관” 이라는 명칭에 비해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임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일반 지침과 사실의 부합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 문화재위원 ○○○ >

- 현재 강릉 읍치 공간에는 객사인 임영관과 함께 국보 제51호 ‘임영관 삼문(臨瀛館 三門)’ (1962년 객사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명칭 변경),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 (1994년 강릉임영관지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명칭 변경),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七事堂)’이 있다. 국보 제51호 ‘임영관 삼문’은 고려 말엽의 건축물이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은 조선시대 건축물임
- 본 사안의 논의대상은 첫째 행정명칭의 부기 문제이고 둘째는 사적 대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행정명칭은 고을의 지위에 따라 성곽이나 관아의 규모도 달랐으므로 가능하면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모두는 아니지만, 기왕의 사적 명칭 부여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이를 준용하고 있음. 예컨대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金堤郡 官衙와 鄉校),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羅州牧 官衙와 鄉校),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巨濟縣 官衙)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관례를 따라 ‘강릉(江陵)’ 보다는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사적 명칭과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객사 ‘임영관’은 단독 건물로 본다면 사적이기보다는 보물이 더 적합하나 최초 지정 당시는 건물이 아닌 객사 영역을 대상으로 ‘임영관지’로 사적 지정(1994년)됨. 그러다가 부속 건물지들이 발굴조사됨으로서 사적 구역이 확대(2005년)되고 복원이 이루어진 문화재임. 현재의 명칭 ‘강릉 임영관’은 이러한 복원에 따른 현상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임영관지’에서 ‘임영관’으로 변경된 것임(2011년)

- ‘강릉 임영관’이라는 사적 명칭은 당초 객사 공간을 한정하여 지정된 것이나,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으로 현재는 사적 구역이 확대 지정되어 객사인 임영관과 더불어 동헌, 그리고 칠사당 공간을 아우르는 영역이 되었음. 따라서 ‘강릉 임영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들 읍치공간(邑治空間)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의 사용이 필요함. 그리고 이 읍치 공간 전체를 함축하는 용어로서는 기존의 사적 지정명칭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관아(官衙)’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의 명칭을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5) 「강릉 임영관」 및 부속건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 내역**

일 자	구 분	내 용	비고
1962.12.20	신규지정	「객사문」(국보 제51호)	
1971.12.16	신규지정	「칠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7호)	
1994.07.11	신규지정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 1필지 8,423㎡	
2005.09.06	추가지정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관아지 추가지정(10필지 10,528㎡)	
2010.09.29	명칭변경	「강릉객사문」→「강릉 임영관 삼문」 - 임영관 삼문으로 변경, 띄어쓰기 적용	
2011.07.28	명칭변경	「강릉임영관지」→「강릉 임영관」 - 복원에 따른 ‘지(址)’ 삭제, 띄어쓰기 적용	
2012.10월	복원완료	(1차 복원) 2000~2006년 - 전대청, 중대청, 동대청, 좌우 의사 등 (2차 복원) 2007~2012년 - 동헌, 별당, 아문, 의운루 등	

**(6) ‘사적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발췌 (문화재청 예규)**

조 항	내 용
제2조 (일반원칙)	<p>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li> <li>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li> <li>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li> <li>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li> </ol>

조 항	내 용
제3조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li> <li>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li> <li>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li> </ol>
제4조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li> <li>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li> <li>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제5조 (지정명칭 변경)	<p>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li> <li>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li> <li>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li> <li>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li> </ol>
제6조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li>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li>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li> <li>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li> </ol> </li> </ol>
제7조 (기타)	<p>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7) 유사 문화재의 명칭 부여 사례

종 별	문 화 재 명	소재지	현 황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전북 고창군	객사, 동헌, 읍성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제주 제주시	관아건물 복원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夫餘 鴻山顯 官衙)	충남 부여군	객사, 동헌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金堤郡 官衙와 鄉校)	전북 김제시	동헌, 내아, 향교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羅州牧 官衙와 鄉校)	전남 나주시	객사, 동헌 등 복원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巨濟縣 官衙)	경남 거제시	객사, 질청

(8) 강릉시 연혁(신라~조선시대/ 강릉시 홈페이지 발췌)

구분	연 도	내 용
신라	397(내물왕 42년)	하슬라주(何瑟羅州)가 신라(新羅)의 영역(領域)이 됨
	512(지증왕 13년)	하슬라주 군주(軍主) 이찬(伊漣)라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함
	639(선덕여왕 8년)	하슬라주를 북소경(北小京)으로 삼고 사창(沙滄) 진주(眞珠)에게 지키게 함
	658(태종무열왕 5년)	북소경을 파(罷)하여 하서주(河西州)로 삼고 도독(都督)을 두어 지키게 함
	757(경덕왕 16년)	하서주를 명주(溟州)로 고치고 9군 25현을 둬 고려
고려	936(태조 19년)	명주를 동원경(東原京)이라 개칭하고 임영관(臨瀛館)을 세움
	940(태조 23년)	동원경을 다시 명주라 칭함
	983(성종 2년)	하서부(河西府)로 칭함
	986(성종 5년)	명주도독부(溟州都督府)로 개칭
	992(성종 11년)	명주목(溟州牧)으로 개칭 목사(牧使)를 임명
	1178(명종 8년)	연해(沿海) 명주도(溟州道)로 개칭
	1261(원종 1년)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로 승격됨
	1263(원종 4년)	강릉도(江陵道)로 개칭
	1308(충렬왕 34년)	강릉부(江陵附)로 개칭
	1388(우왕 14년)	교주(交州) 강릉도로 개칭
1389(공양왕 원년)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로 승격, 별호를 임영(臨瀛)이라 함	

구분	연 도	내 용
조선	1457(세조 3년)	강릉대도호부에 진(鎭)을 설치하고 이부(二府) 사군(四郡)이현(二縣)을 관할함
	1666(현종 7년)	강릉대도호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됨
	1675(숙종 원년)	강릉현을 다시 강릉대도호부로 복원함
	1782(정조 6년)	다시 강릉현으로 격이 낮아짐
	1789(정조 13년)	강릉부로 복원됨
	1895(고종 32년)	강릉부의 관할구역이 평해(平海)에서 흡곡군(翁谷郡)까지로 됨
	1896(고종 33년)	강릉군으로 개칭하고 21개 면을 관할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5.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 내 남산 회현자락 공원 조성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 내 남산 회현자락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인 남산 회현자락에 위치한 한양도성 성곽 보존·정비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남산 회현자락 공원조성(3단계)>
  - 위치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일대(연결유적지)
  - 사업내용
    - 규모 : 부지면적 45,000㎡, 성곽 보존·정비 189.3m
    - 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문화재공사	터파기 273.56㎡, 되메우기 424.74㎡, 식생매트 1,373.28㎡, 성곽돌해체 11.66㎡, 속채움석해체 231.72㎡, 성곽돌쌓기 50.6㎡, 속채움석쌓기 216.74㎡, 성곽돌보충 55.18㎡, 성곽돌가공 292.9㎡, 성곽돌세척 255.47㎡, 흔적표시 146m, 성곽 및 배전지 보존처리 1식	
조경공사	상록교목 148주, 낙엽교목 89주, 식생매트 4,500㎡, 매점1개소, 데크로드 1개소, 장대석계단 11개소, 장대석담 103m, 유적안내판 6개소, 화강석통석포장 1,985㎡, 사고석포장 954㎡, 인조석채블럭포장 1,450㎡, 자연토포장 541㎡, 자연토포장 541㎡, 잔디보호매트 1,479㎡, 부정형판석포장 202㎡	
토목공사	콘크리트 철거 1,983㎡, 아스팔트 철거 590㎡, 흙깎기 10,290㎡, 흙쌓기 2,167㎡, 우배수공사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10.28/문화재전문위원 ○○○, ○○○)

- 발굴된 성곽의 보존을 위해 잔존 성벽이 주변보다 낮은 구간은 면석을 1~2단 정도를 더 쌓아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사면유출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성곽의 내부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내부 경사가 급한 구간의 잔디 식재와 식생 매트는 재검토
  - 면석은 기존 성곽석과 구별될 수 있도록 재질이 다른 석재를 사용할 것
- 배전지는 HUL(Historic Urban Landscape)의 개념 및 복합된 시간의 Layer 측면에서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발굴된 성곽, 배전지, 분수대 등에 대한 통합적/입체적인 전시연출계획을 강구한 후 그에 적절하도록 조경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요망됨
- 잔존 성벽이 1~2단으로 낮고 내부 경사가 급한 산림구간은 우선 보존 조치하고 향후 복원 방향이 정립된 후 개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구간에는 기존의 은행나무 등 대형목을 존치하고 수목 식재보다는 초화류 중심의 식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2) 추진경과

- '09년 : 남산회현자락 1,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0~'12.5월: 남산회현자락 1,2단계 공사완료
- '13.2.20 : 한양도성 및 공공조경가 자문
  - 발굴은 한양도성과 조선신궁터, 1,2단계와 같은 신규로 축성은 지양
- '13.5.10 : 1차 자문회의
  - 3단계 구간은 '한양도성+조선신궁+1960~70년대'라는 세 개의 역사적 층위가 쌓여있는 장소로 한 시점의 역사만을 발굴 복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60~70년대 층위는 한양도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로 남겨지는 것이 필요
- '13.6.7 : 2차 자문회의
  - 3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발굴, 정비와 병행하여, 일제가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남산을 훼손하여 조선신궁을 건립한 과정에 대한 연구 필요
- '13.8.9 : 3차 자문회의(분수대 처리 방안)
  - 3단계 구간은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는 곳으로 1960,70년대 역사적 층위가 조선시대를 압박하는 수준이면 안될 것으로 한양도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 '13.10.18 : 4차 자문회의(현상공모 설계지침)
  - 한양도성 1,2단계와 같은 축조 지양,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존중 필요하나, 한양도성이 있었던 역사가 우선시되어야 함
- '13.11~12월 : 설계공모
- '13.12.13 : 5차 자문회의(설계공모 당선안에 대한 의견)
  - 회현자락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조선신궁철거에 따른 지형회복안 및 분수대 철거안은 재검토
  - 도성 전구간의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여 현장박물관으로서의 보존 방안 재검토
- '14.2.4 : 6차 자문회의
  - 대상구간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에 의해 여러 유형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면의 검토 필요
- '14.5.19 : 7차 자문회의
  - 발굴구간 전체 노출에 대한 보존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학술대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 적용 필요
- '14.7.28/30 : 8차 자문회의
  - 성벽 구간의 구체적인 보존처리방안 제시 필요
- '14.8.5 : 유적발굴조사 현장 자문회의
  - 도성정비에 따른 명확한 지침 필요. 기존 등산로 구간 추가 발굴 필요
  - 분수대와 배전지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14.8.7 : 기자설명회
- '14.8.20 : 한양도성도감 자문위원회
  - 도성보존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관계기관에서 정립 후에 공원정비가 되어야 함
  - 현장박물관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도성 구간현황에 따른 접근성 재검토 필요
  - 도성 재설치 방안은 진정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원형그대로를 보여줄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적으로 지정 시 도성으로부터 20m 이내 보호구역으로 설정됨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
- '14.8.26 : 9차 자문회의
  - 원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검토
  - 멸실 구간 흔적표시는 별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수대구간 메모리월이 다소 과도한 듯함
- 안정성 확보등 단기적 결정이 난해한 구간은 우선은 묻어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
- '14.9.12 : 제5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개최(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 '14.9.16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배전지, 분수대 등의 유적들은 교양시설의 형태로 하여 시민에게 제공
  - 현장박물관으로의 이용 시 유적 노출에 대한 보존방안 제시 필요
  - 미래시점을 고려하여 현대 시대의 유구들을 포함,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는 방향 검토
  - 단기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전시방향 설정과 보존방안 등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장기적 층면에서 가역성있는 설계로 시대마다 공감대 있는 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필요
  - 층위별 유구들을 점적으로 조합 시에는 불완전하게 되므로, 한시대의 층위는 주변 요소도 같이 남겨 제대로 된 흔적을 남겨야 함
  - 확인된 사실만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고증되지 않은 축성은 무의미)
  - 한양도성을 우선하며, 이에 따른 원지형회복에 대한 검토 필요
  -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복원하고 다른 층위는 라이팅 등의 기법으로 보여주는 식의 방안 검토
- '14.10월 : 실시설계
- '14.10.21 :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3) 발굴조사 결과

- 아동광장 발굴조사('09~'11년)
  - 한양도성 성곽 34m 확인, 다수의 반방전과 기와 확인, 벽전을 활용한 여장 축조의 가능성 및 성곽 부속시설의 존재 확인
  - 조선후기 자기류와 조선신궁진좌제 기념메달, 일제강점기 지적경계석 등 조사
- 백범광장 발굴조사('10~'11년)
  - 한양도성 성곽 42.4m 확인, 태조대 쌓은 구간과 세종대 고쳐쌓은 구간 확인
  - 15세기 초 분청사를 비롯하여 자기류와 도기류, 각종 기와류 등 출토
- 중앙광장 발굴조사('13~'14년)
  - 한양도성 135.6m 잔존, 태조-세종-숙종대 이후까지 시기별 다양한 축조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한양도성 유구 확인

- 조선신궁 배전지 : 조선신궁 15개 건물군 중 하나인 배전(拜殿) 유구, 가로 18.6m, 세로 14.8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
- 회현자락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14년)
  - 한양도성 53.7m 잔존, 태조+세종+숙종연간 이후의 축성양식이 모두 확인. 각자성석 1점 확인(60번째에 해당)

**(4)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의견**

- 한양도성을 통합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사적)’로 지정, 동일한 체계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을 검토해 줄 것
  - 문화재(사적) 지정을 할 때 현재 발굴구간만 한양도성의 확장으로 할 것인지, 조선신궁 등과 같이 별도 사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야 하며,
  - 한양도성 확장형태로 지정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과 같이 20m로 할 것인지, 조선신궁 등을 포함하여 확장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발주 중인 ‘완충구역 관리기준 수립용역’ 팀, 역사문화재과, 전문가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 지정신청 구간 등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함
- 문화재(사적) 지정 후 설계가 진행되었으면 하지만, 일정상 불가피하다면 우선 문화재(사적)로 생각하고, 좀 더 문화재, 세계유산 관점에서 현재 설계를 보완되었으면 함
  - 남산 회현자락은 문화재 지정 범위 등의 검토결과, 설계 방향 및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조선신궁터 옹벽, 분수대 일부 철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설계 내용은 문화재 지정과 세계 유산 등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설계 범위는 문화재(사적) 지정 범위를 고려하여 좀 더 폭 넓게 고려하여 설계가 되었으면 함
  - P7에서 제시한 ‘주요자문의견’이 잘 정리는 되어 있으나, 문화재(사적) 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였으면 하고, 설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설계는 공원 위주로 보여지는 데, 공원이라고 보지 말고 유적지 박물관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창의적 개입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유적 보호를 위한 보호 지붕의 설치, 다른 구간에서 보여 주기

- 어려운 단면, 성곽의 축조과정 등을 보여주는 설계 등
- 한양도성, 조선신궁, 분수대, 남산식물원터 등의 여러 층위가 있었던 곳인데 현재 설계에서는 전체 스토리가 보여지질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P20 산림구간에 순성을 위해 보여지는 데크부분은 지형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고려해 볼 것 등
- 향후 추진방법은 현재 설계(안)에 대하여 2~3명의 한양도성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집중 논의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임
- 추천 위원 : ○○○, ○○○, ○○○ 위원
- 집중 논의과정에서 필요시 좀 더 포괄적인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과제(과업)를 책임있게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현재 설계팀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것
- 단일 유적에 대한 업무는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등은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임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6.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 존치기간 연장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10.2.16부터 현재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하고 있음
  - 기 허가내용
    - 허가기간 : '12.11.19~'14.12.31
    - 허가조건 : 존치기간은 '14.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가.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존치 또는 철거 등에 관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것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병영생활관 존치기간 연장>
  - 내용
    - 건축면적 : 344.95m<sup>2</sup>
    - 연면적 : 549.14m<sup>2</sup>
    - 높이 : 8.5m(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 라. 참고사항

### (1) 추진경과

- '09.9.30 : 군사시설 무단 신축 (국방부)
- '09.10.30~12.11 : 군사시설 신축 공사중지 통보 (4회/종로구 공원녹지과)
- '09.12.2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 (종로구→ 문화재청)
- '10.1.8 : 문화재위원 등 현지조사(문화재위원 ○○○ 등 3인)
  - 조사의견 : 신축 예정 건축물은 지상 2층(높이 8.5m) 건물로 한양도성보다 그 높이가 높아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획의 수정 필요
- '10.1.13 :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설치하는 시설물이 성벽높이보다 높아 역사문화경관 저해
- '10.2.10 :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0.2.15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문화재청→종로구)
  - 병영생활관 지붕 및 난간, 벽체 등 외부의 색채, 모양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시행함
  - 병영생활관 신축 및 준치허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함
  - 병영생활관 준치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준치 또는 철거 등에 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10.10.7 :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부대 포함)에 허가조건 이행계획 회신요청 공문 발송
  - 한양도성 주변 군사시설 설치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추진
  -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 신축 건은 한시적으로 현상변경 허가한 사항으로 허가조건 이행계획을 우리 청에 제출
- '12.11.01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종로구→ 문화재청)
- '12.11.20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 및 허가통지
  - 병영생활기간 연장은 2014년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함
  - 병영생활관 준치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준치 또는 철거 등에 관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

### (2)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 의견

- 서울 한양도성은 '14.11.4일 '201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한양도성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3.10월 한양도성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도 '12.11.20 현상변경허가 시 '동 병영생활관에 대한 존속

여부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신청지역은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유산구역으로 '한양도성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에서도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 등 건축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우리시에서는 남산 배드민턴장, 남산체육회 등 한양도성의 경관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존 지장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15년에는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한양도성 주변 경관저해시설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해당시설 존치기간연장과 차량호 설치는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7.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차량호 설치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차량호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에 연접하여 차량호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차량호 설치>
  - 내용
    - 규모 : 가로 15m, 세로 12.7m, 높이 4.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

### 라. 참고사항

#### (1)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 의견

- 서울 한양도성은 '14.11.4일 '201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한양도성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3.10월 한양도성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도 '12.11.20 현상변경허가 시 '동 병영생활관에 대한 존속 여부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신청지역은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유산구역으로 '한양도성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에서도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 등 건축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우리시에서는 남산 배드민턴장, 남산체육회 등 한양도성의 경관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존 지장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15년에는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한양도성 주변 경관저해시설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해당시설 존치기간연장과 차량호 설치는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마.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연접한 병영생활관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

## 8.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CCTV 및 광망형 감지기 설치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CCTV 및 광망형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CCTV 및 광망형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CCTV 및 광망형 감지기 설치>
  - 내용
    - CCTV, 광망형 감지기 설치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9. 대구 달성 내외 토성둘레길 환경개선 사업

###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 내외 토성둘레길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구 달성 내외 토성둘레길 환경개선 사업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14년도 사적분과 제11차 심의(10.8)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현지조사 후 재부의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이 현지조사 후 사업계획을 변경 제출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달성(사적 제62호)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 (3) 신청내용<토성 둘레길 환경개선>
  - 위치 : 대구시 서구 비산 2~3동 14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옹벽 정비	고지도, 사진, 유물 등을 페인팅 벽화 및 유물재현 전시시설물 설치(1.1km)	- 사업계획에서 제외
바닥 정비	바닥 포장재 교체(아스콘→유색점토 벽돌) 및 바닥 안내판 설치(1.1km)	- 바닥 포장재를 유색 점토 벽돌에서 황토콘크리트로 변경
LED 공원등 설치	38개(지주형 4, 부착형 34)	- 좌동
안내 사인물 설치	2개(높이 2,010mm)	- 좌동
상징 조형물 설치	2개(금동관 4,000×1,450×4,000mm, 키다리아저씨 3,500mm)	- 좌동
쌈지공원 조성	도시형 텃밭(약용식물) 조성(200㎡)	- 좌동
CCTV 설치	6개소	- 좌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05/문화재위원 ○○○, ○○○, ○○○)

- 대구 달성 성벽 외부의 콘크리트 옹벽에 계획된 페인팅 벽화 등은 문화재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스팔트 포장을 유색 점토벽돌로 교체하는 바닥 정비는 예산투입 대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안내 사인물,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은 종합정비계획 및 유적의 역사 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대구 달성은 성벽이 잘 남아 있으므로, 성벽이 보일 수 있도록 잡목 제거 및 보호펜스, 불필요한 옹벽 정비 등 필요

###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4.07.17/문화재위원 ○○○, ○○○)

- 본 사업은 대구 달성 토성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으로(달성 토성 내부와 토성 자체는 대구 중구청 관할구역이며, 토성 아래 해자부분의 일부와 토성 보호 담벼락은 대구 서구청 관할구역인 바, 본 사업은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달성 토성의 과거 모습을 회복하고 사적의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경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달성 토성 환경 개선 및 경관 회복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달성 토성 보호 담벼락 1.1km가 사업구간임
- 따라서, 달성 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되, 달성 토성과 관련된 유리원판 사진과 달성 토성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 관련 유리원판 사진을 중심으로 기존 축조된 보호 담장의 벽면을 활용하는 것이 달성 토성 관련 교육활용에 적절할 것임
- 현재 아스콘 포장 등의 골목길과 도로는 문화재 경관에 맞는 색상과 재료를 쓸 것
- 주변 주민 주택 및 골목길의 개량 시 외관 모습과 색상은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전문가 검토 요망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쌈지공원과 상징조형물은 설치하지 말 것



## 10.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연결통로 보수공사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이하 '덕수궁미술관')과 석조전을 연결하는 통로를 보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석조전과 덕수궁미술관의 연결통로 개선과 원형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시행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 5-1
- (3) 신청내용
  - 지붕 난간두겹대 석재로 교체
  - 내부천정의 탈락·박리·균열된 미장 보수
  - 기존 옥상의 바닥과 난간의 표면도장 제거 후 방수
  - 난간동자 균열보수 및 탈락부의 접착
  - 내외부의 석재표면과 인조석미장부분 세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0.23/전 문화재위원 ○○○)
  - 기존 난간 두겹석을 화강석 두겹석으로 교체, 난간동자 균열보수 및 탈락부 접착, 탈락·박리된 미장·방수 보수 등 보수설계 내용이 타당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1. 아산 이충무공유허 내 유적정비 계획(안)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유허」 내 유적정비를 위한 설계 계획(안)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2006. 8월)에 의거 3단계로 경내권역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제11차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14.10.8)에서 연못정비에 대해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아산 이충무공유허(사적 제155호)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99 외
- (3) 신청내용<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설계 계획(안)>
  - 본전 영역
    - 기존 등나무터널 철거 후 원지형 복원 및 산책로 조성
    - 본전 기단의 거북선 문양 전돌을 표준형(민무늬) 전돌로 교체 (단, 철거된 거북선 문양 전돌은 일부 보관 및 야외전시 활용)
  - 정려 및 연못 영역
    - 제1안 : 상·하 연못의 규모를 각각 축소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전통 조경양식(방지형)의 형태와 규모의 자연석 석축 쌓기로 정비
    - 제2안 : 현 상태에서 자연석 석축 쌓기로 정비
  - 고택 및 활터 영역
    - 사당, 내삼문의 변형에 따른 건물 해체보수 및 사당배면 석축 설치
    - 충무정 스테인리스 덮개 교체(목재널) 및 배수로 설치
    - 이면공묘소 방면 박석포장 철거 후 잔디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데크설치)
    - 기존 간이화장실 철거 후 개축

- 구분전 영역
  - 구분전 앞 불필요한 광장 규모 축소 후 녹지 조성(관람동선 수정)
  - 구분전 전면에 마당을 조성하여 자연석 박석 깔기
- 기타
  - 참배로 좌·우 콘크리트포장 재설치(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상 선정)
  -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고 높이가 낮은 간접조명으로 교체하여 경관 회복
  - 안내판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비

## 라. 참고사항

### (1) 3차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14.10.28>

- 연지의 규모와 형태는 현재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상연지는 규모를 줄인 방지형으로 조성함이 좋을 것으로 봄.
- 하연지는 연지의 남측 돌출지역은 축소하고 나머지 호안은 절곡부분을 평탄화하는 정도에서 정리해도 좋을 것으로 봄.
- 기존의 자연경관석은 하연지에 모아 재사용하되, 경관석을 넓혀 쌓는 전통석축방식으로 하고 상연지는 깎돌을 활용하여 전통석축으로 조성함이 좋을 것으로 봄.

#### <문화재위원 ○○○/'14.11.01>

- 상연지 : 연못 크기 및 호안 경계 조정은 가급적 최소화
  - 상연지 호안 석축은 전통석축 쌓기 방식으로 하되, 연지의 크기는 가능한 축소하지 않고, 호안 경계조정도 최소화하여 구릉성의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하연지의 호안 경계조정 및 휴게시설 설치
  - 하연지는 출입구 담장과의 좁은 이격거리, 담장 및 출입문의 정형성을 고려할 때 하단부의 부분적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 하연지의 크기가 너무 크게 줄지 않도록 하단부의 곡선부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충사 본전 기단 방전 교체에 대한 의견
  - 현충사 본전 기단을 민무늬 전돌로 교체할 경우, 기존의 거북선 문양 전돌의 일부는 전시관에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일부는 야외에서 재활용하는 형식으로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음

## (2) 2차 자문회의의견<'14.09.15>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 ○○○, 목원대학교수 ○○○

○ 자문의견 :

-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기본설계(안)에 따르되,
- 참배로 좌·우 포장재료는 기존과 동일한 콘크리트로 하되 색상을 고려한다.
- 구분전 앞마당은 비정형 자연석 박석깔기를 한다.
- 활터 데크 설치는 의자를 분산하여 배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상·하 연못의 규모를 각각 축소한 전통조경양식(방지형)의 형태와 규모로 정비한 계획1안과 현 상태에서 자연석 돌쌓기로 변경한 계획2안을 만들어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다.

## (3) 1차 자문회의의견<'14.08.06>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 ○○○, ○○○, 목원대학교수 ○○○

○ 자문의견 :

-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기본설계(안)에 따르되,
- 본전 영역 : 등나무 터널길을 자연지형으로 복원한 후 산책로를 조성하고, 본전 바닥의 거북선 양각 방전은 교체한다.
- 정려 및 연못 영역 : 정려각 진입부는 현황을 유지하고, 연못 정비는 현충사 건립당시의 설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정비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고택 및 활터 영역 : 사당 해체보수, 충무정 덮개 목재로 교체, 이면공묘소 방향 박석 철거 후 체험 및 휴게공간 조성, 간이화장실을 개보수 한다.
- 구분전 영역 : 현황을 유지하되, 앞마당으로 인식하도록 영역을 설정한다.
- 기타 : 참배로 좌·우 콘크리트는 포장재료 검토, 이완된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 정비, 가로등 및 안내판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비한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연못은 1안으로 채택

## 12.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사적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1차('14.10.08) 심의 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묘역조성 포함)」과의 관련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보류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정읍 황토현 전적(사적 제295호)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3번지 외
- (3) 신청내용<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 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3번지(문화재구역)
  - 내용
    - 묘역 : 0.8×1.8×0.7m(H)
    - 상석 : 0.6×0.5×0.25m(H)
    - 비문석 : 0.5×0.2×0.7m(H)
    - 묘역 전면부에 답사 및 방문객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
- (4) 경위
  -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 문학부 표본창고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고자 함.
  - 당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는 유골 발견 소식을 접하고 즉각 일본 외무성과 북해도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유골의 국내 봉환을 요구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진이 1996년 2월 일본 북해도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자 유골 확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6년 5월 30일 지도자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고 ‘연구조사위원회’(위원장 신순철)를 구성하여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해 3년간 노력하였으나 끝내 확인하지 못함.
- 2002년 유골의 흉상을 제작하여 전주역사박물관 전시하고, 지도자 유골은 향온·향습장치가 설치된 수장고에 임시로 안치함.
- 이후, 유골의 수습지인 전남 진도군, 동학농민군 첫 승전지인 황토현, 동학농민군 김제원평 구미란 전투지 무명농민군 묘역 등에 유골 안장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정읍시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과 구민사 사이 산자락에 영구 안장하기로 협의하고 현상변경허가 신청함.

## 라. 참고사항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계획

#### 1. 사업목적

##### ○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거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문화, 관광 등 복합적 문화공간을 창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국내·외에 선양하며, 낙후된 지역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 필요성 및 지원 사유

- 동학농민혁명정신이 애국·애족정신을 높이고 온 인류가 지향하여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됨과 동시에 민족 대화합과 통일을 기치로 이를 발전시켜 세계 정신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기념시설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통한 전 세계적인 정신선양 필요.

##### ○ 기대효과

-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 추모,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정신선양

-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할 수 있는 추모 공간 및 역사교육장의 조성
  -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인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 마련
2. 사업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하학리 산1~10) 일원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총사업비 : 404억원(국고 383억원, 지방비 21억원 \*부지공사가액)
  - 사업내용
    - 기념공원조성 기본·실시 설계
    - 추모공간, 묘역, 추모탑, 연구소, 연수시설, 체험관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6,992㎡(황토현전적지 164,390㎡, 기념관 172,602㎡)

구분	시설별	규모(㎡)
건축공사	연구소	244.06
	유물관/체험관	1,111.84
	유영봉안소	178.90
	연수동	2,060.81
	편의시설	400.00
합계		3,995.61
조경공사	(가칭)동학문	문:66㎡, 담장:약490m
	추모비(기념탑)	기념탑:1개소, 조형물:2개소
	조각공원	7,530.00
	농민광장	37,360.00
	평화의장	19,664.00
	야외캠핑장	8,755.00
	동학농민체험시설	6,257.00
	생태체험장	-
	체험교육 및 재현장	7,500.00
	기존시설 조경 및 정비	50,403.00
	기타바닥 마감	13,185.11
	기타 조경식재	36,427.00
	산책로(W=2m)	6,848m
묘역	1,650.00	
합계		195,579.11
부지조성 공사	주차장	24,759.00
	묘역	1,650.00
	조각공원	7,530.00
	농민광장	37,360.00
	평화의장	19,664.00
	야외캠핑장	8,755.00
	동학농민체험시설	6,257.00
합계		105,975

#### 4. 사업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하여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결과 전라북도(전체 16개 시·도 중 15위)로서 최하위권에 속하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본 사업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고, 낙후도 개선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경제과급효과 및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 경제 활성화 및 과급효과는 전라북도와 경기도, 전남, 서울 및 경상북도 지역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5.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9조

<p>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li><li>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li><li>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li><li>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li></ol> <p>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li><li>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li><li>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li><li>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li><li>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li><li>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li><li>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li></ol> <p>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p> <p>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 ○ 추진경위

- 1998년 10월 26일 확정된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미완료 사업으로 종료
-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5년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0년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인가
- 2011. 11.~2012. 3, 정읍시 발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수주,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 2012년 9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②항-7호
- 본 사업은 1998년 10월 26일 확정된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의 연장이며, 그 당시 갖추지 못했던 법적 근거를 완비한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수립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임.

## 6. 사업추진 절차

- 2014년 : 실시설계
- 2015년
  - 각종 인·허가 완료, 공사 착공
  - 건축공사(연구소, 유물관, 유영 봉안소, 연수동) 착공
    -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완료, 골조공사
  - 토목·조경 : 부지정비 및 터잡기, 우수수공사, 경계석, 측구공사
- 2016년
  - 건축공사(연구소, 유물관, 유영 봉안소, 연수동 등)
    - 골조공사 완료, 방수, 조적공사완료
  - 전시 : 유물 및 전시물 수집, 소프트웨어(콘텐츠) 개발
  - 토목·조경 : 포장공사 완료, 조형물 및 시설물 설치공사
- 2017년
  - 건축공사(연구소, 유물관, 유영 봉안소, 연수동 등)
    - 공사 완료, 시운전, 준공
  - 전시 : 공사완료. 시운전, 준공
  - 토목, 조경 : 공사완료, 시운전, 준공

### (2) 정읍시 의견

- 기념공원 내 묘역조성은 빨라야 2017년에 완공될 계획이므로 차후 기념공원 내 묘역으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우선 신청지에 안치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3. 순천 낙안읍성 주변 지하수 개발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주변 지하수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4년도 제10차 사적분과 심의 시('14.09.11) 부결되었으나,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일원
- (3) 신청내용<지하수 개발>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성북리 198번지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내용
    - 용도 : 청소년수련시설에 사용
    - 천공심도 : 지하 700m
    - 구경 : 200mm
    - 일일채수계획량 : 500톤 이상
    - 보호각 설치 : 면적 3.3㎡, 높이 1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다량의 일일채수로 낙안읍성 지하수에 악영향 우려

## 14. 익산 제석사지 주변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주변에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제석사지 주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황
  - '14.06.11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4.07.09 : 보류 /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시설계획 보완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 (3) 신청내용<수질복원센터 건립>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20m 이격/3, 4구역)
  - \*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경사지붕)
  - \* 4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개별심의
  - 사업내용(변경내용)
    - 부지면적 : 58,661㎡(3구역 28,836㎡, 4구역 29,825㎡)
    - 저류지 : 6,022㎡(3구역 6,022㎡)
    - 수질복원센터 : 22,385㎡(3구역 20,716㎡, 4구역 1,669㎡)

- 수질복원센터 위치

구 분	'14.6.11(보류)	'14.7.9(보류)	금회(1안)	금회(2안)
이격 거리	355m	377m	410m	450m
단면 길이	184m	158m	120m	120m
위치	3구역(146m)	3구역(120m)	3구역(90m)	4구역(45m)

라. 참고사항

(1) 2차 현지조사의견('14.07.04/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익산 제석사에서 220여 미터 이격된 식품클러스터 부지 내 수질복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질복원센터 부지를 확대하여 완충녹지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지 내 오수처리 시설은 문화재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1차 현지조사의견('14.05.29/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대전대학교 교수 ○○○)

- 본 현상변경 허가 건은 문화재에서 약 200m이상 이격되었고, 큰 규모의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은 진행하되, 배치와 시설물, 수질처리 방법과 농도 등에 대해 사업시행 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신청계획안에서 관리동은 제석사와 최대한 이격하고 저류지와 오폐수처리 시설 상부는 공원화하면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조정하며, 수질복원센터 관리동 건축계획은 고도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질복원센터 설치에 있어 다음 사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하시설이지만 악취 포집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 악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초기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 강구)
  - 빗물 저수지로 방류수가 유출되어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고도(高度)수처리 시설을 통해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공정을 수립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안으로 하되 설계도면은 자문을 받을 것

## 15. 제주 고산리 유적 내 편의시설 정비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내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내 편의시설 정비 사업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외
- (3) 신청내용<편의시설 정비>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50-1(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임시 전시관, 주차장 조성 등
    - 지상 2층(1층 : 안내실, 전시실, 화장실 등/ 2층 : 휴게실)
    - 건축/연면적 330㎡, 최고높이 6.5m
    - 컨테이너용 조립, 돌망태 마감(화산석)
    - 주차대수 21대(승용차 16대, 버스 5대), 잔디블록 포장
    -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왕벚나무, 팽나무, 꽃창포, 붓꽃, 감국 등 17종 6,800여주)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0.1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제주 고산리 유적 내 관람객에게 정보 제공과 휴게, 그리고 주민들의 활용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와 적절한 높이 차이가 있어 입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적인 시설물로서 컨테이너 형식을 차용한 현대건축으로 그 당위성은 인정됨

- 그러나 평면계획에서 관람객이 고산리 유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간구성과 입면 등은 현재 계획보다 단순화 시켜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시계획은 자문을 받을 것

## 16.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금관총 발굴조사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발굴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금관총 발굴조사를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4번지(지번) 일원
- (3) 신청내용<발굴조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4번지 일원(지정구역 내)
    - 경주 대릉원 일원 금관총 재 발굴조사
  - 사업내용
    - 조사면적 : 3,600m<sup>2</sup>
    - 조사기간 : 2014. 12월 ~ 2015. 06월(실조사 일수 90일)
    - 조사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상태로 원상복구할 것

## 17. 파주 이이 유적 보호구역 내 자운서원 냉·난방 시설 설치 등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내 자운서원 냉·난방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이이 유적 내 자운서원 냉·난방 시설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이이 유적(사적 제525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자운서원 냉·난방 시설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내)
  - 내용
    - 강인당, 동·서재 냉·난방 시설 설치
    - 동·서재 내부 벽체 이동
    - 화장실 리모델링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화장실 리모델링과 이동식 냉난방 기기만 설치 가능
  - 전기장판 설치와 벽체 변형은 불가함



## 18. 김포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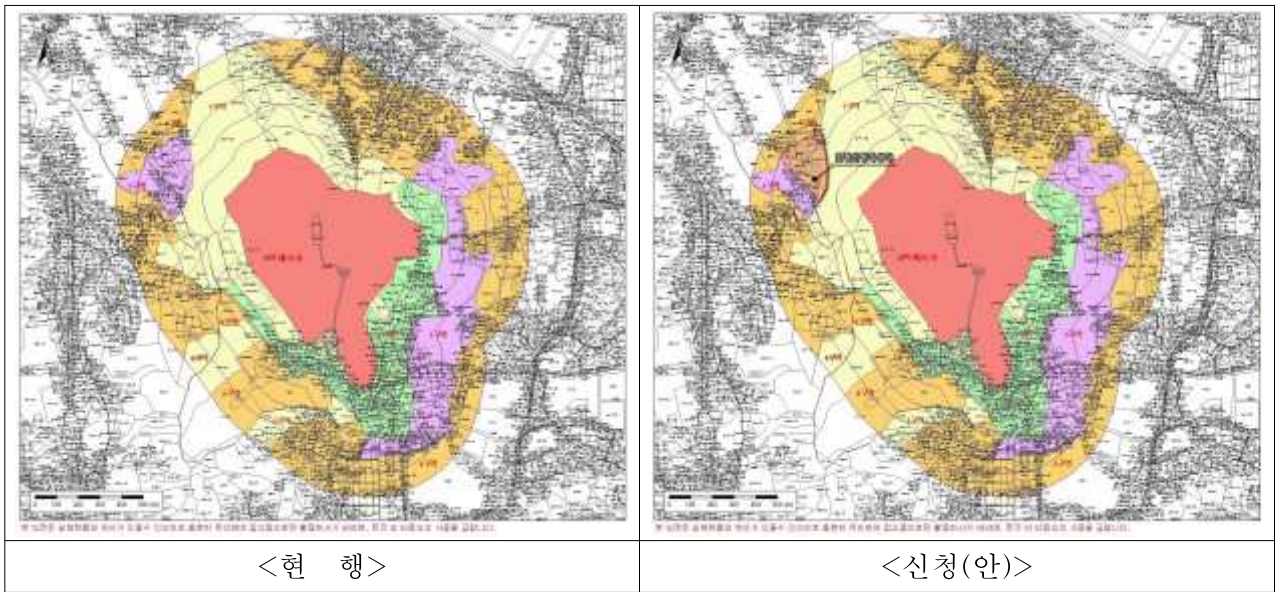
-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과 관련하여 김포 장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 조정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 (3) 신청내용<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현행(2010.07.09.문화재청 고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10.1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김포 장릉의 북서측으로 160여m 이격된 3구역(평지붕:14m,경사지붕:18m이하)인 곳을 4구역(김포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조정 신청된 것으로서, 이곳은 2008년 지상 18층(최고높이:58.2m)로 허가받은 사항이며, 2009년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현상변경허용 기준의 수립에 따라 3구역(평지붕:14m,경사지붕:18m이하)으로 설정된 후 허가기간 만료에 의해 사업이 중지된 상황임, 이후 골프장 건설로 계획을 수정하여 몇 차례 부결된 곳임.
- 현지조사에서 이 지역은 왕릉의 일체화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내백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왕릉의 마루선을 거슬르지 않는 저층 개발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지구 훼손 우려

## 19. 광명 영회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적 제357호 「광명 영회원」 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적 제357호 광명 영회원 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광명 영회원(사적 제357호)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740-79(노온사동)
- (3) 신청내용<건축물 용도변경>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69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건축물 용도 변경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문화재 보호 구역내 단독주택 건물 3동 내부 변경
      - 1동 : 거실, 침실 → 창고 및 탕비실, 휴게공간, 물품보관실
      - 2동 : 거실, 주방, 침실 → 소매점, 사무실, 물품보관실
      - 3동 : 부속사 → 소매점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03/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는 「영회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9년 광명시 발간)에 의하면 영회원 재실터로 확인됨.
  - 현재 건물 3동이 주택 및 부속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 개축 후 근린 생활시설(소매점 등)로 용도 변경 시 향후 주변 관광농원등 이용객들의

위락시설화 될 우려가 있음.

- 신청지는 영회원 보호구역내로, 장기적으로는 매입 후 재실 복원 등 주변 정비를 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 내부 개축 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본 신청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며 영회원 재실터임. 향후 재실 복원 대상지임

## 20.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1-98(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1.70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49.36m<sup>2</sup>
    - 규모 : 지상1층
    - 최고높이 : 4.8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라. 참고사항

#### (1)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 의견

- 서울 한양도성은 '12.11.23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한양도성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3.10월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 신청지역은 서울 한양도성의 보호구역으로 ‘한양도성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에서도 유산구간(문화재구역+보호구역)은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 등 건축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경사지붕으로 개축

## 21.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풍차 및 바람개비 설치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풍차 및 바람개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풍차 및 대형바람개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풍차 및 바람개비 등 설치>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74호 일대
  - 사업내용

구분	수량	규모	비고
풍차	1식	높이 7.5m(최고높이 10.2m), 직경 5.1m 회전직경 7m, 포토존 1식	
바람개비	15개	주기동높이 3~4.5m. 회전직경 1.2m	
벽화거리	폭 2m, 총연장 90m	풍납토성 및 한성백제 관련 벽화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11.10/문화재위원 ○○○)
  - 풍납토성의 북동쪽 천호사거리 방향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풍차와 그 부대시설(기성제품)은 사적지의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안전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시설로 보임
  - 다만, 풍납토성과 바람개비는 일부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풍차의 디자인, 색상, 바람개비의 개수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 (2) 경위서

옛날 한성백제시대의 풍납토성이 둘러싸고 있는 풍납동은 마을 전체가 사적 11호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바로 옆 동네 잠실에는 123층 초고층 빌딩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 풍납동 주민들은 내 집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느라 지역적인 소외감으로 한숨섞인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이웃 간에 정(情)을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였고, 주민회의를 몇 차례나 걸쳐 어떻게 하면 마을 특성을 살려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댄 결과 풍차를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착안사항이 2014년도 주민제안사업에 채택되어 주민참여예산을 7천만원 지원받게 되었고 멋진 풍차와 벽화거리를 조성해 동네 환경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풍납동하면 송파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풍납동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로 마을 이름(바람드리)에 걸맞는 랜드마크로서의 풍차와 바람개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차와 바람개비, 벽화는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천호대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동민의 화합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풍납토성 성격에 맞게 개선할 것



## 22.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외 주차장 보수 및 환경정비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외 주차장 보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내외 임시주차장 보수 및 성벽 위 잡목을 제거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주차장 보수 및 환경정비>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72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1구역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3,285㎡
    - 사업내용
      - 주차장 : 잡석 부설 304㎡, 주차라인 설치(16mm로프), 주차방지턱 설치, 주차장 입구 안전로프 설치 30m
      - 잡목제거 : 20주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3.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임시주차장 설치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내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주차장 보수 및 환경정비>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6-1, 86-2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124m<sup>2</sup>
    - 기존 임시주차장 : 3,961m<sup>2</sup>
    - 사업내용 : 토공사 및 자갈부설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구역 경관 훼손

## 24. 상주 복룡동 유적 내 어린이대피소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내에 어린이 대피소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상주시가 조성 중인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녹색 쉼터)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간이 어린이대피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3 일원
  - 지정일 : 2007. 05. 31
  - 관리단체 : 상주시(상주시장)
- (3) 신청내용<어린이대피소 설치>
  - 사업내용
    - 구조 및 규모 : 경량목구조, 1층
    - 건축면적/최고높이 : 38.57㎡/3.15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5. 부여 부소산성 내 금강광역상수도 개량공사 현장사무실 설치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내에 금강광역상수도 개량공사 현장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여 부소산성 내에 금강광역상수도 개량공사 현장사무실(가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번지
- (3) 신청내용<금강광역상수도 개량공사 현장사무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50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연면적 277.92㎡, 높이 3.6m, 재질 - 샌드위치 판넬
    - 유지기간 : 설치 후 ~ 2017년 9월(공사기간 : '14년~'17년, 3개년)
  - 사업비용 : 86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발주)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03/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부여 부소산성의 지정구역 내에 위치한 취수장에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를 위하여 건축면적: 277.92㎡, 높이:3.2m의 가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소산성에서 직접인지되지 않으며, 평탄화 된 곳에 터파기 없이 설치되므로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6. 부여 나성 내 소나무 굴취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에 소나무 굴취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성 나성 내 소나무 2본 굴취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 외
- (3) 신청내용<소나무 굴취>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85-4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수종 및 수량 : 소나무 2본(수령70~71년), 근경(48~52cm), 높이(10~11m)
    - 굴취 후 복구 : 되메우기 및 다짐, 초류종자파종
    - 작업방법 : 장비 및 인력
  -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14.11.03/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부여 나성 지정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 2주를 굴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 체성부에 연접하기는 하나, 대규모의 굴취가 아니며, 굴취시 관계전문가가 입회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전문가 의견('14.11.04/백제고도문화재단 ○○○)
  - 소나무 굴취부분은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의 범위에 포함됨

- 부여 나성의 체성부 구조는 전면 석축부(0.5~4m) 후면 토축부(15m이상)로 구성되어 있음
- 소나무 굴취부분은 부여 나성의 외벽 추정 면석선상에서 20m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여나성의 체성부 중 토축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계획대로 소나무 굴취를 시행할 시 부여나성의 체성부 중 판축으로 이루어진 토축부의 훼손이 염려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입회하에서 시행

## 27.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마을공동작업장 건축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마을공동작업장을 건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마을공동작업장 건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문화재 영향검토를 누락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마을공동작업장을 구제절차를 통해 양성화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외
- (3) 신청내용<마을공동작업장 신축>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83-2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
  - 내용
    - 면적 166.72㎡, 높이 4.8m(1층), 철근콘크리트조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8. 합천 영암사지 내 영암사 주변정비사업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암사 주변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합천 영암사지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암사(1996년 조성) 경내에 범종각 및 삼층석탑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건은 2014년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4.8.13) 시 '영암사 축선, 가람배치 등과 충돌하는 등 영암사지의 역사성 훼손 및 경관저해 우려'로 부결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영암사지(사적 제131호)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637-97
- (3) 신청내용<영암사 주변정비사업>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637-136(문화재구역 내)
  - 내용

구분	1차('14.8.13/부결)	금회	비고
범종각	1동(38.25㎡), 최고높이 6.412m 한식목구조(정면3칸×측면2칸), 전통한식와가, 겹처마, 팔작지붕	좌동	위치 조정 -당초 : 극락보전 전면부 -변경 : 관음전 후면부
삼층석탑	2기(59.18㎡), 최고높이 6.35m	1기(29.59㎡) ※ 최고높이 동일	감) 1기
석대불	1기(66.42㎡), 최고높이 7.666m	-	2005년에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기설치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8.06/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합천 영암사지 지정구역 내 영암사에 삼층석탑 2기(높이 : 6.35m), 석대불(높이 : 7.66m), 범종각(면적 : 38.25m<sup>2</sup>, 높이 : 6.41m)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 등에 의한 건축행위가 영암사의 확장 축으로 작용하면서 영암사지의 배치와 경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사찰의 다양한 시설 신축에 있어서 영암사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생하는 방향의 계획 수립 후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9. 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주군에서 ‘언양소도읍육성사업계획’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기 허가받은 사항('12.8.2/'13.6.20/'14.7.10/'14.10.16)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보고자 :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동부리 일원
- (3) 보고내용<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 추가사업>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비고
○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 (사업면적 6,483㎡) - 남문(영화루)복원 - 성벽복원(옹성 L=42m, 체성 L=130m) - 광장조성 A=3,730㎡	○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 (사업면적 7,303㎡) - 남문(영화루)복원, - 성벽복원 (옹성 L=42m, 체성 L=130m) - 광장조성 A=4,550㎡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장 물 철거에 따른 잔여지 문 화재보존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잔디광장 추가조성 (증 A=820㎡)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0. 울주 언양읍성 주변 정비사업(2차)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 정비(2차)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동부리 일원
- (3) 신청내용<울주 언양읍성 주변 정비사업(2차)>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11(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목적 : 언양읍성 주변의 방치된 나대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언양읍성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 내용
      - 철거공 : 우수관로(D=300) L=39.7m
      - 토 공 : 1,093.4m<sup>3</sup>(토공높이 최저 0.5M~최대 2.05M)
      - 배수공 : 우수관로(D=300) L=27.0m, 잔디수로(W=800) L=172.0m (식재공사에 포함)
      - 식재공 : 롤잔디 2,522.0m<sup>2</sup>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실시

### 31.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 관아 정비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 관아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삼도수군통제영 내 관아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사적 제402호)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일대
- (3) 신청내용<관아 및 수목, 관람로 정비 등>
  - 위치 :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등(문화재구역 내)
  -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조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아 담장 주변 : 소나무(등근형 H=1.2m, W=1.5m) 7주, 매화(H=4.0m, R=0.15m) 1주, 남천(H=1.0m) 70주 식재</li> <li>○ 공방 배면 : 고사된 차나무 제거 후 산철쭉(H=0.4m, W=0.4m) 200주 식재</li> <li>○ 백화당 배면 : 조팝나무(H=0.6m, W=0.4m) 300주 보식</li> <li>○ 연못 주변 : 꽃치자(H=0.6m, W=0.4m) 140주 보식</li> <li>○ 운주당 좌측 담장 주변 : 고사된 치자나무 제거 후 꽃치자(H=0.6m, W=0.4m) 180주 식재</li> <li>○ 정자 진입로 주변 : 청단풍(H=4.0m, R=0.2m) 2주, 싸리나무(H=1.0m, W=0.4m) 130주 식재</li> <li>○ 탐방로 좌측 주변 : 꼬리조팝나무(H=0.8m, W=0.4m) 460주 식재</li> <li>○ 초화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취헌 뒤편(맥문동 400본, 털머위 180본)</li> <li>- 세병관 우측(맥문동 810본)</li> </ul> </li> </ul>	
연못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못 바닥 성토 후 식재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플랜터 설치(90×90cm, 3개소), 흙채움 46.26㎡</li> <li>- 어리연꽃(2~3분얼) 15본, 부레옥잠 45본, 부들 200본</li> </ul> </li> </ul>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아 장판지 및 벽지 교체(방 3칸)</li> <li>○ 내아 대문 재사벽 정비(1동)</li> <li>○ 우물 보호각 설치(1동, 전통한식와가, 홀처마, 맞배지붕)</li> </ul>	
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아 입구 잔디식재(192㎡) 및 박석(500×450×T150) 포장(11.76㎡)</li> <li>○ 망일루 입구 기존 박석 사이 황토포장(266㎡)</li> <li>○ 주전소 주변 탐방로 황토콘(T=150) 포장 : L=30m, W3.5m, 107㎡</li> <li>○ 운주당 및 망일루 앞마당 마사토 보토</li> </ul>	
배수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소 주변 배수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석 배수로 설치(L=24m, W=25cm, H=25cm), 암거 배수로 설치(L=12m, 과형강관 Ø300mm), 맨홀(600×600) 1개소</li> </ul> </li> <li>○ 망일루 주변 맨홀 설치(600×600, 1개소)</li> </ul>	
기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자방 앞 안전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33.13m, H=60cm, 아연강관지주 Ø60.5mm</li> </ul> </li> </ul>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32. 파주 칠중성 내 군 시설 구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내 군 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칠중성 내 군 시설을 구축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칠중성(사적 제437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군 시설 구축>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097.19m<sup>2</sup>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06/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 시설물은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것을 개·보수한 사항으로 기존 시설의 보수이고 지형변경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허가 전 시행 사항인 점이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3. 함양 남계서원 내 수목 정비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내 수목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양 남계서원 내 수목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수목 정비>
  -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문화재구역 내)
  - 내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비고
별채	모과나무	수고 6m, 수령 30년	1주	
	배롱나무	수고 4m, 수령 50년	1주	
	벗나무	수고 12m, 수령 50년	1주	
	측백나무	수고 8m, 수령 30년	1주	
	향나무	수고 6m, 수령 30년	2주	
식재	향나무	수고 5m, 수령 30년	2주	기존 향나무 제거 후 대체식재
수형고르기	배롱나무	수고 4m, 수령 50년	5주	
	매실나무	수고 4m, 수령 15년	1주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0.16/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함양 남계서원 내 수목을 현상변경 없이 전지하거나 벌목한 것으로서, 일부 수목이 건축물에 영향을 주어 전지 및 벌목을 하였다고는 하나 서원의 역사성과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한 건물은 현상변경허가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서원 내 수목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황에서 서원의 역사성과 경관을 고려한 전통수종으로 대체 식재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추진경과

- 2014.09.25 : 무단 현상변경 발생인지(문화재청 민원접수)
- 2014.09.29 : 무단 현상변경 관계자 행정조치 및 경위서 제출 요청(문화재청 →함양군)
- 2014.10.13 : 경위서 제출(함양군→문화재청)
- 2014.10.16 :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청)
- 2014.10.20 : 관계자 행정조치(함양군→남계서원 원장)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통 수목으로 대체 식재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12-034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 3권역에 속하는 19필지 1,898㎡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140필지 353,588.6㎡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5필지 1,940㎡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4.10.27)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9-38	대	132	132		
2	"	123-34	대	73	73		
3	"	126-146	대	76	76		
4	"	126-51	대	30	30		
5	"	140-15	대	166	166		
6	"	131-8	대	116	116		
7	"	291-21	대	126	126		
8	"	230-3	대	145	145		
9	"	86-10	대	109	109		
10	"	277-5	대	204	204		
11	"	133-6	대	145	145		
12	"	83-17	대	235	235		
13	"	88-15	대	152	152		
14	"	232-14	대	142	142		
15	"	142-16	대	89	89		
<b>합계</b>				<b>1,940</b>	<b>1,940</b>		

※ Ⅱ-2 1필지, Ⅱ-3권역 5필지, Ⅲ권역 9필지

## 2. 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칠곡 가산산성의 외성 4.867km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내성의 지정 현황을 측량 결과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칠곡 가산산성(사적 제216호)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 98-1 외
  - 지정일 : '71. 03. 26
  - 관리단체 : 칠곡군(칠곡군수)
- (3) 신청내용 : 외성 추가 지정 및 현황 측량에 따른 문화재구역 조정

내성(조정)			외성(추가)
당초	조정	증감	
14필지 227,168㎡	23필지 293,753㎡	증 66,585㎡	87필지 238,937㎡

### (4) 신청사유

- 가산산성은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은 후 국방의 보강이 시급함을 인식한 조정이 북한산성·남한산성 등을 축조하고 영남지방에는 가산산성을 축조하여 영남 제1관방으로 조선관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귀중한 문화재임
- 가산산성은 내성·중성·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성의 축조수법, 구조, 사용재료, 성벽 주요시설 등은 사적 제216호(내성·중성)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외성 안에는 내·중성과 더불어 산성수호의 역할 및 칠곡 도호부 등 관련 공공·공해(公廨)시설·관방시설 등 성내 곳곳에는 문화재급 암피류, 복수초 군락지, 다종다양한 수종의 산림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외성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로 보존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문화재 추가 지정이 시급한 실정임

라. 지정조사보고서 요약('13.12.0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칠곡은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관류하는 낙동강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를 중심으로 평야지대와 팔공산 지괴의 가산산지로 형성된 동부지역, 금오산계의 산지로 이루어진 서부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대체로 칠곡군 동부의 가산(902m)·유학산(839m)·도덕산(660m)과 서부의 영암산(782m)·서진산(742m) 주변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릉 성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동부 산괴는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팔공산계로 팔공산(1,192m)을 정점으로 하며, 이 서쪽 끝에 가산·황학산·소학산·유학산 등이 있다.
- 가산산성은 경상북도 칠곡군의 동명면과 가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901.6m의 가산 준령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석축 산성으로서 사적 제2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산성은 산골짜기를 이용하여 10km에 이르는 내성, 중성, 외성으로 각기 축조되었는데, 현재 4대문지·암문·수구문과 각종 건물지 등의 시설이 남아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 가산산성은 임진·병자 양란을 겪은 후 국방 수호의 절실함을 인식한 조정에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산성을 축조할 때 경상도지방에 축조된 대표 산성이다. 산성의 축성 내력 및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내성(內城)은 인조 17년(1639) 4월에 부임한 경상도관찰사 이명웅(李命雄, 1590~1642)이 왕에게 부임 인사 때 '경상도 60주 산성 중에 믿을 만한 곳은 진주(晉州)·금오(金烏)·천생(天生)의 3성 뿐이다. 그러나 천생산성은 형세가 험하기는 하나 좁고 천정(泉井)이 없으므로 금오산성을 가축(加築)하는 한편 최적지인 팔거현(八莒縣)의 가산에 축성할 것'을 청하였다. 그해 9월부터 인근 고을 백성을 징발하여 성을 쌓기 시작하여 그 익년 4월에 내성(석성 둘레 3,830보, 여장 1,752첩, 성문루, 보루, 군영, 수문, 공해, 사원 등)까지 공사했으나 막대한 자금과 인력, 가혹한 공사로 사람이 죽는 등 민심이 동요되어 인조 18년(1640) 7월 타직으로 전출되면서 한 동안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었다.
- 그 후 칠곡도호부사 임타(林瑞, 재임기간 1641. 9. 11~1642. 11. 22)가 부임하여 이명웅의 축성을 크게 극찬하고 축성에 공이 큰 여러 장사에게 관직과 상을 내렸다. 인조 26년(1648) 경상도관찰사 이만(李曼, 재임기간 1648. 3~1649)과 제6대 칠곡도호부사 이지형(李枝馨, 재임기간 1648. 8. 28~1651. 3. 15)이

합심하여 군병과 승려를 동원해 건물, 포루, 남쪽 곡성, 북쪽 구책(舊柵)을 중수하였다. 문헌상에 당시의 석성 규모와 시설은 둘레 4,710보, 여장 1,887첩, 동·서·북 삼문, 암문 8개소, 천·정 21개소, 못 9개소와 가흥사(架興寺), 정천사(淨泉寺), 통천사(通泉寺), 보국사(寶國寺) 등의 사찰, 군기고, 빙창(氷倉), 가산진창, 승창(僧倉), 가산진 속읍 군창 등의 시설물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내성이 완공된 후 경산부(京山府, 지금의 성주)에 속했던 팔거현은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성 안에는 순조 19년(1819)에 구 팔거현지로 칠곡도호부가 이전하기 전까지 도호부의 읍치와 관련 지방행정시설이 갖추어져 운영되었다.

- 외성(外城)은 숙종 26년(1700) 경상도관찰사 이세재(李世載, 재임기간 1698. 11~1701. 2)의 장계로 내성 남동쪽에 석성 둘레 3,754보, 여장 1,890첩, 남문, 암문 3개소로 축조했다. 그 다음 해에 천주사(天柱寺)를 건립하여 승창미를 보관하였고, 승장들이 사방의 포루(砲樓), 장대(將臺), 진남대(鎭南臺) 등을 수비하고, 총섭(總攝)은 남문루와 운수현(雲帥軒)을 각각 수비하였다.
- 중성(中城)은 경상도관찰사 정익하(鄭益河, 재임기간 1739. 11~1741. 6)가 영조 17년(1741)에 석성으로 쌓았다. 둘레 602보, 여장 402첩, 중성문을 비롯해 객사·인화관(人和館), 군관청(軍官廳), 군기고(軍器庫), 성루(城壘), 포루(砲樓), 장대(將臺), 위령각(衛靈閣)을 설치하였다. 그 뒤 영조 21년(1745)에는 장적고(帳籍庫)와 빙고(氷庫)도 설치되었다.
- 한편 1950년 한국전쟁 시에는 연합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가 되었다. 연합군의 대규모 포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내 건물이 불타 없어지는 등 지독한 상처를 남겼다.
- 또 1954년 대홍수 때 남창마을과 남문이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어 다음해 미군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이주했다.
- 1971년 가산산성의 역사성 및 축성술이 인정받아 내성(중성벽 포함)이 사적 제216호로 지정되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외성 남문루, 남문과 주변 성곽 및 수문, 여장을 복원했고, 중성문을 중수했다. 1992년 동문루를 보수했고, 1999년 대구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남문루 여장과 동문 해체보수, 동문일대 성벽을 보수하기도 했다.

## □ 특징

- 가산산성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 1번지(외성)·가산면 가산리 산98-1번지 일대(내성)에 축조된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 규모는 내성 둘레 5.771km, 외성 둘레 4.867km, 중성벽 길이 0.431km로 공유성

벽을 포함한 총 둘레는 11.068km(수평투영)이다. 규모는 우리나라 산성 중 부산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총 둘레 17km), 경기도 남한산성(사적 제57호, 총 둘레 11.76km)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현재 외성을 제외한 내성은 1971년 3월 26일에 사적 제216호로 지정되었다.

○가산산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도의 전략적 요충지에 당시 최신의 기술로 축조된 요새였다. 즉 가산(해발 901.6m)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한 포곡식 석축 산성, 홍예식 남문, 지세에 따라 화강암 위주로 퇴물려 허튼층쌓기한 편축법 및 협축법의 체성과 미석에 충안을 갖춘 여장, 가파른 능선에는 계단식 협축법의 성벽과 그 외측에 반원형의 보강 석축, 체성벽을 직각으로 돌출시켜 만든 치성과 성 안팎의 조망 및 감시를 위한 망대·망루지 등의 축성기법과 주요시설의 배치는 조선 후기 우리나라 산성 축조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내성과 일관된 구조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주변 지형지세를 최대한 활용해 견고하고 다양한 방어 및 공격 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했다. 이는 당시 성곽의 축성수법 및 시기적 변화양상, 군사 전략성의 변화양상을 밝힐 주요한 학술자료이다.

둘째, 성 내에 칠곡도호부의 읍치와 관할 주변 4개소 진관의 설치된 점이다. 우리나라 산성 내에 읍치가 설치된 예가 드문데, 조선시대 산성과 지방행정사 연구에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성 안에 산성 수호에 필요 물품을 보관하던 남창을 비롯해 당시 칠곡도호부의 행정 관련시설이 설치된 점, 산성을 수호하고 관리하던 승병의 거처·지휘소 겸 승창 역할을 하던 사찰이 설치된 점 등 당시 산성의 군사 운영체계 및 관리실태를 파악할 주요한 국방·지방행정적 학술자료적 가치도 높다 하겠다.

셋째, 한국전쟁 당시에 연합군과 북한군간에 치열했던 민족상잔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가산산성은 임진·병자 양란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상도의 전략적 요충지에 내성과 외성, 중성벽을 차례로 축조하고 그 안에 칠곡도호부의 읍치까지 둔 ‘嶺南第一關防’이었고, 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전쟁의 상흔마저 고스란히 간직한 호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 한편 외성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산(해발 901.6m)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해 내성을 연결시킨 포곡식 석축 산성으로 내성과 동일한 구조, 축조수법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조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둘째, 내성 동남쪽으로 외성을 완성함에 따라 가산산성의 정문이자 외성의 남문에는 ‘영남제일관방’이란 편액을 걸었다. 지세에 따라 화강암 위주로 퇴물려

허튼증쌍기한 편축법 및 협축법의 체성과 미석에 종안을 갖춘 여장, 가파른 능선에는 계단식 협축법의 성벽과 그 외측에 반원형의 보강 석축을 둔 점, 성벽을 직각으로 돌출시켜 축조한 치성, 성 안팎의 조망 및 감시가 용이한 요소마다 망대 및 망루지를 설치하고, 성 안팎으로 은밀히 출입할 수 있게 암문을 설치한 점 등은 사적으로 지정된 내성과 동일한 축성술과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셋째, 외성 내에는 내성과 더불어 산성 수호와 칠곡도호부·가산진과 관련된 각종 공해(公廨)·공공시설 등이 설치되어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도 하였다. 산성의 축성술과 더불어 조선시대 군사 및 지방행정의 역사문화까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유적이다.

넷째, 외세의 침입을 방비코자 수축된 산성이 한국전쟁 때 포격, 참호, 총탄 자국 등이 성벽 또는 성벽을 따라 잘 남아 있어 비극적 동족상잔의 현대사까지 고스란히 담고 역사호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다섯째, 외성 내 곳곳에는 엄청난 규모로 암피류가 분포하고,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복수초 군락지, 다양한 수종이 잘 보존된 산림, 해발은 높지만 완만한 능선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은 등산 코스 등 자연생태환경도 으뜸이다. 따라서 외성 안팎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연계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정비, 학술·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써의 가치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중장기 활용계획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여섯째, 그러나 산성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인 점, 성벽과 성 안으로 무분별하게 개설된 등산로와 사찰 신축 등으로 유적 및 자연생태환경의 파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 산성에 대한 홍보 및 안내문·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체계적이고 단계별 고증 및 학술조사 없이 복원·정비되고 있는 점, 산성과 인접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의 보존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법적·행정적 규제가 매우 시급한 시점에 있다. 외성 주변 또는 남문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성을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함과 동시에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등의 법적·행정적 법규를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절차는 올바른 대민 민원해소와 함께 정당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6. 문헌을 통해 본 가산산성 현황

구 분	내 성	외 성	중 성
축성연대	1640년 시축 후 일시중단 1648년 완공	1700년	1741년
축성관련 인물	1640년 : 李命雄 1648년 : 李枝馨, 李旻	李世載	鄭益河
성 둘레	1640년 시축시 : 3,830보 1648년 완공시 : 4,710보	3,754보	602보
門	동·서·북문	남문	중성문
砲樓	동·서·남·북포루		
城壘	5개소		
將臺	鎮南臺		
門樓	동문루	남문루	중성문루
暗門	8개소	3개소	
泉·井	21개소		
池	9개소		
寺刹	架輿寺·淨泉寺·通泉寺·寶國寺	天柱寺	
관련 건물	內城軍器庫·氷倉·架山鎮倉僧倉架山鎮屬邑軍倉·霧隱堂	外城軍器庫·南倉·戶籍庫·運籌軒贊籌軒·雲帥軒·火藥庫·靑蓮菴	禦藜閣·帳籍庫·氷庫

###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嶺南第一關防’이자 조선 관방의 전초기지 : 조선 후기 산성 축성술의 표본이며, 미지정된 외성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가산산성은 임진·병자 양란을 겪은 후 국방의 보강이 시급함을 느낀 조정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도성에는 북한산성·남한산성을 축성하고 각 지방에는 기존 산성을 장기 입보가 가능하도록 수축하거나 새로이 축성하였다. 양란 이후 산성은 왜군의 조총에 대비해 포루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경상도지역에도 산성 후보지로 금오산성·천생산성을 수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가산산성의 뛰어난 지세 덕분에 이곳에 가산산성 원성(내성)이 축성되었다.
  - 내성은 당시 변화된 축성술에 따라 남포루·북포루가 설치되었고, 장대 축성에 승도·군병이 동원되기도 했다. 아울러 장기농성에 합당한 지세에 각종 성내 시설(못, 우물, 창고 등)을 갖추고, 양란 때 크게 활약한 승군을 상주시켜 승장이 산성 일부를 수호케 하는 등 당시 변화된 군사 운영체제가 적용되었다.
  -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된 가산산성의 축성은 기존 내성 남동쪽으로 가산(해발 901.6m)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한 전형적인 포곡식 석축 산성의 외성을 숙종 26년(1700)에 재차 연장해 축조했다. 후대 중성벽이 축조되어 우



리나라에서는 유일한 3중성의 구조를 취하지만 내성에 외성을 추가해 산성의 기능을 적극 강화함에 따라 남문루에 ‘嶺南第一關防’이란 편액을 걸었을 만큼 이 곳이 지정학적으로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더욱이 외성의 축조수법, 구조, 사용재료, 성벽 주요시설 등은 내성(사적 제 216호, 지정일자 : 1971. 3. 26)과 동일하다. 현재 외성은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1954년 수해로 남문과 성벽이 유실된 구간은 1977~1980년간에 복원·정비되었다.
- 외성의 형태는 梯形이다. 성벽은 서쪽 성벽·남쪽 성벽·남동 성벽·북동 성벽 구간으로 구분되며, 북서쪽은 내성의 남동쪽 성벽과 공유한다. 축조기법은 내성과 동일한 석축성이며, 성들은 성 내 분포하는 바위에서 채석해 부분 가공한 깎돌(할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성벽의 구조형식은 내성과 동일하게 지세에 따라 편축법과 협축법이 적절히 축조되었으나 대개 편축법으로 당시의 축성기법이 구사되었다.

#### ○ 국내 유일의 국방과 지방행정 문화가 복합된 유적이다.

- 외성 안에는 내성과 더불어 산성 수호 및 칠곡도호부·가산진과 관련된 각종 공해(公廨)·공공시설·관방시설 등이 통합 운영되었던 유적이다. 즉 조선시대 ‘영남제일관방’이라 불릴 만큼의 군사 요충지로서의 역할에 지방행정 문화가 복합된 귀중한 역사문화유적이자 학술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외성 안에 다양한 기능의 건물지, 시설물지는 훼손 및 멸실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술조사(지표 및 발굴조사 등)가 필요하다. 이들 학술조사는 관련 학계의 학술적 자료 제공과 추후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정비·활용방안의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 조선시대 산성이 한국전쟁의 상흔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다.

- 가산산성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연합군과 북한군과의 최대의 격전지로 당시 성내 주둔한 북한군을 섬멸하기 위한 연합군의 융단폭격으로 성벽 곳곳에 포탄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 또 성벽을 따라 당시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대변하는 참호와 성벽 주위의 바위에 남아 있는 술한 총탄 자국, 연합군과 북한군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류 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당시 처절했던 비극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조선시대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 현대에 들어 민족상잔의 격전지로 변한 참으로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으로 현대사 및 호국유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 ○ 성 안 자연생태환경과 조화

- 성 내 곳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문화재급 암괴류,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복수초 군락지, 다종다양한 수종이 잘 보존된 산림, 해발은 높지만 완만한 능선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은 등산 코스 등 자연생태환경도 으뜸이다.
- 역사·호국유적인 산성과 더불어 성 안팎으로 잘 보존된 자연생태환경은 가산산성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조화로운 활용 및 보존계획이 필요하다.

○ 산성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

- 현재 산정에 위치한 내성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지정인 외성 주변지역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 주변의 보존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따라서 외성을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마련해 법적·행정적 규제가 시급하다. 이러한 절차는 각종 야기된 민원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에도 정당성이 부여되어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 검토 의견

- 칠곡 가산산성은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은 후 국방의 보장이 시급함을 인식한 조정이 북한산성·남한산성 등을 축조한 기술을 적용하여 포루를 설치하는 등 조선 후기 성곽 축성술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유적임.
- 그리고 축성은 기존 내성 남동쪽으로 가산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한 전형적인 포곡식 석축 산성의 외성을 숙종 26년(1700)에 재차 연장해 축조하였고, 후대 중성벽이 축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3중성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3중성의 구조와 ‘嶺南第一關防’이란 편액은 조선시대에 가산산성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음.
- 더욱이 추가지정 신청된 가산산성 외성은 축조수법, 구조, 사용재료, 성벽 주요시설 등은 내성(사적 제216호, 지정일자 : 1971. 3. 26)과 동일하며 현재 외성은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칠곡 가산산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의 측면에서 보존관리가 필요함.
- 가산산성 안에는 내·중성과 더불어 산성수호의 역할 및 칠곡 도호부 등 관련 공공·공해(公?)시설·관방시설 등이 분포하공 있으며, 성내 곳곳에는 문화재급 암괴류, 복수초 군락지, 다종다양한 수종의 산림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칠곡 가산산성은 역사성 및 축성술이 뛰어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사료됨.

마. 토지조서

○ 외성 추가지정(안) : 전체 87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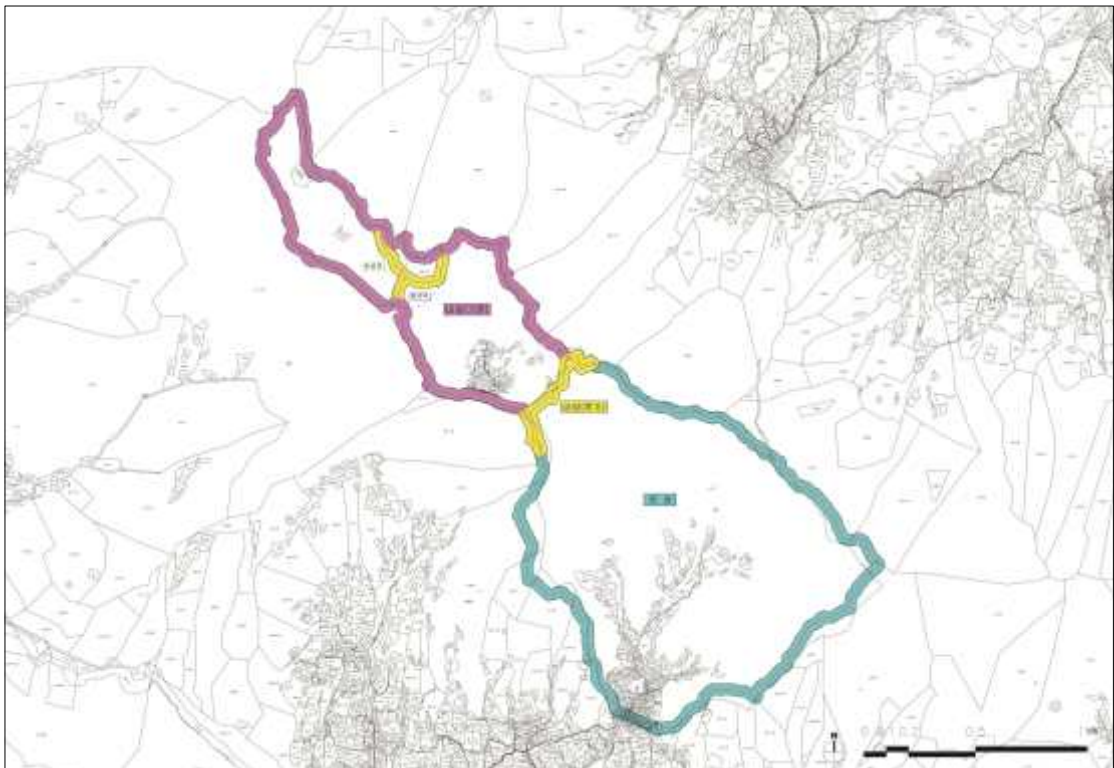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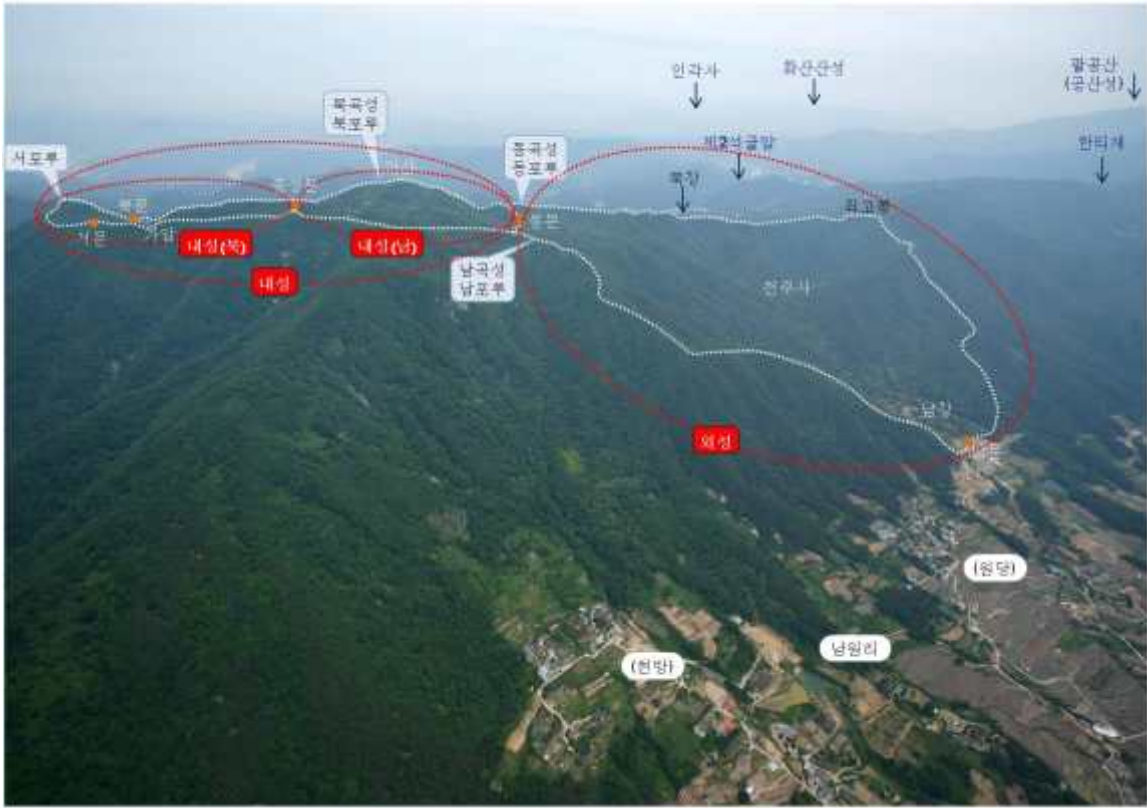
지번	지목	소재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점유 현황
		면	리				
40	임	동명면	남원리	43	43		사
628	임	동명면	남원리	463	130		군
631	전	동명면	남원리	589	346		사
1163	구	동명면	남원리	55,570	279		국
1166	도	동명면	남원리	881	445		국
1167	사	동명면	남원리	149	59		국
32-46	천	동명면	남원리	450	27		사
32-47	전	동명면	남원리	450	260		사
32-53	임	동명면	남원리	324	185		국
32-54	전	동명면	남원리	327	327		사
32-55	천	동명면	남원리	340	340		사
32-56	전	동명면	남원리	479	479		사
32-57	임	동명면	남원리	281	281		사
32-58	천	동명면	남원리	142	142		사
32-59	천	동명면	남원리	188	188		사
32-60	천	동명면	남원리	400	346		사
32-63	천	동명면	남원리	218	76		사
32-64	천	동명면	남원리	115	115		사
32-65	천	동명면	남원리	84	84		사
32-66	천	동명면	남원리	107	107		사
32-67	구	동명면	남원리	1,045	110		국
32-75	도	동명면	남원리	324	193		국
34-1	임	동명면	남원리	169	163		사
34-2	임	동명면	남원리	238	238		사
34-3	임	동명면	남원리	102	23		사
628-1	잡	동명면	남원리	238	238		국
628-2	답	동명면	남원리	770	137		군
628-3	답	동명면	남원리	195	36		군
629-1	전	동명면	남원리	234	122		군
629-2	전	동명면	남원리	182	79		군
629-3	잡	동명면	남원리	63	63		국
629-4	전	동명면	남원리	70	16		군
630-12	대	동명면	남원리	24	24		사
630-13	대	동명면	남원리	12	12		군
630-14	대	동명면	남원리	1	1		사
630-4	대	동명면	남원리	194	194		사
630-5	대	동명면	남원리	183	183		사
630-6	대	동명면	남원리	171	171		사
630-7	도	동명면	남원리	69	69		국
630-8	도	동명면	남원리	76	18		국
631-1	잡	동명면	남원리	248	248		국
631-2	전	동명면	남원리	36	30		군
632-22	대	동명면	남원리	238	44		사
632-23	대	동명면	남원리	218	205		사

지번	지목	소재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점유 현황
		면	리				
632-24	대	동명면	남원리	132	132		사
632-25	대	동명면	남원리	79	79		사
632-26	대	동명면	남원리	145	145		사
632-27	대	동명면	남원리	294	294		사
632-28	대	동명면	남원리	241	241		사
632-29	전	동명면	남원리	284	243		사
632-30	전	동명면	남원리	188	58		사
632-31	전	동명면	남원리	393	53		사
632-32	전	동명면	남원리	370	15		사
632-34	임	동명면	남원리	1,980	938		국
632-41	대	동명면	남원리	106	106		사
632-43	대	동명면	남원리	43	33		군
632-44	대	동명면	남원리	13	13		사
632-45	대	동명면	남원리	13	13		사
산1-2	임	동명면	남원리	2,459	896		도
산1-3	임	동명면	남원리	1,056	223		도
산1-4	임	동명면	남원리	752	747		도
산1	임	동명면	남원리	1,421,918	108,367		도
산14-1	임	동명면	남원리	5,950	340		사
산14-2	임	동명면	남원리	26,975	4,518		사
산16-1	임	동명면	남원리	27,967	9,997		사
산16-2	임	동명면	남원리	24,793	423		사
산162	도	동명면	남원리	1,323	4		국
산17	임	동명면	남원리	51,967	11,043		사
산18	임	동명면	남원리	33,719	6,816		사
산28	임	동명면	남원리	273,719	18,873		사
산3-1	임	동명면	남원리	31,636	92		사
산3-12	임	동명면	남원리	2,171	73		군
산3-13	임	동명면	남원리	4,909	1,263		사
산3-2	임	동명면	남원리	20,628	85		사
산3-3	임	동명면	남원리	26,593	1,945		사
산3-6	임	동명면	남원리	645	5		군
산30	임	동명면	남원리	124,165	3,977		사
산31-2	임	동명면	남원리	237,620	1,803		사
산34	임	동명면	기성리	11,332	3		사
산34-1	임	동명면	기성리	31,572	1,427		사
산34-2	임	동명면	기성리	30,196	211		사
산35	임	동명면	기성리	282,762	3,291		사
산88	임	가산면	가산리	236,826	7,076		군
산92-6	임	가산면	가산리	199,934	690		사
산85	임	가산면	응추리	26,182	9,857		군
산87	임	가산면	응추리	241,190	26,547		군
산95-1	임	가산면	응추리	163,834	9,106		사
계		87필지		3,451,940	229,831		

○ 내성 조정(안) : 당초 14필지, 조정 2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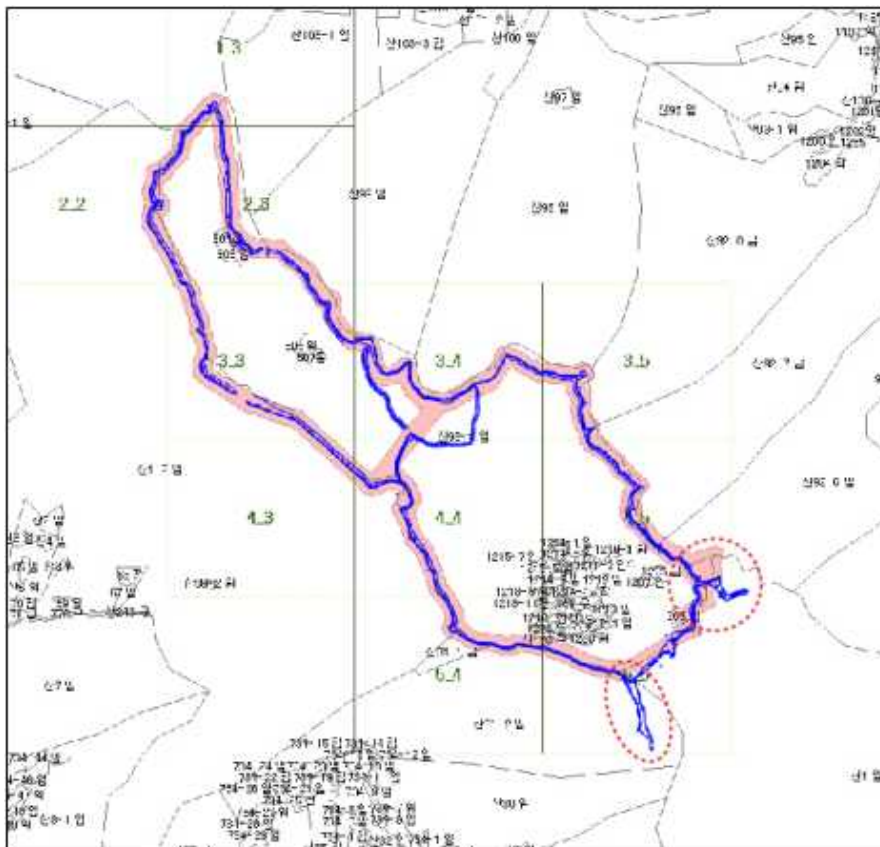
지번	지목	소재지		지정면적(m <sup>2</sup> ) (당초)	지정면적(m <sup>2</sup> ) (수정)	소유자	점유 현황	증감면적(m <sup>2</sup> ) (당초와 수정)
		면	리					
504	전	가산면	가산리	253	0		사	-253
505	임	가산면	가산리	2,072	97		사	-1,975
1206	임	가산면	가산리	55	105		사	50
1220	임	가산면	가산리		307		사	307
1221	임	가산면	가산리		74		사	74
1233	도	가산면	가산리		53		국	53
1268	도	가산면	가산리		81		국	81
1269	구	가산면	가산리		97		국	97
1218-24	임	가산면	가산리		8		사	8
1218-25	임	가산면	가산리		43		사	43
1218-26	전	가산면	가산리		21		사	21
산92-6	임	가산면	가산리	4,314	5,727		사	1,413
산92-7	임	가산면	가산리	3,854	14,791		사	10,937
산92-8	임	가산면	가산리	202	5,476		사	5,274
산96	임	가산면	가산리	1,590	11,231		사	9,641
산98-1	임	가산면	가산리	138,014	167,307		도	29,293
산99	임	가산면	가산리	4,403	17,743		사	13,340
산103-1	임	가산면	가산리		6,486		사	6,486
산150	구	가산면	가산리		459		국	459
산49-1	임	가산면	금화리	4,169	3,994		도	-175
산1	임	동명면	남원리	7,760	26,099		국	18,339
산31-1	임	동명면	남원리	1,474	172		사	-1,302
산31-2	임	동명면	남원리	6,365	13,562		사	7,197
산1-2	임	동명면	학명리	52,643	19,820		사	-32,823
계		23필지		227,168	293,753			66,585(증)

바. 참고자료





<가산산성 남문 부분 전경>



<현재 고시 도면과 성벽 현황측량과의 차이점>

-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 심곡서원 사적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심곡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 심곡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의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심곡서원(龍仁 深谷書院)/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72.5.4)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 등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8필지 7,862㎡
    - (문화재구역) 2필지 1,071㎡, (보호구역) 8필지 6,791㎡
- (4) 관리단체(안) : 심곡서원 (대표자 박한철)
- (5) 신청사유
  - 조선 중종 때 사림파의 영수였던 정암 조광조를 주향으로 하며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전학후묘 형식을 갖춘 심곡서원은 1605년 건립되어 1650년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서원으로, 건립 연대와 사액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사액 후 원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미훼손 서원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 라. 현지조사의견('14.08.23/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1) 문화재 현황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심곡서원은 광교산(해발 582m)과 형제봉(해발 448m)이 주봉을 이루면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간 산봉우리들



중 낮은 봉우리인 소실봉(해발 188m)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진 구릉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동쪽의 소실봉과 서쪽의 응봉 사이에서 소실봉을 등지고 응봉을 향하는 묘좌유향(卯坐酉向)의 입지구조로 서향을 하고 있으며 입지고도는 해발 약 95~105m 정도이다. 현재 주변 일대가 도시화 되면서 아파트에 둘러 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43번 국도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남서쪽 약 360m 떨어진 곳에 조광조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 서원이 자리잡은 곳은 동서 양쪽에 능선이 자리잡고 있어 ‘깊은말’ 이라고 하며, 서원이 생긴 이후에는 ‘서원말’이라고 불리고 있다. 서원말 상부에서 흘러내린 작은 실개천은 남쪽으로 흘러 윗여수내와 아랫여수내를 거쳐 원천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이 원천천이 서원의 임수이자 외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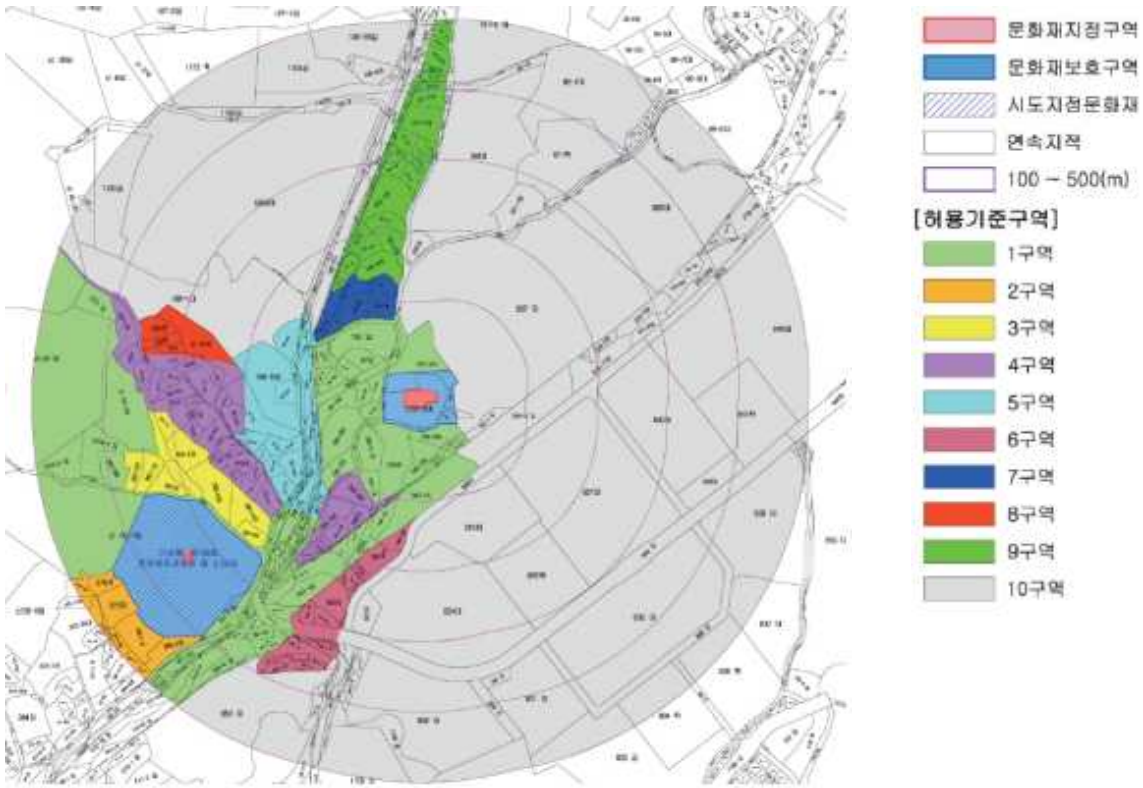
-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 시묘살이를 하던 곳이자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지역으로 1576년 포은 정몽주를 배향한 죽전서원에 배향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이후 1605년 묘소 인근에 사우를 조성하게 되었다. 1650년 (효종 원년) ‘深谷’이라는 사액을 받으면서 묘소 인근에 있던 사우를 현 위치로 옮겨 중창한 것이 심곡서원이다.
-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된 47개 서원 중 하나로 1933년 대대적인 개건이 이루어졌으며, 1953년 심곡학원을 설립하고 문정중학교를 개교하면서 강당 등 일부 건물 내부가 개조되고 동·서재가 철거되는 등 원래의 모습 변형이 이루어졌다.
- 이후 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면서 주요 건물을 비롯하여 축대와 담장, 연지 등의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고 2004년과 2007년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08년에 동·서재가 복원된 바 있다.
- 강당 후면 우측에 위치한 장서각에는 당초 67종 486책과 정암집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1987년, 1993년)에 걸쳐 도난당해 현재는 몇 십권만 보관 중이며, 경내·외에는 조광조가 식재한 것으로 알려진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 (사우) 조광조와 양팽손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겹처마 건물로 1605년 건립되어 1650년 중창되었으며 1933년과 2010년에 중수되어 현재에 이른다. 2010년 중수 시 1636년 작성된 상량문 목서가 발견되었다.

- (강당)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겹처마 양식으로 목판벽의 각 칸마다 판자문비를 달아 사면을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33년과 2012년 중수되었다. ‘강당기’(1673년)에는 강당이 1661년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2년 중수 시 1657년 작성된 상량문 목서가 발견된 바 있다.
- (동·서재) ‘심곡서원도’(연대미상) 상에 ‘거인재’와 ‘유인재’로 기록된 동·서재는 1953년 문정중학교가 개교되면서 철거되었다. 이후 2004년과 2007년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에 홑처마로 복원되었다. 2011년 장서각 중수 때 적심에서 발견된 동서재 상량문 목서(1901년)가 발견되었다.
- (장서각) 강당 후면에 자리한 장서각은 1920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1981년, 2011년 중수된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홑처마 건물이다. 1987년, 1993년에 걸쳐 소장도서를 도난당해 현재는 일부만 보관 중이다.
- (기타) 정면 4칸, 측면 4칸의 합각 홑처마 양식의 치사재는 서예교실로 사용 중이며, 2012년 복원된 산양재는 전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두 건물 모두 전통 양식에서 변형된 모습이다.

##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안) :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을 고려하여 “용인 심곡서원(龍仁 深谷書院)”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형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1층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3층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5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5층이하)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8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8층이하)	
8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9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9층이하)	
9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10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35m 이하(10층이하)	
10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62m 이하(20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65m 이하(20층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철토 및 성토 허용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본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작은숫자지역 기준 적용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기준 적용) •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 대상임.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보수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용인 심곡서원은 초도심화된 곳에 위치하여,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신중하게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용인 심곡서원은 조선시대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형식을 갖춘 서원으로 사당을 중심으로 내삼문, 강당, 외삼문, 홍살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 심곡서원은 1605년 건립되어, 1650년(효종 원년)에 심곡(深谷)으로 사액을 받으면서 현위치에서 서원을 중창한 사액서원이다.
- 조선 사림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암 조광조를 주향 인물로 모신 곳으로서, 정암 조광조를 배향하는 서원(도봉서원, 미원서원지, 인산서원지, 정퇴서원지, 중림서원, 죽수서원, 경현서원)중에서 1869년 서원 훼손령 시 훼손되지 않고 남겨진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 정암 조광조의 묘소(경기도 기념물 제169호)가 서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배향인물과 묘소가 연속성을 갖는 유적으로서 가치를 배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존하는 중요 자료로는 1636년 상량문 목서, 1657년의 강당 중수기 상량문, 심곡서원 강당기(1673년, 우암 송시열), 심곡서원 학규(1747년 도암 이재 찬), 숙종대왕어제(1740년 민진원 찬) 등의 자료가 있다.
- 이러한 가치를 가진 심곡서원은 오랫동안 중수와 수리를 거쳐 변화된 서원의 특성을 밝혀내고, 서원 제향의 연관 지역과 인물, 심곡서원의 교육과 강회, 활동상, 인물교류(방문, 통문, 시문학) 등의 자료가 보완된다면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참고사항

##### (1)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	대	4,725	1,033	3,692		
2		203-5	대	5,094	38	1,733		
3		204	전	273	-	273		
4		205	답	377	-	377		
5		203-6	대	153	-	153		
6		203-7	대	13	-	13		
7		770	구	621	-	403		
8		784	구	512	-	147		
계	8필지			11,768	1,071	6,791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자료 조사·보완

## 4.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명칭(한자) 변경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의 한자 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와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에 따른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 황상동의 한자가 黃桑洞에서 鳳巖洞으로 지명 변경 고시(구미시 고시 제2013-11호, 2013.01.16)되었기에 관련 문화재의 한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황상동(黃桑洞) 고분군(사적 제470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산 68 외
  - 지정일 : 2006. 03. 07
  - 관리단체 : 구미시(구미시장)
- (3) 신청내용<문화재명칭(한자) 변경>
  - 명칭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구미 황상동 고분군(龜尾 <u>黃桑洞</u> 古墳群)	구미 황상동 고분군(龜尾 <u>鳳巖洞</u> 古墳群)

- 명칭 변경사유
  -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즈음하여 왜곡된 마을 한자 명칭의 복원 변경

### 라. 참고자료(「2012년도 구미시 지명위원회 심의 보고서」 요약)

- 법적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 위원 구성 현황

- 구미시 지명위원회 위원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	위원장	구미시	시장	○○○
2	부위원장	구미시	부시장	○○○
3	위원	구미시	건설도시국장	○○○
4	위원	구미문화원	고문	○○○
5	위원	구미문화원	유교위원장	○○○
6	위원	향토사학자	향토사학자	○○○

○ 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일자 : 2012. 12.

- 건명 : 황상동 한자명칭 변경 건의

- 민원인 : 윤○○ 외 1,479명

- 내용 : 현재 황상동(黃桑洞) 명칭을 황상동(凰纒洞)으로 변경 복원

- 심의방법 : 개별 서면심의

○ 변경사유 : 일제 강점기 왜곡으로 인한 한자명칭 변경에 따른 옛지명 복원

○ 결과

현재 명칭		변경 명칭	
黃	桑	凰	纒
누르(황)	뽕나무(상)	봉황(황)	이마(상)

○ 황상동의 한자명 풀이

1) 황상동(黃桑洞) : 현재 쓰고 있는 지명 한자

- 황상동(黃桑洞)의 황(黃)은 누르다, 누른 색깔 등을 나타내고 상(桑)은 뽕나무를 나타내어 글자를 풀이하면 “누른 뽕나무가 있는 마을”, “뽕나무와 관련된 마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황상동에 뽕나무나 양잠업이 발달하였다면 인동읍지 등에서 진상품이나 특산물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 하는데 그러한 문구는 없다.

2) 황상동(凰纒洞) : 옛지명 한자

- 황상동(凰纒洞)의 황(凰)은 봉황의 암컷을 나타내고, 상(纒)은 이마, 머리, 꼭대기 등을 나타낸다. 이를 풀어보면 “봉황의 암컷이 이마를 반듯이 하고 머리를 들고 있는 마을 형상”, “마을의 형상이 봉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봉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재 구평동 운수연수원 뒤편에 봉두암산(鳳頭岩山)이 있다. 봉황은 암수가 같이

있는 새이다. 봉(鳳)이 있으면 반드시 황(凰)이 있어야 조화를 이룬다. 즉, 황상(凰頽) 암컷의 이마(머리, 꼭대기)가 봉두(鳳頭) 수컷의 머리와 조화를 이룬다.

○ 시대별 명칭 현황

시기	참고문헌	황상동	황상산
1699년	옥산지	凰頽洞	新傍山
1774년	이현암기	凰頽	凰頽山
1871년	영남읍지	-	凰頽山
1872년	지방지도	凰頽洞	凰頽山
1877~1882년	인동읍지	黃洞	凰頽山
1882~1895년	인동읍지	黃桑	凰桑山
1895년 이후	인동군읍지	凰桑	凰桑山
1912년	조선총독부관보	黃桑洞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5. 종묘 앞 복원 및 광장정비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앞 복원 및 광장을 정비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종묘 앞에 위치한 전묘, 제생동천 등 복원 및 광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의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일대
  - 면적 : 34,600m<sup>2</sup>
  - 사업내용
    - 종묘 복원 : 종묘 어도 및 어구, 종묘전교, 제생동천(濟生洞川) 등
    - 종묘광장정비 : 신성림 조성, 산책로 포장, 한옥관리동 신축 등
  - 사업예산 : 7,000백만원

### 라. 참고사항

- (1) 복원 및 정비계획 추진경과
  - '05.4~10월 : 종묘 앞 시민광장 정비 연구용역(문화재청)
    - 문화재 원형복원(안), 정비 대책 등
  - '05.10.18 :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문화재청)
    - 피맛길, 순라길, 어도 등 원형복원 및 신성림 확장 조성
  - '12. 8 : 기본설계 심사(궁능문화재과)
  - '12.12 : 건축, 토목분야 공사계약(종로구)

- '13. 3 : 시굴조사 허가(발굴제도과)
- '13. 9 : 수도 · 통신 배관 등 지장물 보고(보존정책과) 및 설계변경 추진
- '13.10 : 발굴조사 허가(발굴제도과)
  - 어도구간 미발굴 지역 및 종묘광장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발굴계획 수립
- '13.11.22 : 기술지도회의(수리기술과)
- '13.11.26 : 설계변경 조건부 승인(수리기술과)
  - 모든 굴착행위(지장물 이설, 수목 이식 등) 굴착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굴·발굴 여부를 발굴제도과의 지도를 받음

**(2) 발굴 추진경과**

구분	조사기간	면적	조사내용	조사기관
1차	'08.11.24 ~'11.2.28	7,000m <sup>2</sup>	외대문 외부 진입구간, 어도 및 어구, 종묘전교, 행랑 건물지 등	서울역사박물관
2차	'13.4.4 ~'13.4.30	3,438m <sup>2</sup> (시굴)	어도 및 어구 구간 확인을 위한 시굴 조사	한울문화재연구원
3차	'13.7.16 ~'13.8.30	1,791m <sup>2</sup>	외대문 앞에서 종묘 전교까지의 어구 전구간 및 어도 일부 구간	한백문화재연구원
4차	'14.4.27 ~'14.9.27	9,682m <sup>2</sup>	어도구간 정밀발굴, 조경공사 구간 시굴조사	(재)기호문화재연구원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은 시행하되 사적분과의 지도를 받아 진행할 것

## 6. 화성 윙릉과 건릉 내 화장실 건립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윙릉과 건릉」 내 화장실 건립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화성 윙릉과 건릉 정문 주변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 윙건릉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함.
- 윙릉과 건릉 주차장 내 화성시에서 건립 · 관리해오던 화장실(1973년 건립)이 철거('14. 1월)된 후, 정문주변 화장실 수요에 부응하고자 매표소 안쪽 해설사대기실 뒤편에 임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 이동식화장실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등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에 앞서 건립위치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철거된 화장실은 화성시에서 부속기관 자체관리대상으로 분류(2013.10.4.) 하여 문화재청으로 관리위임을 요청하였으나 40년이상 건물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서부지구관리소에서 화성시의 관리위임 요청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던 바, 화성시에서 철거(2014.1. 6)를 하게 되었음.

#### <참고사항>

- 2014. 1월 화성시에서 주차장지역 화장실을 철거와 관련, 주변상가 · 주민(화산동 통장단협의회)에 의한 집단민원 발생
- 공용화장실이 철거된 위치에 다수민원으로 화장실 신축 건의
- \* 2010년에는 화성시에서 기존화장실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을 사유로 기존 화장실 옆에 이동식 공용화장실(여성전용,범중형태) 추가 설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10.3.17.사적분과/사유:능 경관저해)된 바 있음.
- 2014.10.8. 제11차 사적분과 검토안전보고 : 보류(현지조사 후 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21
- (3) 신청내용<화장실 건립 위치 검토>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21(문화재구역 내)
  - 내용
    - 제1안 : 화성시가 건립·관리해오다 철거된 화장실 위치('73건립, '14.01.철거)
    - 제2안 : 경내 관리사무소 주변(경계울타리 조정)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4.10.2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소요 화장실 규모(30평 내외)가 큰 시설이므로 독립위치보다는 문화관과 인접하여 시설함이 좋을것으로 봄
  - 화장실 이용의 편의성과 용건릉 입구 지역의 잡다한 시설정리를 위해 현재의 철책을 화장실을 외부에서 이용하고 역사문화관도 개방된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함이 좋겠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제2안으로 시행할 것

## 7. 선농단 제례공간 정비방안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제463호 「선농단」의 제례공간 정비방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1년부터 광특회계로 추진 중인 ‘선농단 역사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선농단 제례공간의 고증을 통해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자 부의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선농단(사적 제463호)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외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외
  - 정비방안

구분	기준	정비(안)		비고
		1안	2안	
선농단	규모 부적합	규모 축소(현위치 유지) 하단 석축 노출(2단)	복토된 흙 제거 하단 석축 노출(2단)	
유(壘)	전벽돌	석축+사초	석축+사초 내유·외유(양유) 조성 외유는 규모 축소	
유문	없음	홍살문	홍살문 (유물6개소, 정문1개소)	
상부석단	석단(1단)	철거	철거	

## 라. 참고사항

### (1) 추진경과

- '08.12 :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 선농단의 역사, 변천과정 및 현황 조사, 사업의 추진방향 및 규모 제안
- '09. 8 :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10. 6 : 관계전문가 자문
  - 놀이터 부분은 이미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신축 가능
- '10. 8 : 선농단 주변 시(밭길)조사
  - 과거 선농단에 대한 유구,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트렌치 조사결과 선농단 조성시기는 현대로 추정
- '11. 1 : 선농단 위치 및 형식 고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11. 2 : 선농단 조성 설계공모 자문위원회
- '11. 6 :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정비사업 설계공모
- '12. 9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선농단 유적지에 맞는 시설 계획 및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
- '12.11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단계별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14. 9~12월 : 선농단 제례형식 고증과 복원 및 공간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 선농제의 원형과 역사적 가치 및 의미 고찰
  - 근대 이후 변화된 선농단의 위치 및 단의 배치와 구성 등을 바탕으로 선농단 정비 방안 마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8. 김해 분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분산성(사적 제66호)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가야로 405번 안길 210-162(어방동) 외

(3) 신청내용<김해 분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동문지 일부가 문화재구역 외곽까지 연장되므로 추가 지정

- 당초 : 34필지, 59,923㎡ → 조정 : 35필지, 60,19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어방동	산35-2	임	11,702	268		추가

○ 보존정책과 검토(안)

- 지자체(안)대로 동문지 구간 추가 지정

###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4.11.10/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상기 건은 동문지로 확인된 부분이 문화재구역 밖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김해 분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동상동	산3-1	임	96,033	955		
2	동상동	산4-1	임	153,023	899		
3	어방동	1019	도	86	86		
4	어방동	1022	도	195	195		
5	어방동	951	전	767	767		
6	어방동	952	전	1,669	1,669		
7	어방동	953	전	66	66		
8	어방동	954	전	1,174	1,174		
9	어방동	955	전	185	185		
10	어방동	956	전	420	420		
11	어방동	957	전	116	116		
12	어방동	958	대	539	539		
13	어방동	959	전	347	347		
14	어방동	960	전	413	413		
15	어방동	961	전	698	698		
16	어방동	962	대	945	945		
17	어방동	964	임	595	595		
18	어방동	965	전	238	238		
19	어방동	966	전	307	307		
20	어방동	967	전	36	36		
21	어방동	968	전	374	374		
22	어방동	969	전	40	40		
23	어방동	970	전	212	212		
24	어방동	971	전	2,013	2,013		
25	어방동	972	전	159	159		
26	어방동	973	전	268	268		
27	어방동	974	전	109	109		
28	어방동	975	전	420	420		
29	어방동	산9	임	35,702	35,702		
30	어방동	산36	임	893	893		
31	어방동	산37	임	1,190	1,190		
32	어방동	산38	임	397	397		
33	어방동	산39	임	397	397		
34	어방동	산40	임	99	99		
35	어방동	산35-2	임	11,702	268		
	계	35필지		311,827	53,191		



## 9. 김해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구산동 고분군(사적 제75호)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20 외
- (3) 신청내용<김해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진입공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
    - 당초 : 문화재구역 5필지, 1,706㎡ → 조정 : 문화재구역 5필지, 1,706㎡, 보호구역 2필지 2,92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구산동	61-4	전	1,439	7(기지정)	1,432		추가
구산동	73	전	1,488		1,488		추가
					2,920		

- 보존정책과 검토(안)
  - 김해시에서는 구산동 고분군과 인근 문화재를 연결하는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 탐방로 계획이 조정되어 구산동 73번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 고분군이 주택, 축사 등으로 둘러싸여 어수선하고 접근도 어려워 주변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구역 지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 문화재구역 5필지, 1,706㎡ → 조정 : 문화재구역 5필지, 1,706㎡, 보호구역 1필지 1,432㎡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10/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고분군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기는 고분의 보호·관리를 위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축사(소사육) 등에 의해 훼손된 고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김해 구산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주 소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1	구산동	61-4	전	1,439	7	1,432		
2	구산동	62	전	238	238			
3	구산동	63	전	36	36			
4	구산동	64	전	655	655			
5	구산동	70	전	770	770			
	계	5필지		3,138	1,706	1,432		

## 10. 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내산리 고분군(사적 제120호)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 외
- (3) 신청내용<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내산리 고분군 유적정비 종합계획(2005)’에 의거 도로 서편에 위치한 문화재구역에 대한 분묘현황자료가 없으므로 사적 해제
    - 당초 : 104필지, 186,135㎡ → 조정 : 102필지, 177,078㎡
  - 보존정책과 검토(안)
    - ‘내산리 고분군 유적정비 종합계획(2005)’에서 도로 서편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사적 해제 근거자료로 미약하므로 문화재구역 유지

###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4.11.10/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도로에 의해 구분된 서쪽구역에 대한 사적 지정 해제에 관한 건임.
  - 사적지정해제의 근거로서 고성군은 2005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아무런 신청구역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음.
  - 상기 건의 검토는 고분분포범위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적 해제 근거가 미약하며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11.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일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필지 중 잔여지가 적어 활용가지가 떨어지는 필지의 지번 전체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 당초 : 533필지 / 789,204m<sup>2</sup> → 조정 : 533필지 / 795,014m<sup>2</sup>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지정면적	잔여면적	
1	관청리	102-1	대	232	221	11	
2	관청리	103-5	대	132	80	52	
3	관청리	260	대	311	169	142	
4	관청리	262-4	대	417	347	70	
5	관청리	280	전	304	207	97	
6	관청리	283	전	1,091	590	501	
7	관청리	1003-17	전	93	52	41	
8	관청리	971	전	734	542	192	
9	관청리	975	전	519	459	60	
10	남산리	산1	임	2,579	1,245	1,334	
11	남산리	18-4	대	1,282	152	1,130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지정면적	잔여면적	
12	남산리	산10	임	1,388	601	787	
13	국화리	산4-1	임	992	730	262	
14	신문리	414	전	3,028	2,471	557	
15	신문리	413-3	전	1,223	676	547	
16	신문리	476-1	전	281	254	27	

○ 보존정책과 검토(안)

- 필지 일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대지면적이 792㎡(소규모 발굴 경비 지원 기준 적용)이거나 건물이 지적선에 물려있을 때, 잔여지 면적이 10% 이하일 때, 그 외 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잔여지를 지정구역에 편입(2013년도 적정성 검토시 의결사항)
- 다만 남산리 18-4번지는 위 조건에 충족되나 잔여면적이 넓고, 주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추가지정 필요성이 낮으며, 반면 남산리 산1번지는 남문 주변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초 : 533필지 / 789,204㎡ → 조정 : 533필지 / 791,731㎡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검토의견
1	관청리	102-1	대	232	221	11(4.74%)		편입
2	관청리	103-5	대	132	80	52(39.39%)		편입
3	관청리	260	대	311	169	142(45.66%)		편입
4	관청리	262-4	대	417	347	70(16.79%)		편입
5	관청리	280	전	304	207	97(31.91%)		편입
6	관청리	283	전	1,091	590	501(45.92%) 건축물 위치		편입
7	관청리	1003-17	전	93	52	41(44.09%)		편입
8	관청리	971	전	734	542	192(26.16%)		편입
9	관청리	975	전	519	459	60(11.56%)		편입
10	남산리	산1	임	2,579	1,245	1,334(51.73%)		편입
11	남산리	18-4	대	1,282	152	1,130(88.14%)		-
12	남산리	산10	임	1,388	601	787(56.7%)		-
13	국화리	산4-1	임	992	730	262(26.41%)		-
14	신문리	414	전	3,028	2,471	557(18.39%)		-
15	신문리	413-3	전	1,223	676	547(44.73%)		-
16	신문리	476-1	전	281	254	27(9.61%)		편입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2013년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시 한 필지 일부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 지정구역 포함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1. 필지의 잔여면적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이하일 것. (건축법 시행령 :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개인사업자 :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2. 문화재 지정 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이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
  3. 필지 전체 면적 중에 지정되고 남은 잔여 면적이 10% 이하일 경우.
  4. 그 외 필지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다만 남산리 18-4번지는 위 조건에 충족되나 잔여면적이 넓고, 주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추가지정 필요성이 낮으므로 제외하고, 남산리 산1번지는 남문 및 성곽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1	관청리	1000사	615	615		
2	관청리	1002사	516	516		
3	관청리	1003-16사	12	12		
4	관청리	1003-17전	93	93		
5	관청리	1003-18도	11,994	2,193		
6	관청리	1003-1도	3,045	165		
7	관청리	1003-9학	46	46		
8	관청리	1004-1구	38	38		
9	관청리	1004-2구	70	70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10	관청리	1004구	186	186		
11	관청리	1009도	119	57		
12	관청리	100-9임	247	88		
13	관청리	1010구	1,957	6,336		
14	관청리	1011구	235	235		
15	관청리	1012-29천	1,918	535		
16	관청리	1012-30대	35	18		
17	관청리	1016도	4,987	487		
18	관청리	102-10도	181	109		
19	관청리	102-12대	460	50		
20	관청리	102-1대	232	232		
21	관청리	102-3대	126	126		
22	관청리	102-4대	116	116		
23	관청리	102-5전	324	324		
24	관청리	102-6대	79	79		
25	관청리	102-7 대	102	102		
26	관청리	1027 도	2,932	199		
27	관청리	1027-1도	92	92		
28	관청리	1028-14 구	31	31		
29	관청리	1028-28 구	12	12		
30	관청리	1028-3구	44	44		
31	관청리	1028구	258	154		
32	관청리	102-8도	655	655		
33	관청리	102-9대	105	105		
34	관청리	103-1도	298	225		
35	관청리	103-2도	132	132		
36	관청리	103-3대	26	11		
37	관청리	103-4도	185	133		
38	관청리	1035 도	456	456		
39	관청리	103-5대	132	132		
40	관청리	104-1전	808	631		
41	관청리	104-2도	33	33		
42	관청리	1042사	674	674		
43	관청리	104-3도	65	65		
44	관청리	1043사	278	278		
45	관청리	1049사	172	172		
46	관청리	1050도	980	181		
47	관청리	105-1전	327	183		
48	관청리	105-2대	255	138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49	관청리	1091대	304	304		
50	관청리	1093대	225	225		
51	관청리	1094도	99	99		
52	관청리	1095전	218	218		
53	관청리	109-5전	1,002	767		
54	관청리	109-6대	198	63		
55	관청리	1096천	10	10		
56	관청리	109-7대	46	42		
57	관청리	1097전	132	132		
58	관청리	109-8대	185	185		
59	관청리	109-9대	411	88		
60	관청리	1099전	1,630	1,630		
61	관청리	1100천	245	17		
62	관청리	1102도	704	63		
63	관청리	1103전	641	641		
64	관청리	110전	701	701		
65	관청리	1111-1도	311	311		
66	관청리	1111도	739	17		
67	관청리	1112사	364	364		
68	관청리	111전	410	410		
69	관청리	112전	1,716	788		
70	관청리	113전	1,044	14		
71	관청리	118-1전	267	44		
72	관청리	118-2도	46	1		
73	관청리	118-3도	403	74		
74	관청리	130전	264	144		
75	관청리	131대	1,001	48		
76	관청리	132대	565	438		
77	관청리	134전	919	688		
78	관청리	135전	350	62		
79	관청리	139-1전	1,878	195		
80	관청리	1잡	1,041	206		
81	관청리	208전	1,005	1,005		
82	관청리	209사	215	215		
83	관청리	210-1전	836	618		
84	관청리	210-2전	542	542		
85	관청리	210-3전	529	152		
86	관청리	210-4전	2,661	1,435		
87	관청리	210-5전	142	142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소
88	관청리	211전	2,262	245		
89	관청리	224-1전	396	396		
90	관청리	224-2대	469	469		
91	관청리	224-5전	978	349		
92	관청리	224-6전	795	795		
93	관청리	225-1대	187	187		
94	관청리	225-2대	157	157		
95	관청리	225-3대	38	38		
96	관청리	225-4대	61	61		
97	관청리	225-5대	1	1		
98	관청리	225-6대	22	22		
99	관청리	225-7대	98	98		
100	관청리	225대	197	197		
101	관청리	226대	658	658		
102	관청리	227-1대	353	353		
103	관청리	228대	69	69		
104	관청리	229전	41	41		
105	관청리	230-10대	221	221		
106	관청리	230-1대	826	396		
107	관청리	230-2전	235	64		
108	관청리	230-44전	461	400		
109	관청리	230-7대	1,015	96		
110	관청리	250-3대	8,735	909		
111	관청리	260대	311	311		
112	관청리	261전	185	185		
113	관청리	262-1대	208	218		
114	관청리	262-2대	260	235		
115	관청리	262-4대	417	417		
116	관청리	262-5대	201	201		
117	관청리	262-6대	94	94		
118	관청리	263대	50	48		
119	관청리	278-1전	2,684	1,078		
120	관청리	278-2대	807	486		
121	관청리	279전	370	297		
122	관청리	280전	304	304		
123	관청리	281대	149	149		
124	관청리	282전	122	122		
125	관청리	283전	1,091	1,091		
126	관청리	286-1전	294	61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127	관청리	287전	992	925		
128	관청리	288전	707	707		
129	관청리	289-1전	569	569		
130	관청리	289-2전	572	572		
131	관청리	289-3전	942	942		
132	관청리	39-2대	548	101		
133	관청리	39-3전	1,005	58		
134	관청리	39-5대	73	73		
135	관청리	3전	1,474	449		
136	관청리	40-10대	129	129		
137	관청리	40-1전	843	843		
138	관청리	40-2대	284	284		
139	관청리	40-3대	139	139		
140	관청리	40-4전	195	195		
141	관청리	40-5전	202	202		
142	관청리	40-6대	364	103		
143	관청리	40-7대	235	235		
144	관청리	40-9대	228	197		
145	관청리	40대	205	164		
146	관청리	41-11도	152	43		
147	관청리	41-18대	165	131		
148	관청리	41-19대	172	172		
149	관청리	41-1전	1,170	138		
150	관청리	41-23전	268	268		
151	관청리	41-24전	231	231		
152	관청리	41-25전	212	212		
153	관청리	41-26전	56	56		
154	관청리	41-27전	102	102		
155	관청리	41-28전	73	73		
156	관청리	41-2대	142	142		
157	관청리	41-4대	473	375		
158	관청리	41-5대	139	95		
159	관청리	42-11대	112	112		
160	관청리	42-12대	50	50		
161	관청리	42-13대	50	21		
162	관청리	42-1대	126	73		
163	관청리	42-3대	132	132		
164	관청리	42-5대	93	93		
165	관청리	42-6대	142	142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166	관청리	42-7대	271	267		
167	관청리	42-9대	112	112		
168	관청리	43-1전	152	152		
169	관청리	43-2전	264	264		
170	관청리	43-3전	235	235		
171	관청리	43-4대	149	149		
172	관청리	43-5대	175	175		
173	관청리	43-6전	360	360		
174	관청리	43-7전	582	582		
175	관청리	43-8대	23	23		
176	관청리	43-9학	539	539		
177	관청리	43전	737	737		
178	관청리	44학	3,855	3,855		
179	관청리	45-1대	258	258		
180	관청리	45대	688	681		
181	관청리	46-13전	102	102		
182	관청리	46-16대	165	69		
183	관청리	46-19전	10	10		
184	관청리	46-1대	202	202		
185	관청리	46-21대	153	153		
186	관청리	46-23전	199	199		
187	관청리	46-27대	12	12		
188	관청리	46-28대	27	27		
189	관청리	46-2대	185	185		
190	관청리	46-30전	243	243		
191	관청리	46-3대	96	96		
192	관청리	46-4대	60	60		
193	관청리	46-7대	218	218		
194	관청리	46-8대	119	119		
195	관청리	5-1전	1,322	418		
196	관청리	52-1대	65	65		
197	관청리	52-2대	266	266		
198	관청리	52-3전	377	377		
199	관청리	52-4전	787	787		
200	관청리	52-5전	463	463		
201	관청리	52-6전	1,656	1,656		
202	관청리	52-7전	185	185		
203	관청리	52-8대	143	143		
204	관청리	52-9대	28	28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205	관청리	52대	357	357		
206	관청리	5-2전	998	662		
207	관청리	53 과	4,552	1,075		
208	관청리	54전	284	283		
209	관청리	55-2전	830	418		
210	관청리	6-1전	1,974	253		
211	관청리	6-2전	340	214		
212	관청리	781전	681	380		
213	관청리	783-1대	4,453	2,460		
214	관청리	783-2도	1,597	402		
215	관청리	784잡	357	357		
216	관청리	785잡	162	162		
217	관청리	786-1도	155	155		
218	관청리	786전	651	651		
219	관청리	787-1잡	1,183	1,183		
220	관청리	787-2전	7	7		
221	관청리	787-3전	579	207		
222	관청리	787전	69	69		
223	관청리	790-1도	69	65		
224	관청리	790전	704	275		
225	관청리	7대	159	159		
226	관청리	8-3전	164	108		
227	관청리	8-4전	292	212		
228	관청리	8-5전	201	126		
229	관청리	946전	526	526		
230	관청리	947-1전	2,400	147		
231	관청리	947-3전	4,731	532		
232	관청리	95전	1,131	477		
233	관청리	961전	370	303		
234	관청리	962-2전	425	197		
235	관청리	96-26임	2,122.5	1,368		
236	관청리	963전	119	119		
237	관청리	964전	1,157	1,157		
238	관청리	965-3전	1,536	322		
239	관청리	970-11대	152	21		
240	관청리	970-12대	102	62		
241	관청리	971-1전	793	793		
242	관청리	971전	734	734		
243	관청리	974중	390	390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244	관청리	975전	519	519		
245	관청리	976-8전	1,889	86		
246	관청리	989-10전	208	208		
247	관청리	989-11전	165	165		
248	관청리	989-12전	136	136		
249	관청리	989-13전	109	109		
250	관청리	989-1전	73	73		
251	관청리	989-2전	202	202		
252	관청리	989-3전	1,144	1,144		
253	관청리	989-4대	69	69		
254	관청리	989-5전	79	79		
255	관청리	989-6대	188	188		
256	관청리	989-7전	83	83		
257	관청리	989-8전	66	66		
258	관청리	989-9전	255	255		
259	관청리	989전	4,360	1,185		
260	관청리	994-1대	108	108		
261	관청리	994-2대	650	80		
262	관청리	994대	589	589		
263	관청리	995전	936	345		
264	관청리	996전	264	264		
265	관청리	997대	69	69		
266	관청리	999 도	727	179		
267	관청리	산11임	3,967	1,133		
268	관청리	산12임	2,975	1,158		
269	관청리	산13-10임	1,893	430		
270	관청리	산13-3임	397	54		
271	관청리	산13-6임	274	227		
272	관청리	산14임	1,686	1,686		
273	관청리	산15임	1,884	818		
274	관청리	산16-1임	1,868	731		
275	관청리	산19-1임	4,033	1,044		
276	관청리	산20임	11,787	11,787		
277	관청리	산21임	694	694		
278	관청리	산22임	10,512	1,629		
279	관청리	산32임	21,223	293		
280	관청리	산33-1임	19,623	2,896		
281	관청리	산35임	3,471	2,663		
282	관청리	산36-1임	111,369	111,369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283	관청리	산39임	8,304	1,357		
284	관청리	산40임	893	893		
285	관청리	산41-1도	99	99		
286	관청리	산41-2임	595	595		
287	관청리	산41임	496	496		
288	관청리	산42임	13,884	5,292		
289	관청리	산43-1임	76,562	76,562		
290	관청리	산43-4임	3,372	3,372		
291	관청리	산45-1임	12,298	4,656		
292	관청리	산45-2임	688	688		
293	관청리	산46-1임	9,025	9,025		
294	관청리	산46-2임	292	292		
295	관청리	산47임	397	397		
296	관청리	산49임	198	198		
297	관청리	산50사	23,207	23,207		
298	관청리	산54구	2,380	142		
299	관청리	산56사	3,967	3,967		
300	관청리	산57 도	793	181		
301	관청리	산58구	198	198		
302	관청리	산8-1임	13,091	1,877		
303	국화리	111-1전	661	227		
304	국화리	111-3전	1,443	681		
305	국화리	111-4전	782	522		
306	국화리	182-1전	2,590	870		
307	국화리	182-2대	230	45		
308	국화리	182전	1,379	463		
309	국화리	184전	179	179		
310	국화리	185전	925	734		
311	국화리	187전	483	483		
312	국화리	188-10대	139	139		
313	국화리	188-14도	3	3		
314	국화리	188-8대	95	95		
315	국화리	188-9대	112	112		
316	국화리	190-2도	1,792	1,792		
317	국화리	190-3대	33	33		
318	국화리	193-1도	10	6		
319	국화리	193-2대	79	79		
320	국화리	193-3도	162	162		
321	국화리	193-4대	96	96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322	국화리	194-3 도	97	97		
323	국화리	194-4도	433	433		
324	국화리	194-5전	321	321		
325	국화리	195-1 잡	732	732		
326	국화리	195-3답	142	142		
327	국화리	195-7 답	149	149		
328	국화리	225-4잡	17,140	2,504		
329	국화리	231-1답	2,770	481		
330	국화리	231답	2,770	753		
331	국화리	232-1답	674	674		
332	국화리	232-2답	179	179		
333	국화리	233답	1,131	219		
334	국화리	234-1답	807	159		
335	국화리	235-2전	714	714		
336	국화리	237-2전	902	902		
337	국화리	238-2전	2,146	1,417		
338	국화리	238-3대	369	369		
339	국화리	248-2전	2,136	575		
340	국화리	251-1전	2,893	1,914		
341	국화리	875사	436	436		
342	국화리	879-3도	281	281		
343	국화리	880-1천	392	392		
344	국화리	883사	5,408	5,408		
345	국화리	970사	572	572		
346	국화리	산22임	6,149	2,466		
347	국화리	산23임	5,455	2,226		
348	국화리	산24임	10,711	285		
349	국화리	산27-2임	1,534	418		
350	국화리	산27-3임	5,645	1,062		
351	국화리	산27-8임	2,742	1,769		
352	국화리	산28임	10,116	1,372		
353	국화리	산29임	5,157	308		
354	국화리	산301임	385,434	12,950		
355	국화리	산309임	7,736	1,831		
356	국화리	산30임	1,333	961		
357	국화리	산31임	1,983	1,431		
358	국화리	산3임	5,860	1,640		
359	국화리	산4-1임	992	730		
360	국화리	산4임	4,363	1,363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361	국화리	산5-1임	6,861	172		
362	국화리	산7임	17,752	1,688		
363	남산리	116대	116	11		
364	남산리	117대	202	202		
365	남산리	118-1대	20	20		
366	남산리	118-2대	122	122		
367	남산리	119-1대	165	165		
368	남산리	119-2대	106	106		
369	남산리	120-1전	179	67		
370	남산리	120전	132	132		
371	남산리	18-1답	1,852	208		
372	남산리	18-2도	106	106		
373	남산리	18-4 대	1,282	152		
374	남산리	18-7대	120	120		
375	남산리	18-8도	28	28		
376	남산리	18-9 대	448	448		
377	남산리	1대	165	83		
378	남산리	2-1대	231	144		
379	남산리	2-2대	205	139		
380	남산리	2-3도	13	13		
381	남산리	572-1도	471	471		
382	남산리	572-6 도	52	52		
383	남산리	572도	11,557	42		
384	남산리	598사	93	93		
385	남산리	산10임	1,388	601		
386	남산리	산11임	4,562	1,970		
387	남산리	산12-1임	992	502		
388	남산리	산12-2임	6,942	264		
389	남산리	산13임	4,165	4,165		
390	남산리	산14-2임	17,752	1,994		
391	남산리	산1임	2,579	2,579		
392	남산리	산2-1임	18,391	6,135		
393	남산리	산2-9임	694	430		
394	남산리	산33임	5,157	1,266		
395	남산리	산34임	25,785	4,022		
396	남산리	산35-1임	58,959	348		
397	남산리	산35-4임	22,109	982		
398	남산리	산35-5임	22,109	1,514		
399	남산리	산35-6임	8,200	1,160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400	남산리	산47-12임	35,760	2,185		
401	남산리	산5-1임	4,661	502		
402	남산리	산9-1임	2,578	541		
403	남산리	산9-2임	3,868	1,898		
404	대산리	1306임	1,140	527		
405	대산리	1307전	1,124	815		
406	대산리	1310전	1,375	185		
407	대산리	1311-1전	1,094	390		
408	대산리	1311-2전	1,683	639		
409	대산리	1312임	526	282		
410	대산리	1318-1임	952	952		
411	대산리	1318임	225	225		
412	대산리	1343-1도	119	119		
413	대산리	산124임	20,472	765		
414	대산리	산130임	13,289	4,713		
415	대산리	산132임	4,760	4,760		
416	대산리	산139임	16,264	2,979		
417	대산리	산141임	2,975	2,975		
418	대산리	산142-2임	5,785	1,656		
419	대산리	산142-3임	1,133	373		
420	대산리	산144임	5,653	2,355		
421	대산리	산175도	99	99		
422	신당리	907임	1,398	446		
423	신당리	908전	873	300		
424	신당리	909-2전	410	410		
425	신당리	909-3전	109	109		
426	신당리	산30-1임	7,240	1,728		
427	신당리	산30-2임	793	793		
428	신당리	산30-3임	73	73		
429	신당리	산37-4임	298	86		
430	신당리	산38-2임	5,455	1,218		
431	신문리	10-1천	879	181		
432	신문리	10-3전	145	145		
433	신문리	10-4전	248	248		
434	신문리	10-5전	169	3		
435	신문리	10-7 전	36	36		
436	신문리	10-9전	1,206	911		
437	신문리	11-1답	1,567	1,567		
438	신문리	11-2도	50	50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439	신문리	12-10대	381	381		
440	신문리	12-11전	152	152		
441	신문리	12-12사	694	694		
442	신문리	12-14도	14	14		
443	신문리	12-16 전	11	11		
444	신문리	12-18 대	6	6		
445	신문리	12-1잡	628	427		
446	신문리	12-2전	155	155		
447	신문리	12-3전	370	370		
448	신문리	12-5전	106	106		
449	신문리	12-7대	777	403		
450	신문리	12-9대	138	138		
451	신문리	14-2도	2	2		
452	신문리	14-4도	192	192		
453	신문리	14-5전	169	169		
454	신문리	14-6도	231	231		
455	신문리	14-7 도	56	56		
456	신문리	14-8전	245	245		
457	신문리	15-1대	377	377		
458	신문리	15-5도	10	10		
459	신문리	15-6도	23	23		
460	신문리	16-1사	655	655		
461	신문리	16대	132	132		
462	신문리	17대	238	238		
463	신문리	20대	172	172		
464	신문리	21대	122	122		
465	신문리	22대	301	301		
466	신문리	379대	30	30		
467	신문리	380-1대	79	79		
468	신문리	380-2대	251	251		
469	신문리	381전	69	69		
470	신문리	382-1대	20	10		
471	신문리	384대	106	106		
472	신문리	385대	162	162		
473	신문리	386-1대	360	360		
474	신문리	386-2대	136	136		
475	신문리	397-1전	972	565		
476	신문리	397-2전	509	356		
477	신문리	397-3전	292	292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478	신문리	399전	1,309	72		
479	신문리	412전	1,438	98		
480	신문리	413-1전	1,253	914		
481	신문리	413-3전	1,223	676		
482	신문리	414전	3,028	2,471		
483	신문리	476-1전	281	281		
484	신문리	476-2대	1,207	986		
485	신문리	477-1전	3,048	3,048		
486	신문리	477-2전	69	69		
487	신문리	477전	1,167	1,167		
488	신문리	478전	664	75		
489	신문리	507-1전	8,301	8,301		
490	신문리	516전	331	331		
491	신문리	518대	324	324		
492	신문리	629-1천	106	53		
493	신문리	629-2답	6,906	1,922		
494	신문리	629-3전	443	443		
495	신문리	629-6대	453	453		
496	신문리	629-7대	122	122		
497	신문리	630-1전	394	394		
498	신문리	630-2대	116	92		
499	신문리	630-3 도	879	705		
500	신문리	631전	1,468	1,110		
501	신문리	637전	3,075	379		
502	신문리	638-1대	271	271		
503	신문리	638-2전	4,797	4,797		
504	신문리	638답	1,448	1,250		
505	신문리	639-1전	9,967	9,967		
506	신문리	639전	1,514	1,514		
507	신문리	640전	2,469	691		
508	신문리	680임	139	139		
509	신문리	682-1 천	4,219	470		
510	신문리	684-1전	1,210	1,210		
511	신문리	684대	1,104	1,104		
512	신문리	685-4천	710	29		
513	신문리	685-91 천	341	341		
514	신문리	687-1도	1,383	1,383		
515	신문리	687-6 도	638	84		
516	신문리	688구	10	10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517	신문리	689구	140	140		
518	신문리	699-1도	52	52		
519	신문리	699-2도	8	8		
520	신문리	699도	7,957	40		
521	신문리	702사	1,117	1,117		
522	신문리	705사	1,739	1,739		
523	신문리	산14-1임	197,059	197,059		
524	신문리	산15사	14,479	14,479		
525	신문리	산2-1임	1,487	1,487		
526	신문리	산2-2임	298	298		
527	신문리	산2-3임	595	595		
528	신문리	산5-1임	1,488	1,488		
529	신문리	산5-5임	22,512	22,512		
530	옥림리	산128구	298	449		
531	옥림리	산95임	8,727	3,000		
532	옥림리	산96임	5,058	1,086		
533	옥림리	산99임	15,074	33		
	계	533필지	1,788,586	791,731		

## 12.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칠곡 가산산성(사적 제216호)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외
- (3) 신청내용<칠곡 가산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2011년 가산산성 성곽실측조사 결과 중성벽, 내외성 공유성벽구간이 실제 성벽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
    - 따라서 성벽형태와 불일치하는 중성벽과 내·외성 공유성벽을 수정하고,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된 내성의 남곡성과 동곡성 그리고 원성벽을 추가 지정하여야 함(성벽 기준 내외 25m 적용)
    - 당초 : 14필지 227,168㎡ → 조정 : 23필지 293,753㎡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가산면	가산리	504	전	605	605	253	0	-253		제외
가산면	가산리	505	임	5,045	5,045	2,072	97	-1,975		
가산면	가산리	1206	임	820	820	55	105	50		
가산면	가산리	1220	임		486		307	307		추가
가산면	가산리	1221	임		430		74	74		추가
가산면	가산리	1233	도		53		53	53		추가
가산면	가산리	1268	도		810		81	81		추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가산면	가산리	1269	구		1,329		97	97		추가
가산면	가산리	1218-24	임		440		8	8		추가
가산면	가산리	1218-25	임		340		43	43		추가
가산면	가산리	1218-26	전		469		21	21		추가
가산면	가산리	산92-6	임	199,934	199,934	4,314	5,727	1,413		
가산면	가산리	산92-7	임	227,813	227,813	3,854	14,791	10,937		
가산면	가산리	산92-8	임	296,428	296,428	202	5,476	5,274		
가산면	가산리	산96	임	362,182	362,182	1,590	11,231	9,641		
가산면	가산리	산98-1	임	609,322	609,322	138,014	167,307	29,293		
가산면	가산리	산99	임	251,901	251,901	4,403	17,743	13,340		
가산면	가산리	산103-1	임		223,934		6,486	6,486		추가
가산면	가산리	산150	구		628		459	459		추가
가산면	금화리	산49-1	임	4,082,899	4,082,899	4,169	3,994	-175		
동명면	남원리	산1	임	1,421,918	1,421,918	7,760	26,099	18,339		
동명면	남원리	산31-1	임	7,537	7,537	1,474	172	-1,302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237,620	237,620	6,365	13,562	7,197		
동명면	학명리	산1-2	임	1,050,645	1,050,645	52,643	19,820	-32,823		
14→23필지				8,754,669	8,983,588	227,168	293,753	66,585(증)		

※ 2008년 지정당시 지적면적은 8,778,119㎡였으나 현재 8,754,669㎡로 23,450㎡ 차이를 보임.

- 산92-7번지(250,512㎡→227,813㎡), 산92-8번지(297,172㎡→296,428㎡), 504번지(612㎡→605㎡) 토지대장 지적면적 변동

○ 보존정책과 검토(안)

- 성곽 측량 결과 현황과 고시된 문화재구역이 다르므로 지자체 신청(안)대로 지정구역 조정함이 타당함.

####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성곽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과 실제 성곽 구간과의 불일치 구간은 바로 잡고,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구역은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면	리						
1	가산면	가산리	505	임	5,045	97		
2	가산면	가산리	1206	임	820	105		
3	가산면	가산리	1220	임	486	307		
4	가산면	가산리	1221	임	430	74		
5	가산면	가산리	1233	도	53	53		
6	가산면	가산리	1268	도	810	81		
7	가산면	가산리	1269	구	1,329	97		
8	가산면	가산리	1218-24	임	440	8		
9	가산면	가산리	1218-25	임	340	43		
10	가산면	가산리	1218-26	전	469	21		
11	가산면	가산리	산92-6	임	199,934	5,727		
12	가산면	가산리	산92-7	임	227,813	14,791		
13	가산면	가산리	산92-8	임	296,428	5,476		
14	가산면	가산리	산96	임	362,182	11,231		
15	가산면	가산리	산98-1	임	609,322	167,307		
16	가산면	가산리	산99	임	251,901	17,743		
17	가산면	가산리	산103-1	임	223,934	6,486		
18	가산면	가산리	산150	구	628	459		
19	가산면	금화리	산49-1	임	4,082,899	3,994		
20	동명면	남원리	산1	임	1,421,918	26,099		
21	동명면	남원리	산31-1	임	7,537	172		
22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237,620	13,562		
23	동명면	학명리	산1-2	임	1,050,645	19,820		
계			23필지		<b>8,982,983</b>	<b>293,753</b>		



### 13.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운현궁(사적 제25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운니동) 외
- (3) 신청내용<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2008년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이전으로 회복
    - 당초 : 10필지, 21,612㎡ → 조정 7필지, 9,413㎡
  - 보존정책과 검토(안)
    - 1948년 구 왕국관리국이 운현궁의 일부를 덕성학원에 매각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게 됨.
    - 지정 당시에는 운현궁 주차장 부지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덕성학원 건물이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08년 일괄조정 시 덕성학원 부지의 담장 안쪽을 전부 추가 지정함.
    - 2008년 추가지정된 구역 중 덕성학원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여도 운현궁 보존관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현궁 복원 권역,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우물 지정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당초 : 10필지, 21,612㎡ → 조정 9필지, 15,839㎡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9.19/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前 문화재위원 ○○○)

- 본 건은 서울 운현궁의 지정구역 내 현존하고 있는 덕성학원의 주차장,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 등 교육용 건물이 사적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구역 조정 요청된 것으로서,
- 2008년 이전에는 현 운현궁 주차장 부지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덕성학원 건물이 제외되어 있던 것으로 2008년 덕성학원 부지의 담장 안쪽을 추가지정함으로써, 현재의 지정구역이 유지되어 왔음.
- 운현궁은 그 역사성을 회복하고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훨씬 넓은 범위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948년 구 왕국관리국이 운현궁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덕성학원이 현 부지에 자리잡게 된 점, 주변이 고밀도 개발이 되어 있으며 향후 운현궁의 추가적인 복원 계획이 없는 점, 현재 덕성학원이 현 부지에서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운현궁의 보존관리를 위한 운현궁 주차장 부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우물은 지정구역을 유지하되, 덕성학원 건물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이 입지한 곳은 지정구역에서 제외하여도 운현궁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1	운니동	114-7대	대	13,733	7,965		
2	운니동	114-10대	대	7,102	7,102		
3	운니동	98-32대	대	27	27		
4	운니동	98-50대	대	496	496		
5	운니동	98-52대	대	13	13		
6	운니동	98-71대	대	57	57		
7	운니동	98-72대	대	141	141		
8	운니동	98-73대	대	5	5		
9	운니동	98-86도	도	33	33		
9필지				21,607	15,839		

## 14.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 (3) 신청내용<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강화 곤릉 측량 결과 현황과 고시된 문화재구역이 다르므로 지정구역 조정
    - 당초 : 1필지 1,091m<sup>2</sup> → 조정 : 4필지 1,572m<sup>2</sup>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1	길정리	산75	임	1,091	1,091		기존
2	길정리	산74	임	37,125	231		추가
3	길정리	231-1	임	55,340	242		
4	길정리	231-3	임	943	8		
1필지→4필지				94,499	1,572		

- 보존정책과 검토(안)
  - 곤릉 측량 결과에 따라 지자체 신청(안)대로 지정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함.

###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곤릉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 조정함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1	길정리	산75	임	1,091	1,091		
2	길정리	산74	임	37,125	231		
3	길정리	231-1	임	55,340	242		
4	길정리	231-3	임	943	8		
		4필지		94,499	1,572		

## 15.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사적 제389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309 외
- (3) 신청내용<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필지 주소 및 면적 오류 정정

당초	정정
가월리 산6-4(임) 364m <sup>2</sup>	주월리 산6-4(임) 3,087m <sup>2</sup>
주월리 310-8(임) 4,029m <sup>2</sup>	주월리 310-8(임) 3,997m <sup>2</sup>

- 당초 : 16필지 38,874m<sup>2</sup> → 조정 : 16필지 41,565m<sup>2</sup>

- 보존정책과 검토(안)
  - 지자체(안)대로 문화재구역 주소 지번 및 면적 오류를 정정하도록 함.

###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문화재구역 주소 및 면적 오류를 정정하도록 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소
1	가월리	663	답	2,717	2,717		
2	가월리	678	전	949	949		
3	가월리	679	전	1,276	1,276		
4	가월리	산95-6	임야	3,237	3,237		
5	가월리	산100	임야	5,667	5,667		
6	주월리	309-2	임야	7,762	7,762		
7	주월리	310-2	구거	436	436		
8	주월리	310-8	임야	3,997	3,997		
9	주월리	310-14	임야	5,200	4,500		
10	주월리	310-15	임야	2,022	2,000		
11	주월리	336-3	임야	713	713		
12	주월리	337-1	전	3,847	3,847		
13	주월리	337-2	구거	307	307		
14	주월리	산5-16	구거	40	40		
15	주월리	산5-17	임야	1,030	1,030		
16	주월리	산6-4	임야	3,087	3,087		
계		16필지		42,287	41,565		

## 16.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괴산 송시열 유적(사적 제417호)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화양리) 외

(3) 신청내용<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암서재 지정구역이 현황과 맞지 않고 '14.8월 지정된 명승 제110호 화양구곡의 제4곡 금사담 지정구역과 중복되므로 해제
- 당초 : 28필지 26,644㎡ → 조정 : 25필지 24,806㎡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조정		
1	화양리	409	대	526	526	0		제외
2	화양리	456	하천	483,704	1,130	750		380㎡ 감
3	화양리	461	도로	4,760	186	0		제외
4	화양리	산13-11	임야	43,438	746	0		제외
				532,428	2,588	750		

- 보존정책과 검토(안)

- 송시열 유적 중 암서재 위치가 당초 지정구역 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금년 8월에 지정된 명승 화양구곡 지정구역에 포함되므로 지자체(안)대로 사적에서 해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4.11.10/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은 괴산 송시열 유적의 암서재 지정구역과 명승의 금사담 지정구역과 일부 겹치며, 사적의 암서재 지정구역 내에 암서재가 잔존하지 않고 명승의 금사담 지정구역 내에 잔존하는 것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지자체에서 암서재가 지정구역 내에 없으므로 사적의 지정구역을 해재하고, 명승의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암서재와 금사담은 화양구곡의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명승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암서재가 누각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배후 공간의 일정구간은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암서재 배면 반원 50m 정도 범위까지 명승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의결사항

- 보류
  - 명승 지정구역의 확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1	청천리	101-1	도	398	155		
2	청천리	101	대	2,219	1,161		
3	청천리	102	전	2,341	515		
4	청천리	산7-1	임	839,702	10,744		
5	화양리	375-3	사	5,163	5,163		
6	화양리	385-1	도	23	14		
7	화양리	385-2	대	512	32		
8	화양리	386-1	전	289	50		
9	화양리	389-2	대	2,377	37		
10	화양리	391-1	대	251	251		
11	화양리	391-2	도	53	53		
12	화양리	392-2	전	393	38		
13	화양리	393-1	도	235	235		
14	화양리	393-2	전	2,608	2,608		
15	화양리	394-1	대	579	579		
16	화양리	394-2	도	86	86		
17	화양리	395-1	전	698	698		
18	화양리	395-2	도	13	13		
19	화양리	395-3	전	6	6		
20	화양리	396-1	도	22	22		
21	화양리	396	전	378	378		
22	화양리	397-1	도	195	195		
23	화양리	456	천	483,704	750		
24	화양리	466	도	5,220	380		
25	화양리	산14-3	임	7,368,860	643		
계		25필지		8,716,325	24,806		

## 17. 강화 외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강화 외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외성 구간 중 가리산 돈대 구간이 주변보다 협소하게 지정되어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지정 필요
    - 당초 : 76필지 / 247,651㎡ → 조정 : 84필지 / 249,841㎡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신정리	320-1	대	649	649		추가
2	신정리	320-2	대	498	498		
3	신정리	320-3	대	331	331		
4	신정리	320-4	임	99	99		
5	신정리	320-5	임	84	84		
6	신정리	341	전	225	225		
7	신정리	341-1	대	116	116		
8	신정리	342	대	188	188		
	8필지			2,190	2,190		

- 보존정책과 검토(안)
  - 가리산돈대로 이어지는 성곽 구간이 협소하게 지정되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양측으로 여유구간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좋겠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가리산 돈대로 향하는 성곽 일부 구간이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음.
  - 돈대 주변은 성곽은 물론 경관을 함께 보존, 관리하여야 할 유적이므로 문화재 추가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강화 외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1	갑곶리	1078대	182	182		
2	갑곶리	1080-1도	2,867	456		
3	갑곶리	1080-2사	397	397		
4	갑곶리	1084사	671	671		
5	갑곶리	1086사	691	691		
6	갑곶리	1088사	2,030	2,030		
7	갑곶리	1092사	60	60		
8	갑곶리	1093사	298	298		
9	갑곶리	산1임	27,381	3,076		
10	갑곶리	산21사	5,256	5,256		
11	고능리	1071-1제	522	522		
12	고능리	1071-2제	128	128		
13	고능리	1071제	788	788		
14	고능리	1079제	8,013	8,013		
15	넙성리	610사	9,183	9,183		
16	덕성리	27대	337	337		
17	덕성리	833사	965	965		
18	덕성리	839사	6,393	6,393		
19	덕성리	840사	4,552	4,552		
20	덕성리	844-1사	207	207		
21	덕성리	844사	1,102	1,102		
22	덕성리	846-1사	153	153		
23	덕성리	846사	13,880	13,880		
24	덕성리	847사	3,796	3,796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25	덕성리	882사	863	863		
26	덕성리	산120사	5,752	5,752		
27	덕성리	산121사	8,727	8,727		
28	덕성리	산123사	4,463	4,463		
29	신정리	319-1전	466	466		
30	신정리	319-2대	220	220		
31	신정리	319-3대	510	510		
32	신정리	320-1 대	1,220	571		
33	신정리	344-1임	5,994	5,994		
34	신정리	344-3전	643	643		
35	신정리	344-4도	180	180		
36	신정리	675제	565	565		
37	신정리	676제	16,344	16,344		
38	신정리	320-1대	649	649		
39	신정리	320-2대	498	498		
40	신정리	320-3대	331	331		
41	신정리	320-4임	99	99		
42	신정리	320-5임	84	84		
43	신정리	341전	225	225		
44	신정리	341-1대	116	116		
45	신정리	342대	188	188		
46	연리	434-3 도	120	120		
47	연리	434-7도	128	128		
48	연리	811제	19,547	19,547		
49	연리	813제	1,994	1,994		
50	연리	산108사	27,372	27,372		
51	오두리	198-1전	148	148		
52	오두리	198-2전	193	193		
53	오두리	198-3전	129	129		
54	오두리	198-4전	121	121		
55	오두리	198-5전	27	28		
56	오두리	198-6전	77	77		
57	오두리	198-7전	50	50		
58	오두리	198-8전	28	28		
59	오두리	216-1전	199	199		
60	오두리	216전	654	654		
61	오두리	553-7도	1,544	1,544		
62	오두리	556제	1,240	1,240		
63	오두리	563제	4,145	4,145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 소
64	옥림리	1220도	674	674		
65	옥림리	1223제	4,740	4,740		
66	용정리	1087도	2,906	2,906		
67	용정리	1099제	1,408	1,408		
68	용정리	1100제	3,689	3,689		
69	용정리	1101제	4,979	4,979		
70	용정리	1102제	5,296	5,296		
71	용정리	산79임	6,347	3,091		
72	용정리	산80-3임	5,869	1,237		
73	용정리	산80임	37,775	4,857		
74	용정리	산81임	16,451	5,169		
75	월곶리	699제	6,019	6,019		
76	지산리	877제	12,089	12,089		
77	초지리	1241-12제	712	712		
78	초지리	1241-15제	480	480		
79	초지리	1241-16제	1,857	1,857		
80	초지리	1241제	872	872		
81	초지리	1243도	912	912		
82	초지리	1248제	7,805	7,805		
83	초지리	1251제	3,521	3,521		
84	초지리	1269-1구	9,187	9,187		
84필지			329,293	249,841		

## 18.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보호) 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사적 제470호)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68 외
- (3) 신청내용<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주소 지번 오기 및 분할 지번 정비
    - 당초 : 92필지 164,737㎡ → 조정 : 93필지 164,737㎡

당초	조정
황상동 452-1(전) 661㎡	황상동 451-1(전) 661㎡
황상동 산70-6(임) 5,881㎡	황상동 산70-6(임) 5,760㎡ 황상동 산70-18(임) 121㎡

- 보존정책과 검토(안)
  - 지자체 신청(안)대로 지번 오기 및 분할 지번 정비토록 함.

###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문화재구역 지번 오기 및 분할 지번 정비토록 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황상동	229	전	2,149	2,149		
2	황상동	230	임	2,268	2,268		
3	황상동	231	전	2,909	2,909		
4	황상동	372-12	임	5,939	5,939		
5	황상동	372-8	임	2,450	2,450		
6	황상동	372-9	임	5,014	5,014		
7	황상동	373	임	479	479		
8	황상동	384	묘	496	496		
9	황상동	385	전	360	360		
10	황상동	386	전	1,322	1,322		
11	황상동	387-1	전	992	992		
12	황상동	387-2	전	519	519		
13	황상동	388	묘	714	714		
14	황상동	389	묘	1,329	1,329		
15	황상동	390-1	임	902	902		
16	황상동	390-2	전	1,289	1,289		
17	황상동	391	묘	2,327	2,327		
18	황상동	392	묘	1,474	1,474		
19	황상동	393	임	2,972	2,972		
20	황상동	414-2	대	522	522		
21	황상동	415-2	전	244	244		
22	황상동	415-4	전	149	149		
23	황상동	415-5	전	33	33		
24	황상동	415-6	전	329	329		
25	황상동	415	전	802	802		
26	황상동	422-1	전	2,407	2,407		
27	황상동	422-2	묘	975	975		
28	황상동	423	전	2,886	2,886		
29	황상동	424	전	456	456		
30	황상동	425	전	2,331	2,331		
31	황상동	426	전	2,926	2,926		
32	황상동	427	전	734	734		
33	황상동	428-3	임	565	565		
34	황상동	428	임	2,469	2,469		
35	황상동	438-4	전	1,078	1,078		
36	황상동	439	전	1,345	1,345		
37	황상동	440	임	152	152		
38	황상동	441-1	전	726	72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39	황상동	441	전	662	662		
40	황상동	442-1	전	966	966		
41	황상동	442	전	75.00	75.00		
42	황상동	443-1	전	628	628		
43	황상동	443-4	전	3,354	3,354		
44	황상동	446-13	답	1,957	1,957		
45	황상동	446-14	전	251	251		
46	황상동	446-15	전	109	109		
47	황상동	446-16	전	96	96		
48	황상동	446-1	전	2,394	2,394		
49	황상동	446-2	임	896	896		
50	황상동	447	전	314	314		
51	황상동	448-1	전	198	198		
52	황상동	448-2	전	54	54		
53	황상동	448	전	1,236	1,236		
54	황상동	449-1	전	130	130		
55	황상동	449-2	전	221	221		
56	황상동	449-3	전	72	72		
57	황상동	449-4	전	170	170		
58	황상동	449-5	전	8	8		
59	황상동	449	전	639	639		
60	황상동	450	임	840	840		
61	황상동	451	전	1,270	1,270		
62	황상동	451-1	전	661	661		
63	황상동	452	전	493	493		
64	황상동	453	전	1,696	1,696		
65	황상동	454	전	2,965	2,965		
66	황상동	455	묘	1,709	1,709		
67	황상동	638-1	도	182	182		
68	황상동	638-4	도	534	534		
69	황상동	산68	임	496	496		
70	황상동	산69-1	임	316	316		
71	황상동	산69-2	임	66	66		
72	황상동	산69	임	1,601	1,601		
73	황상동	산70-12	임	349	349		
74	황상동	산70-13	임	532	532		
75	황상동	산70-14	임	910	910		
76	황상동	산70-15	임	479	479		
77	황상동	산70-16	임	236	236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주 소
78	황상동	산70-1	임	6,334	6,334		
79	황상동	산70-4	임	33,593	33,593		
80	황상동	산70-6	임	5,760	5,760		
81	황상동	산70-18		121	121		
82	황상동	산71-1	임	1,534	1,534		
83	황상동	산71-2	임	731	731		
84	황상동	산71-3	임	4,363	4,363		
85	황상동	산71-4	임	9,360	9,360		
86	황상동	산71-5	임	1,836	1,836		
87	황상동	산71-6	임	151	151		
88	황상동	산71-7	임	558	558		
89	황상동	산71-8	임	12	12		
90	황상동	산72-1	임	1,884	1,884		
91	황상동	산72	임	1,686	1,686		
92	황상동	산75-1	임	4,264	4,264		
93	황상동	산76-1	임	5,752	5,752		
계		93필지		164,737	164,737		

## 19. 파주 이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이이 유적(사적 제525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외
- (3) 신청내용<파주 이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신청(안)
    - 보호구역 내 누락필지(3필지, 201m<sup>2</sup>) 추가 지정,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정비
    - 당초 : 문화재구역 6필지, 5,282m<sup>2</sup>, 보호구역 60필지 311,572m<sup>2</sup> →
    - 조정 : 문화재구역 6필지, 5,282m<sup>2</sup>, 보호구역 50필지 311,773m<sup>2</sup>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보호구역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 고
동문리	15-1	도로	175	175		
동문리	51-5	도로	218	218		
동문리	15-2	하천	241	241		
동문리	26-2	하천	1,180	1,180		
동문리	17-3	하천	397	397		
동문리	18-3	사적지	9,611	9,611		
동문리	18-36	사적지	23	23		
동문리	18-37	사적지	79	79		
동문리	18-39	사적지	89	89		
동문리	18-40	사적지	73	73		

동문리	20-1	사적지	2,331	2,331		
동문리	18-2	사적지	112	112		
동문리	18-34	사적지	46	46		
동문리	18-35	사적지	43	43		

○ 보존정책과 검토(안)

- 지자체(안)대로 보호구역 내 누락필지(3필지, 201m<sup>2</sup>)는 추가 지정하고, 합병된 토지의 지번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4.11.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보호구역 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필지는 추가 지정하고, 합병된 토지의 지번을 정비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파주 이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주소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1	동문리	산5-1	임	141,025	2,887	138,138		
2	동문리	14	잡	298	43	255		
3	동문리	15	잡	3,074	690	2,384		
4	동문리	15-1	도	393		393		
5	동문리	15-2	천	1818		1,818		
6	동문리	15-3	도	50		50		
7	동문리	16	잡	324		324		
8	동문리	16-1	잡	615		615		
9	동문리	17-1	잡	3,917		3,917		
10	동문리	17-2	잡	281		281		
11	동문리	산6	임	37,638		37,638		
12	동문리	17-4	대	16,190		16,190		
13	동문리	17-5	임	1,506		1,506		
14	동문리	18-1	잡	3,498		3,498		
15	동문리	18-3	사	12,513		12,513		
16	동문리	18-47	답	3,067		3,067		
17	동문리	18-27	답	1,068		1,068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18	동문리	18-29	도	188		188		
19	동문리	산6-1	도	206		206		
20	동문리	18-41	도	106		106		
21	동문리	18-42	도	410		410		
22	동문리	18-44	답	102		102		
23	동문리	18-45	답	23		23		
24	동문리	18-46	도	172		172		
25	동문리	19-1	답	949		949		
26	동문리	20-6	답	83		83		
27	동문리	21	대	298		298		
28	동문리	산25	임	37,606		37,606		
29	동문리	22-1	도	58		58		
30	동문리	22-2	답	750		750		
31	동문리	24-1	답	13		13		
32	동문리	24-3	도	63		63		
33	동문리	26	대	5,457		5,457		
34	동문리	26-1	도	1,269		1,086		
35	동문리	26-4	하	1,630		221		
36	동문리	27-1	답	307		307		
37	동문리	산25-1	임	16,355		16,355		
38	동문리	28-2	답	1,669		16		
39	동문리	28-4	답	4,106		4,106		
40	동문리	29-3	답	2,138		1,108		
41	동문리	37	대	502		502		
42	동문리	38	대	1,025		1,025		
43	동문리	39	잡	2,417	13	2,404		
44	동문리	40	전	1,461	1,443	18		
45	동문리	41	대	2,225	206	2,019		
46	동문리	47-3	대	1,925		1,925		
47	동문리	산25-3	임	1,874		1,874		
48	동문리	산25-6	임	6,392		6,392		
49	동문리	산25-7	도	491		491		
50	동문리	산156	도	1,785		1,785		
		50필지		321,330	5,282	311,773		

##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14-12-053

# 1. 공주 송산리고분군 보존환경 연구결과 및 보존관리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의 고분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 연구용역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송산리고분군 5·6호분 및 무령왕릉 내부의 고온·다습한 환경 개선을 위해 1972년부터 제습기→에어컨→향온·항습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오다 2011년 이후, 향온·항습기의 잦은 오작동과 기류변화가 내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쳤다는 자문에 의해 냉방기기 작동을 중단한 상태로 고분 내부환경에 대한 불안전성 해소가 시급
- 이에 고분환경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한 최적의 보존환경 도출 필요성에 의해 이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추진·완료하고 그 결과 및 단계별 조치 계획을 보고·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제안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 / 5·6호분 및 무령왕릉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5-1일원
- (3) 보고내용
  - (가) 사업명 : 공주송산리고분군 친환경공조시스템 개발 연구(5·6호분, 무령왕릉)
  - (나) 사업내용 : 보존환경 조사·분석을 통한 최적의 공조시스템 개발

(다) 분야별 조사·연구 결과

구분	연구 분야	주요 연구 결과	비고
1	고분 보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기간 보존환경의 영향과 상부하중 등에 의한 구조적 영향으로 상당수 부재에서 균열 및 파손, 배부름 현상 등 문제점 확인</li> </ul>	세부사항 별첨
2	고분환경 모니터링 분석 결과 (2011.7월~2014.7월, 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온·향습기 가동 중지 후 오히려 내부환경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온·향습기 가동 중지 이후 온·습도 편차 감소</li> <li>- 향온·향습기에서 발생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토벽체 손상 유발</li> </ul> </li> <li>○ 고분 3기 모두 99%이상의 고습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li> <li>○ 연중 평균기온 증감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호분 11.06℃, 6호분 11.20℃, 무령왕릉7.65℃</li> </ul> </li> <li>○ 고분 내부 출입시 인원, 소요시간 등이 내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li> </ul>	"
3	거동 모니터링 및 안정성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방향의 변위 계측(변위량 미미/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의 계측기 중 3기는 안정, 3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0.1°이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li> </ul> </li> </ul>	"
4	미생물제어 및 벽화 손상도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습한 환경이 벽화의 안정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호분 공기중에서 채취한 곰팡이(18종) 조사결과 15℃이하에서 모든 균주의 성장 억제 확인, 15~18℃가 안정적</li> <li>- 습도 95% 이하에서 수축과 균열이 급격히 진행, 97~99%의 습도 에서 안정성 유지</li> <li>- 고습한 환경에서도 미세한 공기순환으로 벽화의 손상 발생, 따라서 면밀한 공조설비계획 수립 필요</li> </ul> </li> </ul>	"
5	외국사례 및 공조환경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경우 고분벽화의 보존에 있어 직접공조 사례는 없었고, 일본·프랑스에서 간접공조를 시도하였으나 환경제어에 모두 실패</li> <li>○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사의 영향이 없을 때 고분 내부 온도 약2℃ 하강</li> <li>- 봉분 두께를 5m 추가하면 연교차가 10.9℃→0.5℃로 크게 감소</li> <li>- 출입문 및 배수로 등으로 유입되는 외부공기의 완벽한 차단 필요</li> <li>- 조명기기, 향온향습기 등 발열기기의 지속 사용 시 내부온도 35℃까지 상승</li> <li>- 사람 출입에 따라 0.6℃~1.6℃의 온도상승과 상대습도 감소</li> </ul> </li> </ul>	"

(라) 연구 결과에 따른 최적의 고분 관리 방안

- 적정 보존환경 지속 유지
  - 내부 온도 18℃이하, 습도 97% 이상, 기류발생 억제, 기밀성 유지
- 패시브한 보존 방식에 의한 관리
  - 공조기 중단이후 내부 환경이 안정된 상태로 인공시설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 발생의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패시브한 방식에 의한 보존 필요**
  - ⇒ 1안 : 패시브 방법 + 출입으로 인한 인체 발열 제거
  - ⇒ 2안 : 패시브 방법 + 인체 발열 제거 + 18℃ 이상 기간은 냉각 제어

\* 패시브한 보존 방식

- 일사 차단, 단열재 사용, 출입문의 기밀화, 고분 주변 녹지화 등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식으로 고분 내부 환경 제어

○ 냉각제어 방식 제안

⇒ 1안 : **복사냉각시스템**(현실 바닥에 코일을 설치하고 냉수를 순환)

\* 인위적인 기류발생 및 환경변화 최소화, 온도유지 유리

⇒ 2안 : 대류냉각시스템(전실을 냉각한 후, 냉각된 공기를 현실에 공급)

(마) 관리·운영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고분 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기존의 송산리고분군 보존위원회 기능확대)
  - 보존과학 전문가 위주의 구성에서 안전분야, 기계·설비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공주시 참여
  - 단순 자문위주의 운영에서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및 방향 결정 등 송산리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활용·활성화를 위한 상설 지도·자문 기구로 운영
- 단계별 추진 방향 및 조치계획

구분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1단계 과제 (‘14년~’15년)	. 고분 내부 환경정비 . 기초조사 자료구축	. 보존환경 및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정밀 구조 안전진단 및 정밀 실측 기록화 . 벽돌깨짐 현황조사(1972,1996 자료 비교) 등
		. 노후, 비 가동 공조시설 철거 및 정비
2단계 과제 (‘16년)	. 기밀성 공사 및 정밀 안전 진단 결과분석 ↓ . 3단계 과업 결정	. 현실 및 전실 / 출입구 기밀성 공사 등
		. 변화된 고분 내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검토



구 분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3단계 과제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열 공사 효과 분석</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4단계 과업 결정</li> </ul>	· 봉토 토압 등 봉분 단열처리에 따른 물리적 안정성 검토
		· 봉분 단열재 설치 여부 결정
		· 변화된 고분 내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검토
4단계 과제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단계 사업 종합</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공조시스템 설치여부 및 운영조건 결정</li> </ul>	· 공조시스템 설치여부 및 운영조건 결정
		· 밀폐를 위한 환경유지, 감시체계구축(적외선 CCTV 설치 등)
공조 설치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 공조시스템 성능 검증,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2. 칠백의총 종용사 안내소 이전설치 계획 보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내 종용사 안내소를 이전설치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칠백의총 종용사 건물 옆에 설치·운영 중인 안내소의 노후 및 훼손 심각
  - \* 설치 기간이 오래됨(20년이상 경과)은 물론 조립식으로 매년 제향행사(9.23) 시 철거 및 재조립 반복
- 기존 조립식 안내소의 이전을 통해 종용사 및 의총 경관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을 통한 안내직원의 편의증진 및 대국민 안내서비스 향상 도모

###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금산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 (3) 신청내용<칠백의총 종용사 안내소 이전설치>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167-2
  - 내용 : 종용사 이동식 안내소 이전설치
    - 설치장소 : 종용사 옆 → 종용사 협문 옆(곡담 외곽) \* 종용사와의 거리 약 20m
    - 설치규격 : 2.5m(가로)×2.0m(세로)×2.6m(높이)
    - 설치예산 : 10,000천원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3. 경복궁 소주방 권역 활용을 위한 준비실 설치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소주방 복원과 관련하여 한국 고유 궁중음식 등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소주방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외소주방 창고 공간에 준비실을 설치하고자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경복궁 소주방 복원과 관련하여 궁궐의 내재적 가치를 살리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대표할 만한 궁중음식문화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소주방 권역에 준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보고내용

- (1) 보고인 : ○○○
- (2) 대상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 (3) 주요내용<경복궁 소주방 준비실 설치>
  - 준비실 위치 : 외소주방 창고 권역(24.56m×3.5m)
  - 설치시설
    - 싱크대 : 2,200×750×920(H)mm, 3구 인덕션, 수전 등 포함
    - \* 싱크대 벽면 탄화목재 마감(95.7×1.8m)
    - 작업대 : 싱크대 설비 이동식 작업대, 4,000×900×920(H)mm
    - 바닥재 : 24.5m×3.5m, 데크 WFC 클립 시공(20×140×3,600mm)
    - 파티션 : 이동식 파티션 600×1,800mm, 5.0m(2.5m, 2개소), 전통창호형태
    - 기타 상하부 수납장 등 설치
  - 주방시설 위치 및 규격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배관 설치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4. 사직단 관리사무소 신축 설계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1호 「사직단」 내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2011년 11월 사직단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 1월부터 문화재청(종묘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사직단 관리사무소는 향후 복원정비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사직단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직단(사적 제121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1-38
- (3) 신청내용<관리사무소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 내용

	관리사무소 신축 내용
기존 시설물 (화장실) 철거	○ 면적 : 36 m <sup>2</sup> , 건축물 높이: 약 4.5m
관리사무소 신축	○ 건축면적 : 237.06m <sup>2</sup> ○ 연 면 적 : 375.83m <sup>2</sup> (층별면적 : 지하1층 159.17m <sup>2</sup> , 지상1층216.66m <sup>2</sup> ) ○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 라. 참고사항

#### (1) 자문위원 의견

( '14.11.04/문화재위원 ○○○ )

- 관리사무소의 건립 위치는 3개의 후보지 가운데 현 계획 위치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직단 종합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축은 지형 회복에 따라 대부분이 복토되고 전면부만 노출됨으로써 사직단의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함에 따라 경관 개선의 측면이 있음
- 노출되는 관리사무소 전면부의 외장 재료는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14.11.10/문화재위원 ○○○)

- 사직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후보지 중에는 제시안이 가장 훼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추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연계하여 조금 더 사직단의 영역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절하기 바람
-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봄. 단, 건축물이 지형을 이용하여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북향을 하고 있고 남향은 막혀 있어 채광과 환기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화장실의 환기를 위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함
- 건물의 마감 재료와 색상 뿐만아니라 바닥의 색상도 사직단의 공간성을 감안하여 선택하기 바람

(2) 사직단 현황

- 문화재 현황 : 사적 제121호 /’63.1.21 지정
- 지정면적 : 43,587㎡(문화재구역 5,973.6㎡ / 보호구역 37,613.4㎡)
- 사직단 건축물 현황
  - 고건축물 : 사직단 대문(보물 제177호), 안향청, 신실, 유문 및 주문 등
  - 현대 건축물 : 어린이도서관, 사직동 주민센터, 파출소 등 15동

마. 의결사항

- 원안집수

## 5. 창경궁 소나무 등 주요수목 정비공사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 ‘소나무 등 주요수목 정비공사’의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창경궁 경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설해 피해 대비 등을 위해 소나무와 주요 건물 주변 수목을 정비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와룡동)
- (3) 신청내용<창경궁 소나무 등 주요수목 정비공사>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와룡동)(문화재구역/관람 지역 수목)
  - 내용
    - 기간 / 공사비 : 2014. 11월 ~ 2014. 12월(30일) / 119백만원
    - 공사내용
      - 관람지역 소나무 정비 : 가지치기 478주,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 7주
      - 건물 주변 수목 정비 : 궁궐체험학교 주변 등 11주
      - 자경전 터 북측 경관림 정비 : 소나무 가지치기 193주, 고사목 제거 8주, 하부식생정리 6,218.5m<sup>2</sup>
      - 임목운반 : 114.849m<sup>3</sup>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14.09.26/○○○ 위원, ○○○ 교수)
  - 경관림 관리를 위해 흉고직경 6cm이하의 수목들은 공간감과 간벌의 관점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피압목 및 불량목은 정리될 필요가 있음
  - 소나무의 고사지와 쇠약지를 정리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경과 및 계획

- '14. 09. ~ 10. 실시설계용역
- '14. 11. ~ 12. 수목 정비 공사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6. 고양 서오릉 내 궁능 문화재 보수용 자재야적장 및 창고 보고

### 가. 보고사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내 궁·능 문화재 보수용 자재 및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 및 창고에 대한 현상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서오릉 내 궁능 문화재 보수를 위한 자재 및 장비 창고에 대한 현상변경사항을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 (3) 신청내용<궁능 시설물 보수용 자재 및 장비창고>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 창고 개요

창고명	면적	사용용도	비고
목재야적장 및 사무실	263.82㎡	현장 사무실 조립식 건물 및 창호 제작용 목재 보관장	골함석, 조립식판넬
장비 및 자재야적장	134.33㎡	착암기, 카타기, 제초기 등 장비 및 미장용 강회 보관장	골함석, 철골
목재야적장	182.75㎡	기둥, 연목, 도리 등 대경목재 건조보관장	골함석, 철골
방충약제창고	71.8㎡	흰개미 등 충해 방제약제 보관장	비닐하우스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7.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 보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를 건립 하려는 사항임.
- 동 사업은 문화재청 지역균형발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적분과 제3차 회의('14.2.12.)에서 허가 받은 사항으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는 내용임.

###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178-1번지 등
- (3) 신청내용<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일원(문화재지정구역 내)
  - 신청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829.36㎡/814.92㎡, 최고높이 3.5m, 지하 1층 지상 1층

라. 참고자료

(1) 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공사 개요

○ 공사개요

과업명	연천 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대지면적	101,973.00m <sup>2</sup> (30,846.69평)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 업무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829.36m <sup>2</sup> (250.88평)
건축면적	814.92m <sup>2</sup> (246.51평)
건물높이	3.5M

○ 실별면적표

구분		용도	면적	비고
방문자센터	지하1층	관광안내소	238.55m <sup>2</sup> (72.16평)	
		카페테리아	96.75m <sup>2</sup> (29.27평)	
		다용도실	36.45m <sup>2</sup> (11.03평)	
		사무실	72.90m <sup>2</sup> (22.05평)	
		탕비실	12.15m <sup>2</sup> (3.68평)	
		문서보관실	24.30m <sup>2</sup> (7.35평)	
		창고1	12.15m <sup>2</sup> (3.68평)	
		창고2	36.45m <sup>2</sup> (11.03평)	
		화장실(남,여)	45.70m <sup>2</sup> (13.82평)	
		수유실	5.67m <sup>2</sup> (1.72평)	
		전실	38.63m <sup>2</sup> (11.69평)	
		기계실	48.60m <sup>2</sup> (14.70평)	
		<b>소 계</b>	<b>668.30m<sup>2</sup> (202.16평)</b>	
	지상1층	매표소	27.00m <sup>2</sup> (8.17평)	
		방송실	9.46m <sup>2</sup> (2.86평)	
		진입홀	124.60m <sup>2</sup> (37.69평)	
실외기실		25.50m <sup>2</sup> (7.71평)	연면적에서 제외	
<b>소 계</b>		<b>161.06m<sup>2</sup> (48.72평)</b>		
<b>합 계</b>			<b>829.36m<sup>2</sup> (250.88평)</b>	

○ 설계용역 자문회의 내용(종합)

회의일자	주요 협의사항	참석인원
2월21일 (1차 자문회의)	- 건물의 위치는 방문객의 동선 및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진입로 우측 하천변 인근부지가 적합함.	자문위원: ○○○, ○○○, ○○○
	- 건물의 규모는 주변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방문자센터와 관리실을 별동으로 하지않고 하나의 동으로 설계하는것이 바람직 함.	
	- 건물은 지형을 이용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형태를 단순화 할 것.	
3월17일 (2차 자문회의)	- 방문자센터 마감재료는 화산석 판석 하나로 통일하는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자문위원: ○○○, ○○○
	- 연중행사시 물품차량이 들어올수 있도록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필요함.	
4월15일 (중간 보고회)	- 대지의 위치와 건물의 형태에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유적지 보존의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계획안으로 가는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음.	자문위원: ○○○, ○○○
	- 사무실 면적은 축소하여 전시기능에 포함시켜 계획하도록 하며, 주변의 식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유적지와 잘 어울릴것 같음.	
4월29일 (3차 자문회의)	- 방문자센터는 유적지의 가시권을 확보하였고 지형을 잘 활용하였으며, 단순하고 광택이 없되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잘 설계된것 같음.	자문위원: ○○○
7월22일 (최종 보고회)	- 전시공간을 축소하고 휴게 및 관리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구조를 가변형 구조로 변경하여 추후 건물 운영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자문위원: ○○○, ○○○, ○○○
10월02일 (최종자문회의)	- 전체적인 건축계획은 완성도가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자문위원: ○○○, ○○○, ○○○
	- 관리공간을 직전설계보다 더 확보하고 용도에 따라 가변성을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완성도를 위해 가벽의 재료와 시공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선정된 입지와 유적의 경관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고 세련되게 잘 계획되었음.	

## (2)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화 조성사업 추진 현황

### □ 사업개요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일원					
사 업 량	토지매입 659,942㎡, 발굴조사(1~11차), 시설도입(토층전시관), 공원화정비(식생복원 및 기반조성)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4	<b>2015 소요액</b>	향후소요
	계	63,358	51,068	3,981	<b>8,309</b>	-
	국 비	29,579	21,402	2,435	<b>5,742</b>	-
	도 비	16,889	14,833	-	<b>1,283</b>	-
	시·군비	16,890	14,833	1,546	<b>1,284</b>	-
사업기간	1994년 ~ 2015년					
시 행 자	연천군					
추진현황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02, '12), 공사 43%, 보상 99%					

###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천 전곡리유적(사적 제268호)의 체계적인 유적정비 및 주변 관광지 [전곡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한탄강오토캠핑장), 역사문화공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와 연계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및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 □ 사업추진 경과

- 2002년 : 연천 전곡리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 2004년 : 전곡리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 승인(균특회계 반영)
- 2011년 : 전곡선사박물관 개관
- 2012년 : 연천 전곡리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보완 용역  
↳ 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 반영

### □ 그간 추진실적

- 토지매입 : 659,942㎡ 중 658,210㎡ 매입 완료(99%)
- 발굴조사 : 1~11차 완료(100%)
- 시설도입 : 토층전시관 건립 완료(100%)
- 공원화정비(식생복원) : 1~3차 식생복원 완료(11%)
- 공원화정비(기반조성) : 축제장조성, 주차장,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 탐방로 및 기초 기반시설 조성 등(51%)

##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8.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9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9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4.10.23(목) 14:00~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김정배, 고혜령, 노중국, 손영식, 최성락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 25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11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7건, 보류 1건

###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 남한산성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3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 보류 -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재검토					
	○ 사업내용						
	구 분		1차 ('14.07.10/ 조건부허가)	금회 신청	비고		
	공 종		규 격	단 위			
	야면석 찰쌓기(콘크리트 뒤채움)		H=0.3~0.9m	m <sup>2</sup>	228	-	△228
	야면석 찰쌓기 (콘크리트기초 및천단)		천단 H=5cm 기초H=31.5cm	m	369	-	△369
	전석 메쌓기		H=1.0m	m	-	292	292
	산 돌 쌓 기		H = 0.51m	m	-	40	40
	줄 메 심 기		H = 0.4m	m	-	292	292
	과중(향토종자)		줄과중	m <sup>2</sup>	844	844	
비탈면 고르기	백호우+인력	m <sup>2</sup>	722	722			
방부축대목 안전 편책	H=600 L=1,250	경간	25.6	28	2.4		

건 명	내 용					결 과
	구 분			1차 (’14.07.10/ 조건부허가)	금회 신청	비고
	공 종	규 격	단 위			
	안전 로프웬스 설치	원목,3줄	경 간	30	30	
	와이어로프 설치	소나무	개 소	4	4	
	벌근제거	장비+인력	본	1	1	
	벤치플룸관 토사 터파기			680m	61.2m <sup>3</sup>	
※ 허가기간 연장 2015.06.30까지(기허가 2014.12.31)						
2. 경주 이건대 주변 공덕추모비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81-3번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보존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석비(우현 고유섭 대왕암 시비, 문무대왕 유조비) 이건 2기</li> <li>- 공덕 추모비(초우 황수영, 수묵 진홍섭 박사) 건립 2기 (높이 2.6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사항 : 동래구 공원을 포함한 주변정비 필요</li> </ul> </li> </ul>
3. 파주 혜음원지 주변 묘 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78-3번지(인접)</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496m<sup>2</sup>, 묘2기, 단1기, 상석3개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4. 경주 효공왕릉 주변 단독주택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249번지(문화재구역과 인접 /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목구조, 한식 토기와</li> <li>- 건축규모 : 지상2층, 연면적합계 126.36m<sup>2</sup>(1층 104.94m<sup>2</sup>, 2층 21.42m<sup>2</sup>)</li> <li>- 최고높이 : 7.25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 우려</li> </ul> </li> </ul>
5.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역사경관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용·건릉 역사경관립 조성사업</li> <li>-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12월</li> <li>- 사업금액 : 250,600천원</li> <li>- 사업범위 : 건릉 서쪽 산책로변 임야 10,216m<sup>2</sup></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기다소나무 등 17종 268주 벌채 및 잡목제거(10,216m<sup>2</sup>)</li> <li>· 소나무묘목(R6~R15) 1,195주 식재(용릉 양묘장 소나무 묘목 활용)</li> <li>· 임목부산물 매각(62ton) 및 임목폐기물(106.8ton) 처리</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6. 경산 병영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내리 388(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m 이격/1구역 : 보존구역(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264㎡</li> <li>- 건축면적 / 연면적 : 94.84㎡ / 75.66㎡</li> <li>- 규모 및 구조 : 1층 1개동,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li> <li>- 최고높이 : 5.35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 신축 권고</li> </ul> </li> </ul>																						
7.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산시 임당동 5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45m 이격/1구역 : 단독주택 용지(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근생용지, 상업용지(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3,083.30㎡</li> <li>- 건축면적 / 건폐율 : 4,407.49㎡ / 33.69%</li> <li>- 연면적 / 용적율 : 17,219.30㎡ / 119.80%</li> <li>- 규모 / 세대수 : 5층 4개동 / 전용면적 79.42㎡ 151세대</li> <li>- 최고높이 : 18.2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를 18m로 할 것</li> </ul> </li> </ul>																						
8.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94-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1구역)</li> <li>○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지번</th> <th rowspan="2">임소반</th> <th rowspan="2">면적</th> <th colspan="2">산림현황</th> </tr> <tr> <th>수종</th> <th>총축적</th> </tr> </thead> <tbody> <tr> <td>산94-11</td> <td>1-0-1</td> <td>10.5ha</td> <td>굴참, 신갈, 기타활엽수</td> <td>1,945.55㎡</td> </tr> <tr> <td colspan="3">벌채(2014)</td> <td>운재로(2014)</td> <td>숲가꾸기(2015)</td> </tr> <tr> <td colspan="3">참나무류 608.1㎡ (3,601본) 간벌(45%) - 잔존 5,482본</td> <td>0.52km</td> <td>편백어린나무</td> </tr> </tbody> </table> </li> </ul>	지번	임소반	면적	산림현황		수종	총축적	산94-11	1-0-1	10.5ha	굴참, 신갈, 기타활엽수	1,945.55㎡	벌채(2014)			운재로(2014)	숲가꾸기(2015)	참나무류 608.1㎡ (3,601본) 간벌(45%) - 잔존 5,482본			0.52km	편백어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지번	임소반				면적	산림현황																		
		수종	총축적																					
산94-11	1-0-1	10.5ha	굴참, 신갈, 기타활엽수	1,945.55㎡																				
벌채(2014)			운재로(2014)	숲가꾸기(2015)																				
참나무류 608.1㎡ (3,601본) 간벌(45%) - 잔존 5,482본			0.52km	편백어린나무																				
9. 완도 청해진 유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424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0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대지면적 2,929㎡, 설치면적825㎡</li> <li>- 높이 : 2.3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름</li> </ul> </li> </ul>																						
10. 완도 청해진 유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4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대지면적 1,217㎡, 설치면적 380㎡</li> <li>- 높이 : 2.3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름</li> </ul> </li> </ul>																						
11. 나주읍성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나주시 남내동 60-4(문화재구역)</li> <li>○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면적</th> <th>높이</th> <th>용도</th> <th>구조</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83.72㎡</td> <td>5.2m(1층)</td> <td>소매점, 식당</td> <td>철근콘크리트 조</td> <td>전면부 한식 목구조 차용</td> </tr> </tbody> </table> </li> </ul>	면적	높이	용도	구조	비고	183.72㎡	5.2m(1층)	소매점, 식당	철근콘크리트 조	전면부 한식 목구조 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굴조사 실시</li> </ul> </li> </ul>												
면적	높이	용도	구조	비고																				
183.72㎡	5.2m(1층)	소매점, 식당	철근콘크리트 조	전면부 한식 목구조 차용																				

건 명	내 용	결 과																
12. 함안 성산산성 주변 자연장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68-3번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37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장지 조성 : 6기</li> <li>- 자연장 용기 규격 : 30cm×30cm×30cm 이하(굴착깊이 : 50cm)</li> </ul> </li> </ul>	○ 원안가결																
13. 익산 미륵사지 주변 창고시설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46-6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1구역)</li> <li>* 제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li> <li>* 공통사항 : 제1,2,3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3:10이상) 으로 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912.0㎡</li> <li>- 연면적 : 414.6㎡(기존 198.0㎡, 증축 216.6㎡)</li> <li>- 구조 : 철골조 지상 1층</li> <li>- 지붕 : 기존(금속기와마감), 증축(50mm 지붕판넬, 청색)</li> <li>- 외벽 : 변색 벽돌(기존, 증축부분 동일)</li> <li>- 증축 : 창고건물 2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동 : 면적 84.6㎡, 높이 4.65m</li> <li>· 2동 : 면적 132.0㎡, 높이 5.15m</li> </ul> </li> </ul> </li> </ul>	○ 원안가결																
14.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북 충주시 단월동 50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평슬라브), 14m 이하(경사지붕))</li> <li>○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당초('14.08.28/부결)</th> <th>금회신청</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규모</td> <td>가로 9.6m, 세로 11.97m</td> <td>가로 12.6m, 세로 11.9m</td> <td></td> </tr> <tr> <td>높이</td> <td>설비높이 1.5~8m 건물+설비높이 17.9m</td> <td>설비높이 1.3~3.9m 건물+설비높이 12.5m</td> <td>5.4m 감</td> </tr> <tr> <td>용량</td> <td>19.08Kw</td> <td>19.95Kw</td> <td></td> </tr> </tbody> </table> </li> </ul>	구분	당초('14.08.28/부결)	금회신청	비고	규모	가로 9.6m, 세로 11.97m	가로 12.6m, 세로 11.9m		높이	설비높이 1.5~8m 건물+설비높이 17.9m	설비높이 1.3~3.9m 건물+설비높이 12.5m	5.4m 감	용량	19.08Kw	19.95Kw		○ 원안가결
구분	당초('14.08.28/부결)	금회신청	비고															
규모	가로 9.6m, 세로 11.97m	가로 12.6m, 세로 11.9m																
높이	설비높이 1.5~8m 건물+설비높이 17.9m	설비높이 1.3~3.9m 건물+설비높이 12.5m	5.4m 감															
용량	19.08Kw	19.95Kw																
15. 고양 공양왕릉 주변 운동시설 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037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1,941㎡, 건축면적/연면적 84㎡/84㎡, 최고높이 4.5m, 지상 1층</li> <li>- 족구장 16.5m*25m 2개소, 지하수 심정개발 등</li> </ul> </li> </ul>	○ 원안가결																
16. 화성 당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8-13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0m 이격)</li> <li>○ 신청면적 1,394㎡, 건축면적/연면적(396㎡/396㎡), 지상 1층 2동, 최고높이 8.6m</li> </ul>	○ 원안가결																



건 명	내 용	결 과
17.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연구동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041-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전통기와 경사지분</li> <li>- 건축규모 : 지상2층, 연면적합계 623.28㎡</li> <li>- 최고높이 : 11.20m</li> <li>- 건축용도 :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시굴조사 실시</li> </ul>
18.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경주국립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114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질 : 목재, 석재</li> <li>- 규모 : 높이 2.2m, 폭 6.8m, 너비 1.4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 우려</li> </ul>
19. 광주 조선백자요지 주변 공장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유사리 442-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9,051㎡, 건축면적/연면적 231.4㎡/231.4㎡, 1동, 건축물 최고높이 6.2m(기존공장 7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20. 광주 조선백자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36-4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m 이격/2구역 : 평지붕 최고높이 5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1m이하)</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241㎡, 건축면적/연면적 108.94㎡/268.73㎡, 1동 지상3층, 건축물 최고높이 13.7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시굴조사를 실시</li> </ul>
21.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470-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0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93.00㎡</li> <li>- 연면적/건축면적 : 346.62㎡/115.66㎡</li> <li>- 높이/규모 : 13.6m/1동, 지상 4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li> </ul>
22.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 48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202.00㎡</li> <li>- 연면적/건축면적 : 212.80㎡/106.71㎡</li> <li>- 높이/규모 : 12m/1동, 지상 3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li> </ul>
23.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4-6(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5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61.5㎡, 연면적 46.44㎡, 1동</li> <li>- 1층, 최고높이 5.1m, 경량철골구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li> </ul>
24.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97(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80.51㎡, 연면적 99.43㎡, 1동</li> <li>- 2층, 최고높이 8.75m, 경량철골구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25. 강화 외성 주변 주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88, 81-4번지(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7,883m<sup>2</sup></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397.85m<sup>2</sup>/1,397.85m<sup>2</sup></li> <li>- 단독주택 신축 : 1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동~7동 : 조적조, 1층, 최고높이 5.4m</li> <li>· 8동~13동 : 경량철골조, 1층, 최고높이 5.15m</li> </ul> </li> <li>- 진입로 개설 : L=149m, B=6m, 콘크리트포장 (T=200mm) 905m<sup>3</sup></li> <li>- 절토 : H 1.2~5.5m / 성토(조경석 쌓기) : H=1~3m, L=522m</li> <li>- 경사면 줄때 식재 : 452m<sup>2</sup></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훼손</li> </ul> </li> </ul>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보도블럭 교체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b>&lt;보도블럭 교체&gt;</b>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38 ○ 내용 - 규모 : 폭 7~9m, 총연장150m, 면적 1,350㎡ - 내용 : 기존 보도블럭 포장 철거, 투수블럭 포장	허가	'14.10.14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b>&lt;바람드리 나눔견기 축제&gt;</b>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240 ○ 내용 - 일시 : 2014.11.1(토) 13:00~15:30 - 장소 : 풍납토성 일원 등 - 임시시설물 : 천막, 현수막 거치대 - 내용 : 기념식, 나눔견기, 체험부스 등	허가	'14.10.2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이○○	<b>&lt;단독주택 신축&gt;</b>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62-8 ○ 내용 - 대지면적 : 108.37㎡ - 건축면적 : 64.39㎡ - 연면적 : 178.51㎡ - 건축면적 : 지상3층 - 최고높이 : 9.4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4.10.2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김○○	<b>&lt;다가구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b>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9-64 ○ 내용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14.6.12~'14.9.30 - 변경 : '2014.8.5~'14.12.31	허가	'14.10.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임시주차장 조성(허가기간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96 등 6필지 ○ 내용 - 당초 : '14.6.12~'14.12.31 - 변경 : '14.11.1~'15.6.30	허가	'14.10.30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시립박물관 증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7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 ○ 변경사항 - 허가기간 : (당초) '14.10.16까지 → (변경) '15.02.16까지	허가	'14.10.16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신○○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m 이격) ○ 사업면적 : 378.13㎡ ○ 건축면적/연면적 172.94㎡/172.94㎡, 지상 1층, 최고높이 6.8m	허가	'14.10.22.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농로 포장>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산47-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 : B=3m, L=59m	허가	'14.10.22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전북 부안군	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66-9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m 이격) ○ 사업내용 - 건물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건물높이 · 주1동 : 4.5m~9m · 주2동 : 4~4.5m - 태양광 집열판 설치 · 높이 : 5.25m · 설치면적 : 1,984㎡ ○ 허가조건 - 전기실은 창고 안에 설치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4.08.26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북 고령군	○○○	<화장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58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0m 이격) ○ 변경사항 - 허가기간 : (당초) '14.10.31까지 → (변경) '15.03.31까지	허가	'14.10.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도 제주시	강○○	<관광숙박시설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96-3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6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 154.37㎡, 연면적 1,345.2㎡ - 지하 1층, 지상 10층, 최고높이 34.2m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4.10.29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도 제주시	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제주시 이도일동 1254-3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 84.4㎡, 연면적 161.28㎡ - 1동, 2층, 최고높이 9.6m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4.10.29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경기도 파주시	김○○	<판매시설 용도 변경>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덕은리 1300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0m 이격) ○ 내용: 판매시설 용도변경(상점)	허가	'14.10.16.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서울시 종로구	○○○	<가설건축물 설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 ○ 내용 - 규모 : 가설건축물 2동, 가설판넬 1동 - 용도 : 공사용 사무실 등	허가	'14.10.14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	<다문화가정 가을축제 개최>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 ○ 내용 - 일시 : 2014.11.1(토) 13:30~16:00 - 임시시설물 : 무대,관람용의자,천막 등 - 내용 : 역사퀴즈대회, 축하무대	허가	'14.10.20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박○○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8-8,-1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m 이격) ○ 내용 : 사업면적 719㎡, 건축면적/연면적 90.20㎡/161.71㎡, 1동 지상 2층 최고높이 6.9m	허가	'14.10.22.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경남 창원시	○○○	<학술발굴조사>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173-3번지 등 10필지(문화재구역 내) ○ 내용 - 다호리 고분군 학술자료 및 복원정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 - 조사면적 : 12,136㎡ ○ 허가기간 : 2014.10.15~2014.12.31	허가	'14.10.1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이○○	<p>&lt;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나주시 남내동 91-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소매점</li> <li>- 규모 : 면적 62.9㎡, 높이 4.6m</li> <li>- 구조 : 경량철골조</li> </ul> </li> </ul>	허가	'14.10.16														
사적 제339호 전주 경기전	전북 전주시	이○○	<p>&lt;태양광 발전시설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50(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00㎡</li> <li>- 높이 : 3m</li> <li>- 용량 : 모듈 125*260w = 32.5kw</li> </ul> </li> </ul>	허가	'14.09.19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p>&lt;임시 시설물(성탄트리)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문화재 구역 내)</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량 : 1기</li> <li>- 사용면적 : 400㎡(20m×20m)</li> <li>- 최고높이 : 24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11.17~12.31</li> </ul>	허가	'14.11.06														
사적 제361호 서울 영희원과 승인원	서울시 동대문구	○○○	<p>&lt;홍릉공원 산책로 조성(허가사항 변경 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번지 145호</li> <li>○ 사업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구분</td> <td>1차 신청('14.4.24/부결)/ 2차 신청('14.5.29/부결)/ 3차('14.7.24/보류)/ 4차('14.8.13/조건부가결)</td> </tr> <tr> <td>데크로드</td> <td>난간 80m(W1.5m*H1m)</td> </tr> <tr> <td>목교</td> <td>W1.5m*L7.3m*2개소</td> </tr> <tr> <td>산책로</td> <td>W1.5m*L200m (마사토 86m, 목계단 114m)</td> </tr> <tr> <td>마사토 포장</td> <td>W1.5m*L40m</td> </tr> <tr> <td>비가림 구조물</td> <td>B3m*L6m*H3.5m, 1동 B6m*L6m*H3.5m, 1동</td> </tr> <tr> <td>관목식재</td> <td>철쭉류 7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내용 :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2014.9.11~2014.11.30</li> <li>- 변경 : 2014.9.11~2015.6.30</li> </ul> </li> </ul>	구분	1차 신청('14.4.24/부결)/ 2차 신청('14.5.29/부결)/ 3차('14.7.24/보류)/ 4차('14.8.13/조건부가결)	데크로드	난간 80m(W1.5m*H1m)	목교	W1.5m*L7.3m*2개소	산책로	W1.5m*L200m (마사토 86m, 목계단 114m)	마사토 포장	W1.5m*L40m	비가림 구조물	B3m*L6m*H3.5m, 1동 B6m*L6m*H3.5m, 1동	관목식재	철쭉류 700㎡	허가	'14.10.29
구분	1차 신청('14.4.24/부결)/ 2차 신청('14.5.29/부결)/ 3차('14.7.24/보류)/ 4차('14.8.13/조건부가결)																		
데크로드	난간 80m(W1.5m*H1m)																		
목교	W1.5m*L7.3m*2개소																		
산책로	W1.5m*L200m (마사토 86m, 목계단 114m)																		
마사토 포장	W1.5m*L40m																		
비가림 구조물	B3m*L6m*H3.5m, 1동 B6m*L6m*H3.5m, 1동																		
관목식재	철쭉류 70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김○○	<p>&lt;지열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천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187(3구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천공 : 깊이 150m, Ø150mm, 2개소</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10.21~2014.12.31</li> </ul>	허가	'14.10.20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서울시 광진구	위○○	<p>&lt;도시형생활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1-22</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08.37㎡</li> <li>- 건축면적 : 201.78㎡→167.40㎡</li> <li>- 연면적 : 685.31㎡→799.44㎡</li> <li>- 건축규모 : 지하1,지상3→지하2,지상4</li> <li>- 최고높이 : 14.2m</li> </ul> </li> </ul>	허가	'14.10.28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